

# 獨逸統一 關聯 資料集( I )

1991. 12.

統 一 院



## 冊을 내면서

이 冊子는 駐獨韓國大使館이 提供한 각종 資料 및 同 大使館에 派遣되어 있는 當院 所屬의 統一研究官이 송부한 報告書 가운데, 統獨以後 주요 懸案問題 및 解決方案을 다룬 資料를 編輯, 發刊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冊子에 실린 內容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은 아니며, 現地에서 送付한 資料를 그대로 複製·發刊한 것도 相當部分 있다는 점을 勘案하여 活用해 주시기 바랍니다.

獨逸統一問題나 韓半島問題의 解決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關係專門家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目	次
---	---

〈政治・行政分野〉

◇ 東・西獨 行政體系 統合 .....	7
◇ 統獨以後 提起된 問題點 解決을 위한 獨逸政府 機構改編 .....	10
◇ 베를린으로의 議會 및 行政府 移轉決定 .....	20
◇ 東獨 舊體制 清算關聯 加害者들 拘束 .....	27
◇ 統獨以後 輿論調查 結果 .....	31
◇ 舊東獨 共產政權下의 被害者에 대한 復權・ 補償問題 .....	37
◇ 統獨以後 懸案問題 및 解決實態 .....	42
◇ 東獨地域의 地方行政體系 構築 .....	70
◇ 舊東獨地域 住民에 대한 政治教育問題 .....	77
◇ 統獨以後 輿論調查 結果와 主要統計 .....	85
◇ 統獨關聯 主要人士 面談錄 .....	91
◇ 獨逸統一後에 있어서 當面課題：體制變革 (System Transformation) .....	119
◇ 東・西獨 國境開放時 舊東獨 避難民에 대한 設問調查結果 .....	124

〈經濟分野〉

- ◇ 兩獨間 財產權 處理에 관한 合意 ..... 133
- ◇ 獨逸 貨幣·經濟·社會統合 發効 1 周年에  
즈음한 評價 ..... 137
- ◇ 統獨以後 財政上 問題點 ..... 144
- ◇ 蘇聯占領下 舊東獨地域 沒收財產 不返還에  
관한 憲法裁判所 判決 ..... 150
- ◇ 舊東獨 財產權 處理問題 ..... 152
- ◇ 東獨經濟의 全面 私有化 反討論 ..... 161
- ◇ 信託廳의 企業私有化 關聯 論議 ..... 169
- ◇ 舊東獨의 農業構造 再編 ..... 175
- ◇ 舊東獨 經濟의 崩壞 原因 ..... 181
- ◇ '91 秋季 經濟展望 報告書 ..... 186

〈軍事分野〉

- ◇ 東·西獨間 軍隊統合에 따른 諸問題 ..... 191

〈司法·法律分野〉

- ◇ Staasi 文書 閱覽 法律制定 ..... 199
- ◇ 舊東獨 스파이 處罰과 關聯한 諸問題 ..... 203

- ◇ 舊東獨地域 司法體系 確立과 法官 再任命  
問題 ..... 210
- ◇ 過去 兩獨間 基本條約(Grundlage Vertrag)  
締結에 대한 立場 ..... 221
- ◇ 東·西獨 常駐代表部 設置와 法的인 問題 .... 231

〈 言論·教育分野 〉

- ◇ 舊東獨 靑少年에 대한 社會主義 意識化 ..... 255
- ◇ 東·西獨間 放送協力에 관한 合意書 ..... 259



# 〈政治・行政分野〉



## 東·西獨 行政體系 統合

- 과거 서독지역에는 4백 5십만의 공무원 (인구 6천만) 이 동독 지역에는 2백만의 공무원 (인구 1천 6백만) 이 근무하였음.
  - 인구 비례당 공무원 종사자의 비율이 동독지역의 경우 높기 때문에 (그 원인은 행정조직의 비능률과 억압체제 유지 필요에 따른 관료비대화 현상에 기인함) 통독으로 인한 대령 해고는 불가피함.
  - 통합조약 협상이 쟁점이 되었던 동독지역 공공기관 근무 종사자들의 재임용시 기준은
    - 특별해고 사유 대상자 : 과거 인도주의와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에 위배된 행정행위 집행에 종사자 Stas (국가 보안부) 를 위해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 자
    - 적법해고 사유 대상자 : 전문적 지식의 결핍이나 개인 적성의 부적합으로 업무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자, 더 이상 통독후에는 행정수요가 존재치 않아 업무할당을 받지 못할 자, 지금까지 존재하던 업무부서가 대체기관으로 이전되지 않은 채 해체될 기관에 종사하는 자
- 독일에는 한국에서의 총무처와 같은 중앙인사·조직·행정관리 기관이 없음.
  -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인사·기구담당국에서 해당 동독 행정부의 인수와 통합문제를 개별처리하였음.

- 연방중앙부처 동독 공무원들의 재임용과 해고문제도 따라서 각 부처별로 “특별심사위원회” (Gutachteranssou) 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음.
  - 중앙연방정부기관이 아닌 주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산하 공무원들은 주의회선거 (10.14) 를 통해 지방조직이 정비될 때까지 서독 내무성에 설치된 “조직정비위원회” (Clearingstelle) 의 심의를 거쳐 행정조직이 재편되고, 아울러 동위원회에서 파견된 연방정부 파견관들이 10.3 통독이후 행정공백 상태를 임시로 관장하였음.
- 각 부처별로 통독으로 인해 조직을 확대하고 재편하는 문제는 공공업무 전반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된 다음 늘어난 행정수요와 책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처리될 것임.
- 따라서 각 부처가 동독공무원들을 몇명을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 10.3 통독과 더불어 국장급이상 고위직 (이들 대부분은 과거 공산당원임) 은 대부분 해고되었으며 실무자급 공무원들은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 적어도 3년간의 시보기간 (각 부처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을 거쳐야 함.
  - 일단 시보기간을 설정하여 근무 대기하도록 한 것은 아마도 대량해고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지도 모름) 을 피하고, 아직 통독으로 어느 정도의 행정수요가 발생할 지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정확히 판단하고 있지 못함에 기인하고 있음.

- 동독 공무원들의 통일독일에서 직업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 여부는 각 부처에 설치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향후 3년 이내에 관계법령 정비후 예산의 범위안 (이것도 무시못할 통독비용입)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전입되는 공무원들의 급료지불 문제

- 동독행정기관으로 부터 연방정부기관 및 주정부기관에 재임용 전입되는 자들은 “계약체결 쌍방간에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서독의 공무원에 대한 기존 근로조건들 - 급료, 근무시간, 휴가 -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 10. 3 이후 해고되는 공무원들은 대기급료 (Wartegeld) 청구권을 갖는바, 과거 6개월간 지불되었던 평균급여의 70% 정도가 한시적으로 지급됨.
  - 평균잡아 약 1,000DM 에 해당하는 대기급료는 나이별로 차등을 두어 50세이하 공무원들에게는 6개월간, 50세이상 공무원들에게는 9개월간 지급될 것으로 통합조약 협상시 결정하였음.
  - 아울러 이 기간동안 다른직장을 찾도록 직업전환교육 조치가 행해짐.

## 統獨以後 提起된 問題點 解決을 위한

### 獨逸政府 機構改編

- 통독이후 동독지역 (신설 5 개주와 베를린지역) 에서 발생한 문제와 동서독 지역간 실질적 격차해소 문제는 더 이상 내독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문제로서 각 기존부처에서 헌법이 명시한 소관 관할업무의 범위내에서 처리하고 있음.
  - 통독직전 동독지역의 재건과 同化문제를 총괄하는 “ 재건성” 과 같은 특별부처설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각부처 업무와 중복문제가 있고 발생문제들이 과도기적 사안들임을 감안하여 해당 각 부처내에 전담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
- 현재 각 부처가 통독이후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수상실 (BK)
    - 동독지역 신설주문제 관련 내각소위원회 운영
    - 각 주정부 주지사실과 수상실간의 업무 협조·조정
  - 외무성 (AA)
    - 소련군 철수 문제와 관련된 제반 실무협상
    - 동독이 제3국과 맺은 외교, 영사관계, 협약처리
  - 내무성 (BMI )
    - 신설 동독지역주들의 행정체계 설립 지원
    -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
    - 양독 지역 문화·체육분야 통합관련문제 지원

- 법무성 (BMJ )
  - 신설 동독지역 주들의 사법체계 설립지원
  - 구동독 공산당의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보상
  - 반법치국가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 동·서독 법률체계 동화
- 재무성 (BMF )
  - 구동독지역 몰수재산권의 반환·보상
  - 구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와 재편 (신탁청활동)
  - 신설 5개주 재정지원과 통독비용 조달
- 경제성 (BMW I)
  -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및 경기부양책 실시
  - 신설 5개주에 대한 외국투자 유치 및 기업신설 장려
- 농림수산성 (BML )
  -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구조 개편, 자영농 육성
  - 농업 생산수단의 사유화
- 노동·사회성 (BMA )
  - 구동독지역 실업대책
  - 각종 사회보장제도 동독지역 확대 실시
- 보건성 (BMG )
  - 구동독지역 의료체계 전환
  - 의료보험체계 동독지역 확대 실시
- 교통성 (BMV )
  - 구동독지역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환경성 (BMU )
  - 동·서독간 환경보호체계 통합
  - 구동독지역 특수오염지대에 대한 특별대책

- 국방성 (BMVT)
    - o 구동독 인민군의 독일연방군 통합
  - 부녀·청소년성 (BMFJ)
    - o 구동독 청소년들의 동화문제
    - o 동·서독간 낙태제도 통합문제
  - 가족·노인문제 담당성 (BMFS)
    - o 구동독지역 연금생활자 복지체계 확립
  - 체신성 (BMPT)
    - o 구동독지역 우편·통신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건설성 (BMBAU)
    - o 구동독지역 주거현대화 및 주택경기 활성화 추진
  - 교육성 (BMBW)
    - o 신설 5개주의 교육개혁
    - o 공산체제 관련학과·연구기관 철폐 및 종사자 해고
  - 과학기술성 (BYFT)
    - o 구동독지역 핵발전소 기술안전 및 방사선 보호
  - 경제협력성 (BMZ)
    - o 과거 동독의 제3세계 지원사업 인수문제
  - 공보처 (BPA)
    - o 통독후 방송·언론 재편
- o 또한, 각부처는 베를린에 지소 (Au enstelle) 를 설치하고 각 부처 장관 책임하에 구동독 중앙부처의 청산 (Abwicklung) 작업을 진행시킴.
- 구동독 중앙행정 해당기관의 인력 인수여부 결정, 건물 접수·이전 등

- 통독과정과 통일이후에 통합관련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상실, 내무성, 법무성의 세부기구개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수상실 : 통독관련 기구 축소>

#### ○ 통독이전

- Abt. 2 (외교·안보·통일정책담당실) 밑에 Arbeitsstab Deutschlandpolitik (통일정책담당관실) 이 있었음.
- 국장급 (Min, Dirig ) 이 담당관이며, 3 개과로 구성됨.
  - Ref. 221 : 상주대표부 관할, 내독관계중 환경, 연구·언론분야, 베를린문제 담당
  - Ref. 222 : 내독관계중 사법·교통·가족상봉분야 담당
  - Ref. 223 : 내독관계중 경제·문화분야 담당

#### ○ 통독이후

- Abt. 1 (국내·법률문제 담당실) 로 이관되고, 그 밑에 신설 5개주문제 담당관실 (Gruppe 4) 설치
- 국장급 담당관 밑에 2개과로 구성됨.
  - 국장 (Min, Dirig ) : Herr Stern
  - Ref. 141 : 통합조약 및 신설 5개주 문제 담당 (담당자 : Germelmann과장)
  - Ref. 142 : 베를린에 소재하며 본과의 연락기능, 구동독 수상실의 기구청산작업 담당 (담당자 : Permantier과장)

- 동독지역 신설 5개주문제 관련 내각 소위원회  
(Kabinettausschu Neue Bundeslander) 구성·운영
  - 참여부처
    - 내무, 법무, 재무, 경제, 농수산, 노동, 가족, 청소년, 보건, 교통, 환경, 체신, 건설, 과기, 교육
  - 수상실 장관 주재로 사안발생시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각 주정부 주지사실 장관들과 공동회의 개최

<내무성 : 통독이후 내독관계성 인력흡수·기구확대>

- 통독이전
  - Abt. G (국내기본정책담당실) 밑에 Arbeitsgruppe innerdeutsche Beziehungen (내독관계담당관실) 을 두고, 동독과의 통합조약 (Einigungsvertrag) 협상을 주도함.
  - Abt. SM (스포츠·언론관계담당실) 의 2 개과가 내독간의 문제를 다룸.
    - Ref. SM2 : 내독간 체육교류
    - Ref. SM1 : 내독간 언론분야교류
- 통독이후
  - 구동독지역의 재건문제와 관련,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지원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과거 내독관계성 인력을 흡수하여 Arbeitsstab Neue Lander (동독지역 신설 주 재건 자문단) 이라는 전담기구를 설치

- 이 자문단은 전내독관계성 차관이었던 Dr. Prinsnitz가 내무성 차관으로서 단장이 되고, 그 밑에 1명의 차관보 (Dr. Schmid : 전내독관계성 베를린문제 담당차관보) 와 5개 본과로 구성됨.
- 각 본과에는 과거 내독관계성 간류직원이 나뉘어 배속되며, 각 본과는 동독지역 1개주 및 특정 행정분야에 대해 자문역할 수행 (괄호안은 담당국장)
  - 1본과 : 작센안할트주 및 재정·투자문제 (Rosen )
  - 2본과 : 튀링겐주 및 공보·홍보문제 (Bitz)
  - 3본과 : 작센주 및 고용창출조치문제 (Poehle)
  - 4본과 : 브란덴부르크주 및 인사행정문제 (Stuberrauch )
  - 5본과 : 메클렌부르크포어퍼머른주 및 소유권 문제 (Plewa )
- 아울러 기존 조직중 Abt. G의 기능을 보강, 내무행정과 정치교육담당을 담당토록 Unt. Abt. G II (정치교육·동구문제연구담당국) 을 신설
  - Ref. GII 1 : 일반내무행정, 정치교육문제 기본정책담당 (담당자 : Witzlau 과장)
  - Ref. GII 4 : 정치교육, 동구연구담당 (담당자 : Leonhardt 과장)
  - Ref. GII 5 : 통독과 관련한 정치교육담당 (담당자 : Finn과장)
  - Ref. GII 6 : 통독과 관련한 연구담당 (담당자 : Stute 과장)

- Abt. K (문화담당실) 을 기존의 Abt. VT (실향민문제담당실) 로 부터 분리하고, 동서독 지역간 문화분야에 있어서 이질성 해소 문제를 전담하는 2 개과를 신설
  - Ref. KII 4 : 문화분야의 분단 후유증 해소 문제  
(담당자 : Dr. Ackermann 과장)
  - Ref. KII 5 : 신설 5개주의 문화시설확충 문제담당  
(담당자 : Stienke 과장)
- Abt. VT (실향민문제담당실) 은 계속 존속하면서 동구지역 으로부터 이주하는 독일민족에 대한 문제를 담당함.

#### <법무성 : 구체제청산관련 기구확대>

##### ○ 통독이전

- 통독 1년전부처 사법·법률체계 통합 준비를 위해 Abt. Öffentliches Recht (공법담당실) 산하에 Arbeitsgruppe Innerdeutsche Beziehungen (내독관계담당 taskforce) 을 설치함.
  - 이 기구는 과장급 (MR) 이 팀장이 되고 그 밑에 9 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됨. (담당자 : Dr. Viehmann과장)

##### ○ 통독이후

- 기존의 Abt. 2 (형법담당실), Abt. 3 (민법담당실), Abt. 4 (공법담당실) 에서 각각 동·서독간의 법률체계 통합의 문제를 담당하면서

- 구동독체제하의 피해자에 대한 복권·보상문제를 다루는 Abt. 5 Rehabilitierung (복권·보상문제담당실) 을 신설함.
- 이 신설실은 8 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개과가 베를린에 소재함.
  - Ref. 5.1 : 기본정책 및 구속자 지원·보상문제 담당 (담당자 : Dr. Eberbach과장)
  - Ref. 5.2 : 직업상 받은 피해 복권·보상문제 담당 (담당자 : Lehmann 과장)
  - Ref. 5.3 :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한 피해 복권·보상문제 담당 (담당자 : Sturmhofel과장)
  - Ref. 5.4 : 형사처벌에 의한 피해 복권·보상문제담당 (담당자 : Bruns 과장)
  - Ref. 5.5 : 미해결 재산권문제 담당 (Ⅰ) (담당자 : Fieberg 과장)
  - Ref. 5.6 : 미해결 재산권문제 담당 (Ⅱ)
  - Ref. 5.7-8 : 베를린 지소

## 統獨以後의 問題解決을 위한 獨逸政府 機構改編 (要約)

- 統一獨逸 政府는 統獨以後에 發生하는 問題에 대해 해당 各部處內에 專擔機構를 新設하거나 既存 組織을 活用하여 處理하고 있음.
  - 一 統獨直前 東獨地域의 再建과 同化問題를 總括하는 特別部處 新設 必要性이 論議되었으나, 各 部處 業務와의 重複問題와 發生問題들이 過渡期的 事案들입을 감안하여 設置하지 않았음.
- 이와함께 各 部處는 베를린에 支所를 設置하고 人力引受, 建物 接受·移轉 등 舊東獨 中央部處의 청산작업을 進行시키고 있음.
- 統獨過程과 統一以後에 統合關聯 主要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首相室, 內務省, 法務省의 細部機構改編 內譯은 다음과 같음.

### <首相室 : 統獨關聯機構 縮小>

- 統獨以前 : 外交·安保·統一政策 擔當室 傘下 3 개과로 構成되는 統一政策擔當官室에서 處理
- 統獨以後 : 國內·法律問題擔當室 밑에 2 개과로 構成되는 新設 5 개주 問題 擔當官室 設置
- 內務省등 15개 部處가 參與하는 東獨地域 新設 5 개주 問題 관련 內閣小委員會 構成·運營

<內務省 : 統獨以後 內獨關係性 人力吸收・機構 擴大>

- 舊東獨地域의 再建問題와 關聯, 州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行政支援과 諮問을 위해 5 개분과로 構成되는 “東獨地域 新設州 再建諮問團” 設置
  - 全內獨關係省 次官 Dr. Prinsnitz가 內務省 次官으로서 諮問團長에 任命됨.
- 아울러 內務行政 統合과 政治教育을 擔當하는 政治教育・東歐問題研究擔當局 (4 개과) 과 東西獨 地域間 文化分野에 있어서 異質性解消 問題를 擔當하는 文化擔當室 (2개과) 新設

<法務省 : 舊體制 靑酸關聯 機構 擴大>

- 統獨 1 年전부터 東・西獨間의 法律體系 統合을 위한 刑法・民法・公法 등 3 개 擔當室을 設置
- 統獨以後에는 기존 3개 擔當官室과 함께 舊東獨體制下의 被害者에 대한 復權・報償問題를 다루는 8 개과로 構成된 復權・報償問題擔當官室을 新設하여 統一以後 問題를 處理

# 베를린으로 議會 및 行政府 移轉決定

## 1. 移轉決定

○ '91. 6. 20 獨逸聯邦下院 (Bundestag)은 11時間에 걸쳐 106名의 議員들이 大討論을 벌인 끝에 338:320으로 議會 및 行政府 所在地를 베를린으로 移轉하기로 最終 決定함.

- 統合條約 第2條에서 規定한 바에 따라 全獨議會는 戰後 暫定的인 秩序의 象徴이라고 할 수 있는 본으로부터 이미 首都로 決定된 바 있는 베를린으로 行政府와 議會의 所在地를 옮기기로 함으로써 統一獨逸의 將來에 새로운 意味를 賦與함.
- 이로써 베를린은 名實相符한 獨逸의 首都이자 장차 유럽統合의 政治·經濟的 中心地로서 東·西유럽을 잇는 文化的 架橋 役割을 하게 될 것으로 期待됨.

## 2. 移轉을 둘러싼 論點

○ 黨派的 利害를 超越하여 베를린과 본을 각각 主張한 議員들간의 論點은 다음의 몇가지로 要約됨.

- 現在 國家的 統一達成이후 兩 地域間 生活隔差 解消問題가 提起되고 있는 가운데, 베를린으로의 移轉決定은 差別意識을 느끼고 있는 東獨地域 住民들에 대한 經濟的·心理的 配慮가 될 것이 라는 것임.

- 實際 많은 東獨地域 住民들은 戰後 西歐編入에의 象徵이었던 본이 統一獨逸의 政治·行政의 중심지로 남고 베를린 移轉에 반대하는 決定이 이루어지는 것을 東獨住民들의 利害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決定으로 받아들일 정도였음.
- 移轉 費用의 問題로서 많은 베를린 移轉 反對論者들은 베를린 移轉 費用의 莫大함 (財務長官은 300억-900억 DM을 言及하고 있으며, '95까지의 豫算運用計劃에 전혀 反映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음)과 본·라인地域 經濟의 沈滯를 憂慮하였음.
- 그러나 베를린에의 移轉에 따른 投資는 과거 東獨地域에서 차지하는 베를린의 位置面에서 볼 때 周邊地域에 많은 産業聯關 效果를 創出할 것으로 期待되어, 결국 東獨地域 再建을 위한 統獨費用으로 看做될 수 있으므로 費用 問題는 별다른 論點이 되지 못했음.
- 라인地域의 經濟沈滯問題는 본이 새로운 機能을 갖는 도시로 탈바꿈함으로써 이제까지 經濟水準과 雇傭水準을 維持할 수 있도록 保障한다는 線에서 折衷되었음.

— 聯邦主義(Federalismus)와 中央集權主義(Zentralismus)의 論爭은 과거 不幸했던 歷史와 相關하여, 또한 巨大都市들의 수많은 問題點이 言及되면서 加熱되었으나 戰後 聯邦主義가 잘 可能하고 있는만큼 베를린으로의 移轉은 단지 憲法機關의 移轉이라는 象徵性만을 갖는 것으로 과거의 잘못에 執着해서는 안된다는 主張이 優勢함.

· 베를린이 이제까지 聯邦政府의 支援에 依存하여 自生力이 없고, 세계 다른 巨大都市들이 안고 있는 많은 問題點이 있으나 長期的인 計劃下에 整備와 開發을 한후 移轉을 서서히 推進할 경우 베를린이 새로운 面貌를 가질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었음.

— 戰後 秩序의 清算이라는 側面에서 將來 統一獨逸이 유럽내지 世界舞臺에서 어떤 役割을 할 것이 나 하는 문제와 相關 베를린으로의 移轉이 강력하게 主張됨.

· 對立의 時代에서 和解의 時代로 轉換된 世界史的 好機를 맞아 동유럽을 市場으로 統合시키는 遠大한 유럽통합의 構想이 實現되는 中心地로서 베를린의 役割이 強調됨.

- 反面 본은 分斷時代에서 臨時的 性格을 갖으며 西歐編入政策이 實現된 중심지로서 將來 統一獨逸의 外交活動 領域을 넓히기 위해서는 未洽하다는 主張이 優勢함.

### 3. 移轉案의 主要骨子

- 聯邦下院에서 決議된 베를린으로의 移轉案의 骨子は 다음과 같음
  - 聯邦下院(Bundestag)은 베를린에 所在함.
  - '91. 12. 31까지 聯邦政府는 下院 行政處 및 베를린 市政府와 協議, 베를린 移轉決定에 따르는 具體的 案을 마련하여 院內交涉團體會議 및 各 常任委員會가 早速히 開催될 수 있도록 與件을 마련함.
  - 4년안에 下院의 業務遂行能力(Arbeitsfähigkeit)이 갖춰지도록 要請됨.
  - 베를린에서의 下院 全體會議는 특별한 경우에 限하여 運營委員會의 決定으로 開催됨.
  - 늦어도 10-12年안에 行政府와 議會 所在地로서 베를린의 機能이 완전히 갖춰지도록 함.
  - 聯邦下院은 聯邦政府와 議會의 移轉에 따른 適切한 措置를 취해줄 것과, 政府機能중 主要部分(Kernbereich)을 베를린으로 移轉하여 베를린이 政治的인 機能을 다할 수 있도록 함.

- 베를린과 본은 議會가 베를린으로 移轉된 以後에도 본이 行政中心地(Verwaltungszentrum)로 남을 수 있도록 公正한 業務分擔에 合意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行政業務性格(Verwaltender Charakter)을 갖는 行政部處는 본에 남아, 이곳의 失業問題가 발생하지 않도록 配慮함.
- 본과 政府는 首都移轉에 관한 協約(Hauptstadtvertrag)을 맺어 移轉에 따른 본의 財政的 損失 補償과 본을 중심으로 한 地域의 機能變更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
- 聯邦大統領이 베를린으로 제일 먼저 옮겨감.
- 聯邦下院은 聯邦上院(Bundesrat)이 聯邦主義的 傳統에 依據, 그 所在地를 계속 본에 殘留시킬 것을 勸告함.

#### 4. 移轉決定에 대한 評價

- o 決議案 內容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를린으로의 移轉에 관한 基本的인 決定은 이루어졌지만, 본에 대한 상당한 配慮를 하고 있는 折衷案的인 性格이 강하며, 많은 細部 決定事項들은 後續措置를 통해 具體化될 수 있는 餘地를 남겨놓고 있음.
- 본에 殘留가 決定된 行政的 性格을 갖는 部處와 機構의 範圍는 具體的으로 論議가 안되고 있으나, 遞信省과 各 部處의 執行的인 業務만을 管掌하는 傘下機關이 擧名되고 있음.

- 各 部處는 본에 殘留시킬 部署나 機構를 自體的으로 決定하게 되며, 內閣에서 最終 決定할 것인데 首相室과 같은 완전히 政治的 性格을 갖는 部處를 除外한 全 部處가 그 機能의 一部 또는 相當部分을 본에 殘留시킬 것으로 豫想됨 .
  - 國防省의 경우 移轉시킬 수 없는 軍事施設(지하 방카등)이 많아 移轉이 困難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NATO司令部등을 본에 誘致하는 方案도 舉論되고 있음 .
  - 또한 본을 學問의 中心地로 育成하자는 案도 있으나, 雇傭效果가 적어 疑問視되고 있고, CSCE의 常設 事務處를 誘致하자는 案도있으나 이미 本部는 프라하에 두기로 決定된 만큼 紛爭防止 센터나 기타 會議體 常設機構의 誘致可能性이 論議되고 있음 .
- 베를린으로의 移轉에 따르는 具體的인 計劃案 作成은 建設省이 主務部處로 指定되었으나, 財源調達問題와 관련하여 財務省의 立場이 가장 困難하게 되었음 .
- 統獨費用 支辨을 위해 税金引上을 決定한 지 얼마안돼, 移轉費用 마련을 위해 다시금 税金引上이야기가 舉論되고 있음 .

- 財源이 限定된 가운데 이미 計劃되어 있는 東獨의 再建에 쓰여져야 할 돈들이 단지 國家의 位相을 높인다는 名目으로 憲法機關들의 베를린 移轉에 쓰인다는 非難도 擡頭되고 있음.
- 결국 統一獨逸의 經濟力에 많은 希望을 걸고 있기는 하나, 統獨前 税金引上을 둘러싼 論議 過程에서도 보듯 經濟的 現實을 無視한 政治的인 決定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同意하고 있음.

## 東獨 舊體制 清算關聯 加害者들 拘束

- 호네커가 지난 3 월 소련으로 탈출한 이후 베를린주 검찰은 4 명의 구동독 당과 정부 고위급 인사를 베를린장벽에서 국경탈출자에 대한 “ 살인교사” (Anstiftung des Mordes ) 로 체포함.
  - 구속된 4 명은 정치국원이자 전국가각료회의 의장 stoph ('70 동·서독간 정상회담시 동독측 대표), 전국방장관 kessler, 군장성이자 전국가안보위원회 (Nationaler Verteidigungsrat) 담당비서 streletz, SED 지역담당비서 Albrecht임.
  - 이들 4 명은 '74.5.3 당시 Honecker가 의장으로 있던 국가안보위원회 (8 명으로 구성, 주요국가 안보사항을 다룸) 의 일원으로서 동회의에 참가하여, 베를린장벽을 사수하기 위해 국경탈출자에 대해서 사격명령 (Schießbefehl) 을 내리는 결정에 동의한 인물들임.
- 구체제하에서 반법치국가적으로 행해진 정치적 폭행사례에 대해서는 신설주들의 사법체계가 확립되고,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형사소추할 방침임을 연방정부는 누차 밝힌바 있음.
  - 기존 서베를린 검찰이 주축이 되어 동베를린 검찰을 흡수, 가장 빨리 사법체계를 확립한 베를린 검찰은 “ 정권적 범죄행위” (Regierungskriminalität) 를 전담하는 임시조직을

편성하여 과거 체제수호를 위해 법치국가적 질서에 어긋나게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치국원, 국가안보위원회, 국경수비 문제를 담당했던 국방성, Stasi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음.

— 우선 가장 먼저 '61.8.13에 설치된 “반파쇼 보루” 라고 불리우던 베를린 장벽과 국경탈출 기도자들에 대한 사살 행위에 대해서는 명령자들로부터 명령을 수행한 군사병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할 방침임.

◦ 통계에 의하면 총 201명이 국경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베를린 검찰은 이미 153 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으며, 이중 38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살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고 함.

◦ 이러한 국경탈출자 사살명령은 동독인민회의에서 통과되어 '82.5.1 부터 발효된 국경법 (Grenzgesetz )에 의해 법제화 되었는데, 동법 27조에 의하면 “범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총격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 되게 되어 있음.

— 또한 이러한 국경탈출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총격사용 허용은 동독형법 213 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실정법적 규정들은 '66 년에 만들어진 “시민들의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UN협약” ('76 년 동독측에 의해서도 비준되었음)에 위배된다고 많은 법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음.

◦ 동협약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나라를 포함하여 어느 나라나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임.

- “정권적 범죄행위”를 전담·조사하고 있는 한 검사는 이러한 국경탈출자에 대한 총격명령을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천하려는 자들에게는 결국 “사형집행”이나 마찬가지로 였다고 비판하고 있음.
-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경사수명령하에 소위 “공화국 탈출자”에 대해서 “정조준 사격”을 가한 명령 집행자들에게 Honecker는 포상을 포함한 격려를 보냈다는 것이 문서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임.
- o 베를린 검찰은 법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살인 명령을 내린 자들에 대해, “간접살인죄” (Mittelbare Täter)와 “살인교사죄” 중 직접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체제의 특성상 하수인들은 명령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살인행위에 직접적 책임을 물어 “살인교사죄”를 적용함.
- 현재 통합조약에 의하면 과거 동독에서 일어난 형사처벌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의 동독형법을 적용 (물론 반법치국가적 조항은 배제)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것은 서독기본법 103 조에 의해 형사소추는 행위당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 때문임.
- “간접살인죄”의 경우는 직접 그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므로, 구동독 지도층의 국경탈출자에 대한 사살 명령은 결코 어떤 범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들에 대해 “살인교사죄”를 적용하였다고 함.

- 한편 구 SED (동독공산당) 의 잔당들과 소련측은 즉각 이러한 서독측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 구 SED출신 변호사들은 이러한 구속조치가 과거 양독간의 “정상적이었던 관계” 를 감안할때 당시 동독지도부에 대해서 신뢰를 기초로 협상을 추진했던 서독정부의 입장과는 상호모순되는 “승자의 논리” 라고 비난하고 있음.
  - 또한 소련측도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독일내 좌파세력을 폄하시키려는 기도” 로 간주하고 있음.
  - 한편 SED 출신 변호사들은 과거의 국경사수행위가 소련측의 목시적인 동의하에 유럽내 사회주의 세력 또는 동구제국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던 행위였으므로 현 독일정부는 소련과의 과거청산을 먼저 제기해야 하며, “체제유지” 를 단순한 “살인행위” 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의 재판의 추이가 주목됨.

# 統獨以後 輿論調查 結果

(Der Spiegel지, '91. 7.22, 29자)

o 통독이후 동.서독 주민들간의 관계 (통독이전과 비교하여) ( % )

	더 가까워졌다	더 멀어졌다	모르겠다
서독 주민	51	36	13
동독 주민	45	50	5

o 통독이후 동.서독 주민들간의 이질성 상존 문제

- 정도 ( % )

	매우 크다	매우 작다
서독 주민	65	34
동독 주민	70	30

- 이질성 존속기간 (예상) ( % )

	1 - 4년	5 - 6년	7 - 10년	그 이상
서독 주민	18	33	24	25
동독 주민	21	39	25	15

o 통독이후 통일에 대한 개개인의 기대 충족도 ( % )

	기대 이상	기대 이하	기대 수준
서독 주민	8	56	32
동독 주민	8	49	41

- "통독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고, 몇년의 과도기간 동안 양독이 독자성을 유지하며 병존하는 (nebeneinander)기간을 가졌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한 소견 ? (%)

	전적으로 옳다	상당히 옳다	고려해볼만했다	완전히 틀리다
서독주민	15	30	25	29
동독주민	19	28	22	30

- "얼마나 많은 동독주민들이 통독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동독주민의 대답 (%)

모 두	거의대부분	상 당 수	단지소수만	거의아무도
1	8	40	46	5

- 동독주민이 "2등국민"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

		그 령 다	틀 리 다	모 르 겠 다
서 독 주 민		39	45	15
동 독	'90 가을	75	15	8
	'91. 7	84	9	7

- 통독이 주민들에게 기쁨과 걱정중 어느 것을 주었다고 보는가 ?

(%)

	기쁨	걱정
서독주민	48	48
동독주민	51	47

- 통독이후 동독지역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서독지역의 복지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는가 ? (%)

	그 령 다	안 그 령 다
서독주민	58	40
동독주민	15	84

o 통독이후 경제상태에 대한 소견

- 각 개인별 경제상태

(%)

	양호함	부분적 양호	불량함
서독주민	64	30	5
동독주민	31	53	16

- 전체경제상태

(%)

	양호함	부분적양호	불량함
서독주민이 서독경제에 대하여	76	19	4
동독주민이 동독경제에 대하여	3	19	78

o 7.1부터 단행된 세금인상이 가계에 주는 부담

(%)

	크다	상당히크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서독주민	17	45	26	7
동독주민	21	48	20	7

o 통독이전의 사회보장 수준(Soziale Sicherheit)에 대한 소견

(%)

	서독이 우월	동독이 우월	차이가 없음
서독주민	65	21	12
동독주민	7	83	6

○ 동서독 주민들간의 상대방에 대한 견해

(%)

	서독주민		동독주민	
	옳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서독주민들은 동독주민들을 마치 식민지 정복자처럼 대한다.	31	66	63	36
서독주민들은 그들의 여유있는 경제생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데 익숙해 있지 않다.	39	60	64	35
동독은 서독에게 단지 상품시장일 뿐이다	55	44	92	7
많은 서독주민들이 동독주민들에 비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월감을 갖고 있다.	56	42	82	18

○ 베를린으로 의회와 행정부 소재지 이전결정에 대해

(%)

	서독주민	동독주민	독일전체
옳았다	48	76	54
틀렸다	50	21	43

○ 각당의 지지율

(%)

	기민/기사당 (CDU/CSU)	사민당 (SPD)	자민당 (FDP)	녹색당 (Gruene)	민사당 (PDS)
서독지역	40	41	10	6	1
독일전체	38	41	10	7	2

○ 미래에 대한 불안감

(%)

	서독주민		동독주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미래가 걱정스럽다.	23	25	31	44
가끔 좌절감을 느끼고 용기가 없다.	18	22	32	44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20	21	22	34

○ 현실생활속에서의 총체적인 만족도

(%)

	아주만족	만족	부분적 만족	불만족	전혀 불만족
서독주민	22	46	22	6	3
동독주민	7	27	46	13	6

○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서독주민	동독주민
1.	환경오염 제거문제	실업문제 해결
2.	실업문제 해결	동독경제 재건
3.	청소년 마약 근절	청소년 마약 근절
4.	주거환경 개선	범죄예방
5.	동독경제 재건	동독지역 청소년에게 동일 기회 부여
6.	연금보장	연금보장
7.	급진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 보호	동.서독 동일한 생활조건 창출
8.	사회적 형평 확보	환경오염 제거 문제
9.	범죄예방	사회적 형평 확보
10.	구공산당 잔재 제거	급진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 보호

	서 독 주 민	동 독 주 민
11.	동독지역 청소년에게 동일 기회 부여	평온한 생활보장
12.	국가재정 적자 축소	구공산당 잔재 제거
13.	물가억제	물가억제
14.	외국인 문제 해결	주택환경 개선
15.	평온한 생활보장	동등한 여성권리 보장
16.	동.서독 동일한 생활조건 창출	40년간 공산당 치하 불신제거
17.	40년간 공산당 치하 불신 제거	외국인 문제해결
18.	동등한 여성권리 보장	국가재정적자 축소

\* 가장 큰 관심의 편차를 보이는 항목은 동.서독 동일한 생활조건의 창출 (서독주민 41%, 동독주민 72%), 국가재정 적자축소(서독주민 51%, 동독주민 29%) 항목이었음.

o 동독주민들의 서독으로 이주희망 정도

	동독에 머물음	가능한한 동독에 머물음	가능한한 서독으로 이주함	서독으로 이주함.
18세-29세	44	41	13	1
동독주민 전체	73	21	5	1

# 舊東獨 共產政權下의 被害者에 대한 復權 · 補償問題

## 1. 法的 根據

- 統合條約 17條에 의하면 過去 東獨 共產政權의 反法治國家的 行爲의 犧牲者에 대해서는 統獨 以後 立法權者가 적절한 法的인 規定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18萬으로 推定되는 過去 舊體制 被害者인 東獨住民들이 각각 法院에 復權 및 補償을 要求하는 申請書를 提出하였음.
  - 이들은 反法治國家的인 恣意的인 判決을 통해 刑事上 拘禁되었거나, 精神病院에 强制入院 措置된 사람들로써 政治的인 復權과 아울러 經濟的인 補償을 苦待하고 있음.

## 2. 補償額 策定問題

- 현재 聯邦法務省은 被害者 代表 및 關係法律專門家 등이 參席한 가운데 聽聞會를 거쳐 立法을 推進中인데, 그 法案內容에 대하여 많은 論難이 계속되고 있음.

— 가장 論難이 되고 있는 部門은 補償額 問題인데 拘禁者들의 拘禁日을 基準으로 補償額을 決定하기로 方針을 定했으나, 拘禁日當 補償額 決定問題와 關聯, 政府의 財政形便이 問題가 되고 있음.

· 현재 法務省案은 拘禁期間 1달을 基準으로 450DM을 策定하여 約 15億 DM의 豫算을 計上하고 있음.

· 그러나 被害者들은 現 刑事補償請求權에서 規定하고 있는 600DM水準에도 못미치는 額數에 憤慨하면서, 拘禁者들의 苦痛에 相應하도록 補償額이 決定되어야지 財政形便이 補償額을 決定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음.

— 또한 이제까지 베를린障壁 以前에 東獨을 脱出하거나 移住해버린 사람들에 대한 補償은 전혀 考慮하지 않았는데, 立法聽聞會 過程에서 被害者와 野黨의 意見을 받아들여 補償額을 拘禁한달 基準 450DM이 아닌 300DM을 策定해 놓고 있음.

· 東獨地域에 殘留했던 犧牲者들에 대한 補償이 西獨으로 移住하여 이미 새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보다 더 時急한 것은 事實이지만 論難의 素地가 尚存함.

### 3. 被害者 補償範圍 決定問題

- 현재 推進中인 法案에는 被害者 補償의 範圍를 너무 좁게 단지 刑事上 處罰을 받은 者와 精神病院 등에 強制入院 措置된 사람, 不法的인 行政處分으로 國境近方에 살던 사람중 強制移住措置를 당하여 財産上 損害를 입은 사람에 限定하고 있음.
  - 被害者들은 그러나 體制에 抵抗하다가 받은 많은 職業上 差別(降等, 解雇, 職業教育 妨害, 昇進機會 剝奪), 精神的 被害 등에 대해서도 補償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함.
  - 이러한 被害는 法律的으로 明確하게 立證하기 困難한 점이 있으나, 被害者의 苦痛이라는 側面에서 보면 拘禁과 같은 정도의 被害라고 많은 被害者들은 主張하고 있음.
  - 따라서 拘束者 支援法(Haeftlingshilfegesetz)을 補完하여 立法을 推進하고 있으나, 좀 더 補償被害의 範圍를 넓게 考慮하기 위해서는 나찌 蠻行에 대해 被害補償을 規定한 聯邦被害補償法(Bundesentschaedigungsgesetz)에 準하는 法律이 制定되어야 할 것이라고 野黨인 SPD와 被害者 代表들은 主張하고 있음.

※ 聯邦被害補償法에 의하면 “ 政治的, 宗教的, 世界觀的, 人種的인 差別로 肉體와 健康, 自由, 財産 등의 被害를 입었거나 職業的, 經濟的 成長의 可能性을 剝奪당한 것” 에 대해서 補償이 이루어지도록 規定하고 있음.

#### 4. 現在의 當面問題

##### 가. 補償時期

○ 이러한 立法措置를 통해 補償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너무 늦게 이루어질 경우, 實際 補償의 惠澤을 많이 못받을 것으로 被害者 代表들은 안타까워 하고 있음.

— 실제 被害者 團體들이 調査한 바에 따르면 政治的인 拘禁者들의 70%정도가 나이가 이미 65歲以上으로 年老하며, 또 拘禁에 따른 後遺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함.

— 반면 舊東獨地域 新設州의 司法體系가 제대로 確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復權·補償 申請書類가 쌓여 있어 이를 審査 確定하는데 상당한 時日이 所要될 것이라고 함.

- 예를 들어 Erfurt市 같은 경우는 3명의 判事가 3,000餘件의 書類를 審査해야 하는데, 그 處理는 빨라야 2年이 걸릴 것으로 豫想되기도 함.

## 나. 名譽回復에 관한 問題

- 많은 被害者 代表들은 또한 物質的 補償에 앞서 우선 自身이 罪가 없었고 단지 政治的 動機로 被害를 입었다는 名譽回復에 관한 宣言이 聯邦 下院과 같은 國民의 代表機關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希望함.
- 東獨地域에 居住하던 被害者들이 西獨地域으로 와서 職場에 就職을 할 경우, 緣故地 警察署가 發行하는 身元證明書(Fuehrungszeugnis)를 提出해야 하는 바, 과거 拘禁 經歷이 抹消되지 않고 그냥 記載되어 있어 本意 아니게 差別과 不利益을 당하는 事例가 많다고 함.
- 또한 그 身元證明書에는 例를 들어 “ 刑法 214條에 의해 國家活動 危害行爲를 하여 處罰받았음” 이라고만 적혀 있어, 그것이 迫害였는지가 分明하게 明示되어 있지 않아 被害者들은 자신의 無罪를 證明하기 위해 또다시 많은 努力을 해야하는 矛盾이 發生하고 있음.

## 統獨以後 懸案問題 및 解決實態

### 1. 概 觀

- 獨逸統一에 의해 東獨地域 經濟는 90年中 -20% 成長할 정도로 後退된 반면에 西獨地域 經濟는 統合以後 2.3% 實質成長하였으며, 向後 몇년동안 獨逸 經濟는 税金 및 特別賦課金 引上 등으로 인해 成長率이 둔화될 것으로 展望되지만 점차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分析됨.
- 특히 많은 經濟學者들이 東獨의 市場經濟構造로의 急轉換에 따른 物價急騰을 憂慮했던 것과는 달리, 經濟統合以後 東獨地域의 消費者物價는 8.5% 上昇에 그쳤으며, 비록 東獨地域이 80%以上の 企業 倒産과 280萬名の 失業者·短縮勤勞者 發生, 私有化의 遲延 등으로 인해 短期的인 生産性 저하(90년 4/4분기 前年同期 對比 50%減少)에 직면해 있으나 92년이후 점차 回復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음.
- 그러나 東獨地域 經濟가 急速히 成長할 수 있도록 西獨地域 企業의 投資 및 外國投資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東獨地域의 社會間接資本 施設을 擴充해야 할 뿐만 아니라 新設 州政府·地方自治團體의 行政支援 體系를 確立하는 등 經濟成長 基盤을 構築해야 할 必要性이 제기되고 있음.

- 經濟的 問題의 원만한 解決趨勢와는 달리 東獨教育 體系의 改編 및 東獨住民 再教育問題, 社會的 異質性 殘存, 東獨體制 清算에 따른 진통, 東·西獨人間의 偏見, 下部構造의 統合에 따르는 問題點 등 實質的인 統合에는 상당한 時日이 所要될 것으로 보임.
- 이같은 獨逸統一에 비추어 볼 때 南北統合의 경우에는 2,000억\$ 이상의 統一費用이 들 뿐만 아니라 事前에 各 部門別로 統合對備計劃을 마련하는 등 치밀한 對應策을 講究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2. 主要 縣案問題

### 가. 概 要

- 統獨以後 여러分野의 實態에 관한 輿論調查 結果 ('91.7.22, Spiegel지)에 따르면, 가장 먼저 解決해야 할 重要課題로서 失業등 經濟問題 解決, 東獨地域 住民 生活水準 向上 등이 舉論되고 있으며, 急進勢力 排擊, 舊共產黨 殘滓 除去 등 政治問題에도 關心을 나타낸 것이 特徵임.
- 특히 가장 큰 關心의 偏差를 보이는 項目이 東·西獨間의 同一한 生活條件 創出(西獨住民 41%, 東獨住民 72%), 國家財政赤字 縮小(西獨住民 51%, 東獨住民 29%)인 것은 價值觀의 差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음.

主要 縣案問題 處理 優先順位

優先 順位	西 獨 住 民	東 獨 住 民
1	環境汚染 除去問題	失業問題 解決
2	失業問題 解決	東獨經濟 再建
3	青少年 痲藥 根絶	青少年 痲藥 根絶
4	住居環境 改善	犯罪豫防
5	東獨經濟 再建	東獨地域 青少年에게 同一機會 賦與
6	年金 保障	年金 保障
7	急進勢力으로부터 民主主義 保護	東·西獨 同一한 生活條件 創出
8	社會的 형평 確保	環境汚染 除去問題
9	犯罪豫防	社會的 형평 確保
10	舊共產黨 殘滓 除去	急進勢力으로부터 民主主義 保護
11	東獨地域 青少年에게 同一 機會 賦與	평온한 生活保障
12	國家財政 赤字 縮小	舊共產黨 殘滓 除去
13	物價抑制	物價抑制
14	外國人問題 解決	住宅環境 改善
15	평온한 生活保障	同等한 女性權利 保障
16	東·西獨 同一한 生活條件 創出	40年間 共產黨 治下 不信 除去
17	40年間 共產黨 治下 不信 除去	外國人 問題解決
18	同等한 女性權利 保障	國家財政赤字 縮小

## 나. 部門別 實態

### 東獨地域 經濟基盤 崩壞로 인해 後遺症 深刻

- 東獨地域 企業中 80%以上이 倒産, 총 84만여명의 失業者 및 200여만명의 短縮勤勞者 發生(東獨地域 勤勞者의 1/3以上) 으로 社會的 緊張이 高潮됨.
  - － 東獨企業體는 거의 全分野에 걸쳐 西方企業과 競爭할 수 있는 業種이 全無한데다 商品開發과 販路 등의 問題로 國內市場을 거의 상실함과 동시에 輸出市場도 대부분 상실
- 國營企業의 民營化 不振, 所有權 返還 蹉跌 등으로 인해 東獨地域에의 投資가 萎縮됨.
  - － '90 下半期 企業體의 施設投資가 西獨地域 1,700 억DM인데 비해, 東獨地域 170억DM
- 劣惡한 社會間接資本, 東獨 企業體의 현저한 競爭力 弱화, 經營者·專門人力 不足 등으로 인해 東獨地域 産業 生産이 前年對備 50%以下로 減少함.
  - － 東獨의 賃金水準이 西獨의 50%에 불과, 公共機關 從事者들이 個人會社로 移職
- 東獨地域 住民中 西獨地域에의 就業('90年중 50萬名) 完全移住('90年 36萬名) 등으로 인해 居住人口 減少, 勞動力 不足狀態인데다 西獨人의 東獨地域 勤務忌避 傾向이 대두됨.

- 全 農家의 50%인 80萬 農家가 破産狀態
- 失業者에 대한 失業手當 支給, 職業訓練 實施, 職業資質向上 강좌 등을 實施하고 있으나 成果 未洽

統一費用 過多로 인한 聯邦政府 財政政策 打擊

- 統一費用 뿐만 아니라 蘇聯·東歐地域에서의 損失 補填 등으로 인해 聯邦政府의 財政赤字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子女가 돌인 中産階層 家計의 경우 年間 負擔額이 1,000DM에 달하고 있어 더이상의 税金引上도 困難한 實情에 있음.
- 특히 統一費用외에도 首都移轉費用, 유럽共同航空 開發計劃, 鐵道設備 保全 등 豫想치 못한 費用 등으로 '91年末 基準 聯邦財政赤字는 1조 3,000억 DM 인데다, 이에 대한 利子만도 政府豫算의 社會保障 支出額 850억 DM과 맞먹는 수준임.

— 統一關聯 部門의 財政赤字도 '91年 560억 DM

- 그럼에도 불구하고 公共會計赤字 擴大, 保險金 補填, 舊東獨地域 企業體의 債務額 補填으로 인해 聯邦財政赤字는 더욱 增加할 것으로 보임.

統一費用 主要 推定値

(단위 : 억 DM)

區 分	所 要 額	備 考
○ 蘇聯軍撤收費用	130	
○ 舊東獨政府財政赤字 引受分	300	
○ 舊東獨 對外債務 引受分	300	
○ 信託廳 借入金	900	
○ 過去東獨國有企業의 債務引受分	1,000	
○ 東獨地域 住宅의 補修維持・現代化	500	
○ 農業構造再編을 위 한 支援金	70	
○ 交通網 改善	1,270(鐵道 480, 道路 700,海運 80, 空港 10)	
○ 環境淨化施設 投資	2,000	※ 産業構造
○ 郵便・通信分野 施設投資	550	再編을 위한
○ 教育投資	770	投資는 民間
○ 에너지産業現代化	1,000	企業에 委任, 政府는 公共 投資에 注力
總 計	8,790	

## 東獨地域의 行政支援體系 未備

- 統獨으로 인해 西獨地域 州政府은 歲入이 增大된 반면에 東獨地域은 經濟深滯, 行政體系 未備 등으로 歲入이 激減, 財政自立度脆弱
  - 東獨地域이 西獨地域의 生活水準에 이르기 위해 서는 西獨經濟 成長率에 비해 매년 5倍以上의 經濟成長이 必要하며, 매년 1,000억 - 1,500억 DM 所要推定
- 東獨地域에서의 行政·司法(특히 登記業務등)體系 가 未備되어 非能率 招來, 業務 폭주
- 住宅需要 充足을 위해서는 東獨地域에만 年間 10만채(獨逸全體 50만채)를 新設해야 할 뿐만 아니라, 100만채의 住宅은 維持가 不可能하고, 不居住 住宅도 50만채 이상인데다 “막대한 損傷” 이상의 建築物이 51%에 달하는 등 東獨地域 住宅問題에 있어서 많은 缺陷이 發見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제대로 支援되지 않고 있는 實情임.
  - 특히 新設 5個州의 住民數는 계속 減少 趨勢 (95년경 1,500만명 豫想)이면서도 높은 離婚率등으로 인해 새가정을 꾸리려는 需要는 계속늘고 있음.

## 信託廳의 私有化 推進實績 未洽과 所有權 紛爭繼續

- 舊東獨體制下의 國有였던 人民共有財産을 處分하고 있는 信託廳은 現在까지 전 製造業種중 1/8 (8,790개 企業중 1,596개 매각), 大型 百貨店 100%, 요식업 및 小商店 70%, 호텔과 藥局 50%를 私有化 하는데 成功하였으며, 65만명의 일자리 確保, 80억 DM의 投資를 약정하고 있음.
- 그러나 第3次 産業의 私有化 實績에 비해 製造業등 生産的 企業의 私有化 實績이 미미하며, 過去 債務 清算問題, 共產黨 出身幹部 殘存 등의 問題로 西方 企業의 投資가 저조하여 東獨의 經濟回復에는 별 도움 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아직도 수많은 信託廳 산하 企業體도 收入에 비해 支出이 많아 投資支援을 하려고 해도 “ 밑빠진 독 ” 과 같은 狀態이며, 특히 환경오염 이 심한 東獨地域 化工業의 處理는 信託廳의 負擔이 되고 있음.
  - 또한 過去 東獨政權에 의해 강제로 몰수된 財産 權의 返還 및 處理가 遲延되고 있는데다, 法的 所有權關係가 不分明하여 引受自體를 꺼리고 있음 (현재 所有權 返還 申請만 하여도 130만건 이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行政人力과 經費가 所要 될 것으로 豫想)

兩獨人間의 文化的 異質性 및 西獨地域 住民에 대한 税金引上 등으로 인해 統獨에 대한 否定的 心理波及

- 西獨地域 個人 및 法人所得에 대한 7.5% 追加 課稅, 石油類稅, 保險稅, 自動車稅, 담배稅 引上 措置(西獨地域 國民個人所得에 대한 담세율 '95년 45% 豫想)로 인해 西獨地域 住民 不滿高潮
- 統獨以後 輿論調查 結果에 따르면, 生活의 質, 文化的 差異, 自我意識 등에서 相互 異質感이 尚存(65 - 70%)해 있을 뿐만 아니라, 統獨에 대한 期待感이 減少(50%以上)한데다 東獨地域 住民은 『2등 國民』이라는 劣等意識마저 갖고 있어(86%) 實質 統合에의 障礙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음.  
( '91.7.22자 Spiegel지 )
- 특히 東獨住民은 “ 人民 ”, “ 社會主義 ”, “ 大衆 ”이라는 말을 常用化하여 集團的 意識과 더불어 意思疏通過程에서의 階層化 傾向이 두드러져 千篇一律적이고 機械的인 公式言語를 많이 쓰고 있음이 특징으로 지적됨 .
- 勞動 · 商品 · 時間 · 돈 등 日常生活속의 現實 感覺은 물론, 用語의 의미가 서로 달라 西獨住民의 優越感과 東獨住民의 心理的 不安感 加重
- 결국 40年間의 共產獨裁體制는 不自由와 人間性 輕視 등을 통해 東獨地域 住民들의 精神狀態를 荒幣化시켰음 .

## 其 他

- 汚染된 河川 · 空氣 등의 淨化가 時急
  - 計劃經濟下에서는 環境汚染과 經濟分野 惡化間의 惡循環 되풀이
- 東獨地域의 保健醫療水準은 西獨地域 住民들에 비해 劣惡할 뿐만 아니라 醫療陣의 再教育, 病院施設 現代化, 綜合病院 財政自立 등이 時急
  - 東獨地域 年金額은 西獨年金額의 1/2
- 東獨舊體制 人士들에 대한 處罰 및 補償問題
  - 處罰에 대한 法の 형평문제 대두
  - 減縮對象者 및 殘留者들도 將來에 대한 不安感과 西獨出身者들과의 精神的 · 經濟的 갈등 尚存
- 外國軍 撤收 · 獨逸軍 規模縮小(30여개 聯邦軍部隊 廢止)에 따른 270여개 基地 閉鎖와 東獨人民軍의 聯邦軍 編入 · 減縮등으로 인한 失業問題, 經濟基盤 상실 可能性
- 各種 體育團體 · 社會團體 등의 統合에 따른 副作用

### 3. 獨逸政府의 解決努力

#### 가. 聯邦政府의 機構改編

- 獨逸聯邦政府의 各 部處는 統獨以後 發生하는 諸問題가 過渡期的 事案임을 勘案, 해당 各 部處 內에 專擔機構를 新設하거나 既存組織을 活用하여 處理해 나가고 있음
- 특히 各 部處는 베를린에 支所를 設置, 舊東獨 中央部處의 清算作業을 進行시키고 있음.
  - 人力引受與否 決定, 建物 接收·移轉 등



部處別	擔 當 業 務	組 織 改 編 內 容
4. 法務省 (BM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東獨地域 新設 州들의 司法 體系 設立 支援</li> <li>○ 舊東獨 共產黨에 의한 被害 者의 復權 · 補償</li> <li>○ 反法治國家的 加害者들에  대한 處罰</li> <li>○ 東 · 西獨 法律體系 同化</li> </ul>	<p>위한 『政治教育 東歐問題研究擔 當局』을 新設 (4개과)</p> <p>○ 文化擔當室을 失鄉問題擔當室 로부터 分離하는 한편, 2개全擔部 署 新設</p> <p>○ 東獨體制下에 서의 被害者에  대한 復權 · 補償 問題를 다루는 『復權 · 補償問 題擔當室』을 新設 (8개과로  구성)</p>
5. 財務省 (B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舊東獨地域 沒收財產權의 返還 · 補償</li> <li>○ 舊東獨 國有企業 私有化와 再編指導 (信託廳活動 監督)</li> <li>○ 新設 5個州 財政支援과 統獨 費用 調達</li> </ul>	

部處別	擔 當 業 務	組 織 改 編 內 容
6. 經濟省 (BMW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舊東獨地域 經濟再建 및 경 기부양책 실시</li> <li>○ 新設 5個州에 대한 外國投資 誘致 및 企業新設 장려</li> </ul>	
7. 農林 水産省 (B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農業生産協同組合의 構造 改編, 自營農 育成</li> <li>○ 農業 生産手段의 私有化 措置</li> </ul>	
8. 勞動 · 社會省 (B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舊東獨地域 失業對策</li> <li>○ 各種 社會保障制度의 東獨地 域 擴大 實施</li> </ul>	
9. 保健省 (BM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舊東獨地域 醫療體系 轉換</li> <li>○ 醫療保險體系의 東獨地域 擴大 實施</li> </ul>	
10. 交通省 (BM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舊東獨地域 交通分野 社會 間接資本施設 擴充</li> </ul>	
11. 環境省 (BM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東 · 西獨間 環境體系 統合</li> <li>○ 舊東獨地域 特殊汚染地帶에 대한 特別對策</li> </ul>	

部處別	擔 當 業 務	組 織 改 編 內 容
12.國防省 (BMVT)	○ 舊東獨 人民軍의 獨逸聯邦 軍 統合	
13.婦女· 青少年省 (BMFJ)	○ 舊東獨 青少年들의 醇化 ○ 東·西獨間 落胎制度 統合	
14.家族· 老人問題 擔當省 (BMFS)	○ 東獨地域 年金生活者 福祉體 系 確立	
15.遞信省 (BMPT)	○ 東獨地域 郵便·通信分野 社會間接資本 施設 擴充	
16.建設省 (BMBAU)	○ 東獨地域 住居 現代化 및 住宅景氣 活性化 推進	
17.教育省 (BMBW)	○ 新設 5個州의 教育 改革 ○ 共產體制 관련 學科·研究 機關 撤廢 및 從事者 解雇	

部處別	擔 當 業 務	組 織 改 編 內 容
18.科學 技術省 (BYFT)	○ 東獨地域 核發電所 技術安全 및 放射線 保護	
19.經濟 協力省 (BMZ)	○ 舊東獨의 第3世界 支援事業 引受	
20.公報處 (BPA)	○ 統合後 放送·言論再編	國內局 副局長, 對內·外政策課, 言論·弘報擔當 西베를린事務所 新設

나. 議會 및 行政府 所在地를 베를린으로 移轉決定

- 獨逸統合條約 第2條에서 規定한 바에 따라 全獨  
議會는 이미 首都로 決定되어 있는 베를린으로  
議會 및 行政府의 所在地를 移轉키로 決定(6.20)  
함으로써, 差別意識을 느끼고 있는 東獨地域 住民  
들에 대한 經濟的·心理的 배려와 아울러 베를린이  
名實相符한 統一獨逸의 中心地로서 東西유럽을 잇는  
架橋役割을 하게 될 것으로 期待됨.

— 1次的으로 聯邦大統領, 聯邦下院이 베를린에 移轉하며, 行政府 機能中 主要部分을 베를린으로 移轉하여 베를린이 政治的 機能을 修行토록 함.

○ 특히 베를린이 東獨地域內에 위치하고 있어 베를린에 대한 投資는 베를린自體의 自生力을 높일 뿐 아니라 周邊地域에 많은 關聯産業 效果를 創出, 東獨經濟回復의 先導的 役割을 할 것으로 豫想됨.

#### 다. 司法·法律體系 確立

○ 第2次 統合條約에 따라 기본적으로 東獨地域에서도 西獨法이 擴大 適用되지만, 일방적인 法律移入으로 혼란이 豫想되는 分野에는 過渡期間 동안 東獨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規定되어 있음.

○ 또한 西獨의 경우에는 地方法院, 州法院, 高等州法院, 聯邦最高法院의 4審으로 되어 있고, 東獨의 경우에는 市·郡法院, 地區法院, 最高法院의 3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財政法院, 勞動法院, 社會法院, 行政法院이 存在하지 않았기 때문에 法治國家的 司法體系를 確立토록 하였음.

○ 東獨의 法院判決과 行政決定은 法治國家的 原則과 綜合條約에 어긋나지 않는 한 統合後에도 계속 有效

○ 특히 過去東獨地域 判·檢事들이 共產主義 體制 守護의 核心人物이었던 점을 勘案, 『法官選出 委員會』, 『檢事任用委員會』에서 再審査·任用 하고 있으며, 기존 東獨의 判檢事들을 再教育시키 는가하면 (關聯費用의 50% 聯邦政府 負擔) 隱退한 西獨地域 判·檢事·法律執行人的 東獨地域 派遣을 推進하고 있음.

— 法官의 경우, 法官選出委員會(判事 4명, 聯邦 議員 1명, 州議會 및 地方議會議員 5명으로 '90. 7.22자로 구성)의 審査를 거쳐 3-5년간 의 試補期間이 경과한 후 終身法官으로의 任用與否를 決定(베를린州는 東베를린地域 法官중 4명을 除外하고는 전부 解雇시키고, 西베를린 法官들이 管轄權을 장악하였음.)

— 行政法院등 特殊法院의 경우에는 130명의 西獨 法官을 東獨地域에 派遣(關聯費用 50% 聯邦政府 負擔), 西獨判事 2人, 東獨判事 1人으로 合議部를 構成토록 하였음.

○ 그러나 '91.4.15까지 舊東獨出身 法官·檢事選拔 을 완료하고 새로운 法曹人을 追加 採用할 計劃 이었으나 아직까지 法官·檢事選出委員會의 활동 이 지지부진한데다, 업무는 폭주하고 있고 (刑事 裁判의 경우 訴訟依賴件數가 800%증가, 4만 5천件 未處理中) 西獨 法曹人들이 自發적으로 東獨으로 건너가지 않고 있어 상당기간 혼란이 豫想됨.

## 法曹人力 不足現況

(단위: 명)

區 分	總所要人員	選拔可能舊東獨人力	追加所要人員
法 官	5,000	600 - 700(1,200)	4,000 이상
檢 事	1,200	400 - 450 (900)	700 이상
法 律 執 行 人	3,000	0	3,000
計	9,200	1,000-1,150(2,100)	7,700 이상

( )은 舊東獨地域 전체인원수

- 또한 舊東獨地域 收監者들에 대한 刑量審査委員會를 개최하는 한편(2회의 赦免措置로 대부분 석방), 政治的 加害者, 間諜活動을 한 者, Staasi에서 反法治國家的 行爲를 한 者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州法務省이 司法體系를 確立하고, 각종 證據資料가 確保되는대로 聯邦法에 의해 계속 處罰해 나갈 方針임.
- 各種 被害者에 대한 復權 및 補償은 關係法令를 制定해 推進하고 있으나, 補償財源의 確保와 關係人의 申請·確認 節次로 相當期間이 所要될 展望임.

## 라. 行政體制 統合과 公務員 再教育

- 獨逸聯邦政府는 綜合過渡期間의 『政府 全權委任者』가 行政業務를 選舉에 의한 公式的인 新設 州政府에게 移管한 以後에도 聯邦內務省內에 設置된 『組織整備委員會』를 통해 東獨地域에 대한 行政 支援을 하고 있음.
  - 西獨 聯邦政府 및 州政府는 東獨地域 州政府·州知事들의 要請에 따라 專門委員을 東獨地域에 派遣, 1996.6.30까지 特定諮問業務를 수행함.
  - 統獨으로 인한 各 部處別 組織改編·縮小·統合問題는 실제 行政需要와 豫算運用 可能 範圍內에서 個別處理함.
  - 특히 內務省은 『新設 5個州 實務팀』(Arbeitsstab Naue Laender)을 통해 東獨再建問題를 諮問(聯邦主義的 行政特性上 指示形式이 아닌 諮問形式)하는 한편, 各 州政府 內務省에 設置되어 있는 『再建團』(Aufbaustaebe)과도 協力하여 業務를 處理하고 있음.
- ※ 再建團의 構成 : 地方自治團體長, 地域經濟團體의 代表, 地方勞動事務所長, 地方信託廳代表 및 필요에 따라 州政府 代表나 聯邦雇傭廳의 代表가 追加됨.

- 西獨에는 人口 6,000만에 450만의 公務員이, 東獨地域에는 人口 1,600만에 200만의 公務員이 公共業務分野에서 從事하였는데, 이는 東獨이 中央統制體制를 유지하기 위해 行政網이 肥大한 것으로서 統合에 따른 東獨地域 公務員의 解雇 및 再審査 등이 不可避한 實情이었음.

  - 解體·縮小措置에 該當되어 失職狀態에 들어가는 公務員들은 年齡에 따라 6개월 또는 9개월간 平均 급여의 70%의 待機給料請求權 保有 (이 期間中 새직장 마련을 위한 職業轉換教育을 받음)
  - 實務者級 公務員들은 계속 勤務를 원하는 경우 최소한 3年間の 試補期間 (各 部處마다 期間이 다를 수 있음)을 거쳐야 함.

- 그러나 舊東獨 公共機關 從事者로서 解雇되지 않고 再任用되는 자는 等級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反法治國家的 前歷與否, 職位에 상응하는 資格保有 與否 등을 審査받아야 하며, 獨逸憲法上에 명기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와 새로운 體制가 요구하는 職務能力을 培養하기 위해 集中的인 再教育이 實施됨.

猶豫期間 內容

區 分	資 格	猶豫期間	備 考
高位職	대학교 졸업자격이상	4 년	
高級職	전문학교 졸업자격이상	3 년	
中級職	고등학교 졸업자격이상	2 년	
單純職	중학교 졸업자격이상	1 년	

公務員 再教育內容

對 象	實施機關	教 育 重 點	教育期間
高位職	聯邦中央 公務員 教育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憲法이 規定한 民主的, 聯邦主義的, 法治國家的, 社會的 市場經濟秩序에 대한 認識 提高</li> <li>○ 法治行政과 能率的인 行政體系 構築을 위한 資質 向上</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憲法 · 行政法 등 必須 科目 : 5週</li> <li>○ 컴퓨터 등 選擇科目 : 1週</li> </ul>
州政府 公務員, 地方行	新設 5個 州와 자 매결연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憲法秩序</li> <li>○ 州政府管轄 所管業務</li> </ul>	2 - 3 週

對 象	實施機關	教 育 重 點	教育期間
政機關 公務員	맺고 있는 西獨地域 州政府教 育院에서 東獨地域 으로 教 育者派遣		
地方行 政機關 公務員	現場實習 教育 (西獨地域 地方公務 員이 現場 指導)	○ 地方行政 關聯 所管業務	

마. 東獨人民軍 解體와 聯邦軍 編入

- 1991.4.1부로 聯邦軍의 陸·海·空軍에 새로운 部隊를 設置, 東獨人民軍(東部聯邦軍)을 編入시킴과 동시에 東獨人民軍은 1991.6.30자로 解體됨. (9만명의 東獨市民軍은 '94년까지 5만명으로 減縮)

○ 그러나 東獨人民軍 將校중 50%가 전역당했으며 (다른 公務員에 준하는 대기급여 수령), 殘留한 將校 및 下士官들도 西部獨逸에 派遣되어 政訓教育(2주이상)을 이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2年동안의 試補期間을 거쳐 評價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계속 勤務與否 決定

※ 獨·蘇 撤軍協定에 따라 1991年 5月末 현재 4만 1천명의 軍兵力, 9천명의 民間人, 26만톤의 物資가 撤收하였으나, 撤收軍人들의 家屋 建築問題를 둘러싸고 蘇聯軍의 撤收가 遲延되고 있어 94年 12月末까지 蘇聯軍 30만명이 豫定대로 撤收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바. 統一獨逸의 福祉政策

○ 統獨後 單一화된 物價水準으로 볼 때 西獨人の 平均實質賃金은 2,300DM, 平均年金도 1,662DM인데 비해 東獨人の 平均實質賃金은 960DM, 標準年金 672DM, 社會福祉補助金 495DM에 불과하여 東獨市民들은 사실상 『2級 市民』으로 轉落해 있음.

○ 그러나 東·西獨間의 經濟的·社會福祉的 格差를 메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財政需要가 뒤따를 뿐만 아니라 獨逸社會의 老齡化 傾向과 더불어 東獨地域에의 偏重支援은 全獨에서의 均衡的인 社會保障政策과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2000年代 獨逸社會福祉政策의 또다른 問題로 擡頭되고 있음.

- 특히 數年(7年 정도)내에 新設 5個州가 西獨地域과 동등한 經濟的 能力 및 所得水準에 到達하기 위해서는 年間 10%이상의 成長을 達成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經濟奇蹟은 期待하기 어려운 狀況임.

#### 바. 積極的인 東獨地域 景氣活性化 圖謨

- 獨逸聯邦政府는 東獨地域에 대한 景氣浮揚策을 發表('91.3.8), 強力한 行政的 支援 講究
- 特別減價 상승, 投資補助金 支給 등 投資誘引措置를 통해 個人投資 및 企業新設 積極 獎勵
- 社會間接資本, 住宅 및 都市建設 및 公共投資를 早期에 發注, 雇傭創出과 他産業分野에의 波及 도모
- 統獨으로 經濟的 利得을 얻는 階層으로부터 一定額을 徵收, 統一費用 財源 擴大 措置

#### 사. 教育統合

- 聯邦政府는 各 州政府와 協力하여 兩獨地域間 教育制度 同一化, 教育施設 隔差解消를 위해 教科 改編, 教員 解雇, 職業教育 強化, 大學生 人員 調整 등을 實施하고 있음.

#### 4. 評價 및 展望

- 獨逸統一 1주년에 즈음한 오늘날 統一獨逸의 國民 經濟規模는 커졌으나, 東獨地域 經濟의 持續的인 下降으로 인해 經濟力은 오히려 後退한 實情임.
  - 그 結果 統一獨逸의 1인당 GNP는 프랑스보다 낮아졌으며, 3%미만의 인플레 維持時代는 지나 갔고, 輸出額 第1位의 위치도 흔들리고 있음.
- 특히 “手術은 成功했으나 患者는 죽어버린 狀態” 처럼 東獨經濟가 崩壞됨으로써 統一獨逸의 經濟마저 威脅을 받고 있으며, 東獨地域에 市場經濟制度를 導入한데 따른 效果도 相當한 時日을 요하게 됨으로써 兩側地域 住民의 不滿이 高潮되고 있는 趨勢임.
- 아울러 獨逸政府는 迅速한 東獨經濟回復을 위해 税金 引上과 財政赤字 運營 등을 통해 統獨費用을 調達하고 있으나, 利子率 상승, 인플레 憂慮, 마르크貨 信賴 下落 등 副作用에 직면해 있음.
- 基民黨 政權은 이와 같은 많은 問題點에도 不拘하고 2년안에 主要한 社會間接資本施設과 行政·司法體系가 確立되고 5년안에 東獨住民들이 受容할 수 있을

정도로 物質的인 生活水準이 西獨地域의 못사는 州(30% 隔差)정도로 上昇할 것으로 樂觀하고 있음.

- 결국 東獨地域 經濟의 飛躍的인 發展에 의해 統一獨逸의 經濟力도 強化될 것이며, 新設 5個州의 行政司法體系가 제대로 稼動될 경우, 統一의 副作用은 最小化할 것으로 보임.
- 단지 東獨地域 住民에 대한 再教育과 適應, 異質的 認識의 克服, 環境汚染 除去問題, 住居環境 改善 등은 相當期間이 지나야 解決이 可能할 것이며, 獨逸政府의 各별한 努力이 要求되는 分野라 하겠음.

## 5. 南北統속에의 示唆點

- 일단 北韓體制가 開放·改革의 段階에 접어들게 된다면, 北韓政權이 崩壞되거나 殘存與否와는 상관없이 南韓에 의한 吸收統一의 方向으로 統一過程이 進行될 것임.
- 단지 現 南北關係는 統一前 獨逸에 비해 異質感이 極甚하고 軍事的 緊張이 尚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이 吸收統속에 대해 강한 拒否感을 갖고 있기 때문에 吸收統속의 與件이 未成熟된 狀態임.

- 따라서 各 部處別, 分野別로 南北統合對備計劃을 수립하되, 北韓體制의 變化樣相, 時期, 段階別 戰略 등을 綜合的으로 想定해야 할 것임.
  - 아울러 南北統合過程을 待機法令 등으로 具體化함으로써 過渡的 混亂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法令研究를 推進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총 2,000 - 4,000억 \$의 統一費用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90年度 韓國의 GNP 2,300억 \$)되는 바,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통해 統一費用을 自擔할 能力을 確保하는 한편, 北韓經濟를 市場經濟 構造로 轉換해 나가는데 있어 초래되는 副作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經濟力을 健實하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임.
- 內需市場 擴大, 純外債 減少, 貿易收支 好轉 등
- 民主的 政黨制度和 地方自治制度를 早期에 定着시킴으로써 統一에 對備하는 한편, 政黨法, 選舉法 改編時이를 考慮토록 함.

## 東獨地域의 地方行政體系 構築

### 1. 舊東·西獨의 地方行政體系上的 差異點

- 地方行政體系面에서 볼 때 舊西獨地域은 基本法(憲法) 第20條, 28條에 의해 聯邦主義(Foederalismus)原則이 確立되어 있었으나, 舊東獨地域에서는 共產黨의 領導原則아래 中央集權的 形態를 취함.
  - 獨逸의 統一은 西獨의 聯邦主義에 기초한 地方分權主義가 東獨의 中央集權的인 抑壓體系에 대한 勝利라는 觀點에서도 把握할 수 있는 만큼, 統獨以後 西獨의 地方行政體系에 따른 舊東獨地域의 새로운 行政體系 構築問題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
  - 舊西獨에서는 公共의 利益을 위해 統一的으로 規定되어야 할 部分(外交, 國防, 財政, 郵便, 水路管理, 領空管理, 國境守備)만 聯邦政府 管轄이고, 그 밖의 事項에 대해서는 各 州政府와 地方自治團體가 管轄權을 가짐.
  - 舊東獨에서는 “東獨地域人民代表에 관한 法”(Gesetz ueber die oertlichen Volksvertretung in der DDR) 第1條에 “地域人民代表는 SED의 領導아래 各 政黨이 망라된 民族戰線과 大衆社會組織과 協調하여 發展된 社會主義 創造와 勞動者, 農民權力의 實現을 위해 努力하며, 그 基本指針은 民主的 集中主義原則(Demokratischer Zentralismus)이다” 라고 明示하고 있음.

地域行政의 가장 最高 意思決定機關은 地域 人民委員會(Raete)이며, 委員長(Ratsvorsitzende, 西獨의 市長·郡守에 해당)이 보통 17명으로 構成되어 있는 各 分野 分科委員을 統率하며, 上部인 Bezirk(舊東獨은 過去 分斷 以前의 州를 없애고 地方을 15개 管區로 나누었음)와 그 上部인 閣僚會議(Ministerrat)의 指示를 받음.

따라서 地方自治라는 概念은 1950년이래 舊東獨에서는 存在하지 않았으며, 主要한 決定事項은 中央政府로부터 指示를 받아 地域人民委員會가 處理함.

또 西獨地域과 다른 점은 住民들의 生活과 密接한 분야인 上下水道, 住宅, 社會·文化施設 管理 등의 業務는 國有企業에 의해 處理되었다는 事實임.

## 2. 新設 5個州의 地方行政體系 構築

- 統獨과 더불어 舊東獨地域에는 비로소 1950年代 없어졌던 新設 5個州가 復活되고, 舊西獨地域의 地方自治形態(Stadte, Gemeinde, Kreise)에 따라 새로운 地方行政體系가 構築되어야 했음.
- 따라서 새로운 體系構築에는 行政機構 再編, 人力充員, 財政自立度 向上 등 수 많은 課題의 解決이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聯邦 內務省과 舊西獨의 州政府 및 地方自治團體는 人力·物資支援, 財政支援 등을 통해 舊東獨의 地方行政體系 構築을 支援하고 있음.
- 한편 舊西獨의 各 地方行政機關의 聯合會는 行政의 聯邦主義에 의거 各 地方行政機構의 最高 意思決定機關으로서, 舊東獨에 新設된 各 Staedte (中·大都市에 해당), Gemeinde (小都市, 邑에 해당), Landkreise(郡에 해당)의 會員加入을 推進하고 있으며, 一線에서 西獨으로부터의 行政支援를 總括하고 있음.

### 3. 舊東獨地域의 地方行政體系 構築을 위한 舊西獨의 支援

○ 統獨이 되기전 '90年初부터 舊西獨側은 舊東獨地域의 地方行政體系 構築을 위해 각종 形態의 行政支援을 提供해 왔음.

－ 이미 東·西獨間 交流協力期間中 맺어졌던 都市間 姊妹結緣(staedtepartnerschaft) 通路를 통해 주로 初期에는 物資支援을 提供했음.

· 通信手段(전화, 팩시밀리), 各種 情報油印物 提供

－ '90年代 中盤부터는 새로이 諮問, 세미나 강사 派遣, 行政人力 派遣 등 人的資源이 增加하였고, 建築資材, 自動車, 事務用 什器 등의 支援도 행해짐.

－ 統獨以後에는 統合條約 第15條 (“ 聯邦政府와 舊西獨의 州政府는 新設 5個州 行政體系 確立에 行政支援함” ) 에 따라 體系的인 行政支援이 이루어짐.

· 行政諮問團의 組織·派遣

· 常駐專門人力 派遣 : 聯邦內務省은 人力派遣에 따른 補助基金을 '91·'92년 각각 1억DM씩 計上함.

- 舊東獨地域 公務員에 대한 再教育, 職業教育 支援
- 상기 行政支援을 效率的이고, 體系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聯邦內務省, 各 州內務省, 各 地方行政機關 聯合會側은 긴밀히 協調하고 있음.
- '90.7.29 西獨의 各 州內務長官 會議에서는 既存의 東·西獨間 都市姉妹結緣 形態로는 舊東獨의 中·小都市가 말라되어 있지 않아(舊東獨의 5만이상 都市는 거의 西獨과 姉妹結緣을 맺고 있었음) 西獨側으로부터 충분한 行政支援을 받을 수 없다고 判斷하고, 또 서로의 重複을 피하기 위해 새로이 어떤 西獨의 州가 舊東獨의 어느 地域을 管轄하여 行政支援할 것인가를 決定함.

#### 4. 舊東獨 地方行政體系 構築에 있어서의 問題點

##### ○ 財政自立度 脆弱

- 經濟沈滯 및 國有財產 私有化 不振, 稅務行政體系 未洽으로 인한 稅收不足
  
- 租稅收入 現況을 보면, 舊東獨地域의 각 州는 舊西獨地域의 1/3, 地方自治團體는 1/10 水準인데, 이로 말미암아 各 地方政府는 社會間接資本 投資를 통한 地域經濟 活性化를 期待할 수 없는 형편임.
  
- 專門行政人力 不足, 殘留 公務員들의 舊體制 思考方式 尚存
  - 過去 共產黨과 國有企業이 擔當하던 業務를 이제 行政機關 스스로가 責任과 權限을 갖고 自發적으로 해야 하는 바, 대부분 中央集權的인 行政形態에 젖어 있어 地方行政體系에 상응하는 行政文化와 業務處理 姿勢가 缺乏되어 있음.

- 특히 地方行政機關의 上位職은 모든 舊體制와 關聯한 過去 權力이 없는 人士들로 새로이 採用되었는 바, 이들은 전혀 行政經驗이 없으며, 再任用된 殘留公務員들과 같등이 存在하고 있음.
- 經濟·會計·財政·社會福祉 分野 등 새로운 體制에 상응하는 法執行能力을 가진 行政人力 必要性이 絶실히 要求되고 있음

## 5. 西獨側 行政支援上의 問題點

- 行政支援 形態가 단지 西獨地域의 行政形態와 思考方式을 单纯하게 移轉·强要하는 方式으로서는 成功을 거둘 수 없고, 실제 行政行爲에 舊西獨의 專門家가 西獨의 Knowhow를 直接 適用하여, 舊東獨의 行政家와 結果에 대해 서로의 意見을 交換하여 그 地域에 適合한 支援形態를 抽出해내는 “ Learning by doing” 方式을 採擇해야 함.
- 舊東獨地域에서 發生하고 있는 問題들은 歷史上 由來가 없는 體制轉換의 問題이므로 能力있는 專門家가 派遣되어야 하며, 觀光旅行式의 短期間 派遣은 禁物이고 相互信賴에 基礎한 持續的인 支援이 이루어 져야 함.

## 舊東獨地域 住民에 대한 政治教育問題

### 1. 東獨住民에 대한 政治教育의 必要性

- 國家的·制度的 統一은 政治的·法的인 節次를 통해 이미 1년전에 完成되었지만, 많은 舊東獨 住民들은 아직도 새로운 秩序에 적응하지 못하고, 心理적인 隔差로 인해 不安해 하고 있음.
- 앞으로 남은 課題中 經濟再建을 통한 生活隔差 解消問題는 최근 聯邦內務省이 實施한 輿論調查結果에서도 나타났듯이 5년(西獨地域住民 30%, 東獨地域住民 39%가 그렇게 생각) 내지 길어야 10년(西獨住民 82%, 東獨住民 90%)이면 解決될 수 있다고 展望되고 있음.
- 그러나 舊東獨 共產政權의 教條主義的이고 全體主義的인 教育에 의해 養成된 人間들의 意識과 生活樣式이 舊西獨人들의 그것과 偏差를 보이지 않고 兩獨地域 國民들이 共通의 正體性(gemeinsame Identität)를 갖는다는 약 한세대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음.
- 이러한 舊東·西獨間 相異한 政治的·社會的·經濟的 다른 條件에 기인하는 經驗 및 認識體系를 同化시켜 兩地域 住民들간의 精神的·心理的 統一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政治教育(politische Bildung)의 必要性이 擡頭되고 있음.

- 그러나 이미 獨裁體制를 52年동안(히틀러 獨裁로부터 統獨될 때까지) 經驗한 東獨地域 住民들에게는 위로부터의 行政的인 指示에 의한 一方的인 強要形式의 教育은 새로운 秩序에 不安感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또다른 獨裁라는 認識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상당한 熟考가 必要한 作業임.
- 또한 西獨地域 住民들이나 政治教育을 企劃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征服者로서의 優越意識이나 東獨住民에 대한 어떤 偏見을 排除하고, 分斷의 고통을 西獨地域 住民들보다 더욱 혹독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同情心(Mitgefuehl)이 우선 필요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分斷克服過程에 西獨地域 住民들 또한 同參해야 한다는 主張이 政治教育問題와 관련하여 提起되고 있음.

## 2. 東獨住民들의 心理的 不安原因

- 現在 東獨住民들은 익숙한 것들이 모두 廢棄되고 새로운 秩序와 規範이 導入됨에 따른 “大變革의 쇼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心理的 不安의 原因들은 다음과 같음.

- 人間의 存在는 人間들과의 關係뿐만 아니라, 一般的인 社會制度和 構造속에서 規定되어 지는 바, 새로운 制度를 익히는데 東獨地域 住民들은 너무 많은 時間과 神經을 써야 함.
  - 한 調査에 의하면 東獨地域 職場人의 경우 統一이 된지 1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自己日課의 80% 이상을 새로이 導入된 制度를 익히는데 消費하고 있다고 함.
  - 마치 資本主義 國家에서 살던 사람이 社會主義 國家에서 살아야 했을 때 느끼는 답답함과 똑같이, 統合條約에는 統獨以後 兩獨間에 法律의 同化가 完了되어 대부분의 西獨의 法律이 東獨에 移入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東獨住民은 實生活에서 너무도 커다란 負擔을 느끼고 있음.
- 失業으로 인하여 物質적인 生活基盤과 自我實現의 土臺를 喪失하였음.
  - 舊東獨에서는 失業이라는 概念自體가 存在하지 않았고 國家의 支援에 의해 完全教育和 職場을 保障해 주었기 때문에 統獨後 競爭社會에 던져져서 生計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舊西獨人들에 비해 엄청난 心的 負擔임.

- 더구나 物的인 生活基盤으로서 뿐만 아니라 평생 自我實現의 場으로서 職場을 잃게 됨으로써 過去의 勞動이 전혀 가치없는 곳에 投入이 되었다는 自己卑下와 함께 生의 意味를 再確認해 봐야 하는 엄청난 苦惱를 겪고 있음.
- 未解決 財産權問題가 많은 東獨住民들을 不安하게 하고 있음.
- 國有(人民共有) 財産을 集團的으로 所有하고 있다가 所有權을 各 地方自治團體 등 公益目的으로 내어놓은 경우는 덜한데, 현재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財産이 언제 西獨地域으로부터 返還申請이 닥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不安해 하고 있음.
- 統獨以後 과거 加害者들에 대한 過去清算問題가 提起될 때 舊東獨住民들에게는 體制轉換에 따른 心的 苦痛이 存在함.
- 40년간의 社會主義가 各 個人에게는 기억속에 살아있는 歷史인데, 이러한 歷史를 완전히 犯罪로서 斷罪해야 하는 時點에서 共犯者(Mittäter)로서의 感情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자기가 直接 連累가 안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던 體制와의 斷絶은 자기 歷史와의 斷絶을 意味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각 個人에게나 集團에게나 苦痛스러운 不安을 隋伴함.

### 3. 政治教育의 方向

- 政治教育은 따라서 우선 不安해 하고 있는 東獨住民들의 머릿속에 든 過去의 負擔을 清算(Abwicklung)한다는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바뀐 새로운 環境에 어떻게 適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가라는 側面에서 具體的인 方向이 設定되어야 함.
- 住民들의 意識속에 잠재된 SED支配의 否定的인 影響力을 점차 極小化시켜 나가야 함.
  - 모든 住民의 生活領域内에서 “ 黨의 眞理規定의 獨占性” 殘在를 除去하고, 자유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能力을 培養함.
  - 過度하게 政治化되어 있는 日常生活을 脫政治化(Entpolitisierung)해야 함.

- 國家의 後見에 익숙하여 늘 위로부터의 指示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 保護文化 ” (Nischenkultur)로부터 脫皮해야 함 .
- 새로운 多元主義的 政治文化에 익숙해지도록 多樣的 情報과 만남의 廣場을 마련하여, 持續的인 훈련을 통한 “ 精神的 現代化 ” (mentale Modernisierung)가 可能하도록 함 .
- 劃一的인 情報가 아닌, 多樣的 利害集團과 學術研究機關, 中立的인 教育機關에 의한 多樣的 情報과 서로의 意見을 交換할 수 있는 場이 마련되어야 함 .
  - 民主社會에서는 葛藤(konflikt)이 없을 수 없고, 또 葛藤을 一方的으로 隱蔽할 수도 없으며, 서로의 利害를 表出하고 관찰시킬 수 있도록 努力하되 서로 窮極的으로는 妥協을 해나가는 “ 民主的인 論爭文化 ” (demokratischer Streitkultur)가 定着되도록 함 .
  - 특히 各 利害關係를 反映하는 政治的 스펙트럼에 따라 結成된 多元的 政黨構造에 익숙해지고, 既存의 政治制度에 대한 活潑한 參與가 이루어지도록 獎勵함 .

#### 4. 現在 政治教育을 擔當하고 있는 主要機關

- 聯邦水準에서는 聯邦內務省과 聯邦政治教育센터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가 맡고 있음.
  - 聯邦內務省은 豫算만 反映하고, 各 黨의 議席比率에 따라 監督官을 派遣하고 있는 聯邦政治教育센터가 總括機關임.
  - 各 州政府 산하에 州政治教育센터가 있음.
    - 現在 舊東獨地域 新設 5個州에는 州政府의 行政體系가 완전히 確立되지 않았기 때문에 政治教育센터가 設立이 안된 곳도 있어, 結緣을 맺고 있는 舊西獨地域 州政治教育센터가 많은 支援과 直接教育을 擔當하고 있음.
- 또한 各 政黨의 學術財團이 중요한 政治教育機能을 맡고 있음.
  - Konrad-Adenauer 財團 (基民黨)
  - Friedlich-Ebert 財團 (社民黨)
  - Friedlich-Naumann財團 (自民黨)
  - Hans-seidel財團 (基社黨) 등임.

- 各 大學의 研究機關과 宗教·社會團體 等도 自體 세미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聯邦政治教育센터로부터 豫算을 支援받아 政治教育機能을 遂行하고 있음.
- 또한 各種 協會-團體 등 自生的인 利益團體와 同好人 클럽들도 舊東獨地域에 支部를 設置하고 會員의 加入을 誘導하고 있는 바, 이들 또한 東·西獨人들 간의 異質感 解消에 커다란 役割을 하고 있음.
- 舊西獨地域 各 地方自治團體는 既存의 姊妹結緣을 利用하여 東·西獨地域間 친밀한 意思疏通에 可能하도록 만남의 廣場·文化行事を 開催하고 있으며, 舊東獨地域에 缺乏되어 있는 文化的인 社會間接資本(Kulturale Infrastruktur)를 擴充하는데 많은 行政支援을 하고 있음.

## 統獨以後 輿論調查 結果와 主要統計

- 統獨이 各 住民들에게 기쁨과 걱정중 어느 것을 가져다 주었는가라는 質問에 대한 答辭推移 (Allensback 輿論調查機關 調査)

(%)

	西 獨 住 民		東 獨 住 民	
	기 쁨	걱 정	기 쁨	걱 정
'90. 8	50	33	61	24
9	52	31	61	22
10	58	26	63	20
11	57	25	65	19
12	59	25	65	20
'91. 1	56	25	57	23
2	49	32	59	24
3	45	37	51	33
4	44	39	59	26
5/6	47	32	62	19
7	44	36	59	21
8	52	32	68	16

※ 西獨住民들이 統一에 대해서 좀더 조심스러운 姿勢를 堅持했으며, 統獨以後에도 統一에 따른 負擔問題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舊東獨地域에 대한 財政支援으로 舊西獨地域의 經濟와 福祉水準이 弱화된다고 보는 立場 (Spiegel지 '91.9.16자)

(%)

	그렇다	그렇지 않다
舊西獨地域	66	33
舊東獨地域	18	82

※ 統獨이 西獨經濟에 미치는 影響은 舊 東·西獨 住民間에 커다란 偏差를 보이고 있음.

○ 舊體制 殘滓清算과 關聯하여 (Spiegel지 '91.9.16자)

— 舊東獨 “提携” 政黨 幹部들이 新設 5個州(舊東獨地域)에서 여전히 黨幹部로 活動하고 있는데 대해

(%)

	중개 생각한다	중지않게 생각한다	모르겠다
舊西獨地域	8	65	25
舊東獨地域	10	60	27

※ 現在 執權與黨인 基民黨(CDU)에서는 과거 東獨의 姉妹政黨에서 幹部職에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新設 5個州 基民黨에서 活動하고 있는 바, 이들의 過去 前歷 특히 Stasi와의 關係가 問題가 되어 統獨以後 그 職을 辭任하는 경우가 많음. 舊 東·西獨 住民 모두 舊東獨地域 黨職을 刷新하기를 바라고 있음.

— 만약 舊東獨 出身 黨職者와 政治家를 모두 舊西獨 地域 出身으로 對替하는 問題에 대해

(%)

	舊西獨出身으로 對替해야 한다	舊東獨出身으로 對替해야 한다.	모르겠다
舊西獨地域	47	25	28
舊東獨地域	29	48	21

※ 舊東獨 住民들은 舊東獨 出身中 過去前歷이 있는 者들에 대해서는 拒否感을 나타낸 反面, 舊西獨 出身으로 對替하는 것보다는 舊東獨 出身中 참신한 人士로 對替하기를 희망함.

— 현재 進行中인 舊體制의 加害者들에 대한 刑事法的인 處罰과 關聯하여 主動者級인 巨物들에 대한 處罰이 未洽하다는 見解에 대해

(%)

	아주 옳다	상당히 옳다	옳다	전혀 틀리다
東·西獨 全體	40	35	18	4

※ 舊 東獨 政治局員의 경우 現在 拘束은 되어 있으나 裁判이 進行되지 않고 있으며, 前 黨書記長 Honecker 와 前 秘密情報部長 Wolf는 蘇聯으로 脫出해 있음. 많은 住民들이 이들에 대한 司法的 處罰을 主張하고 있음.

○ 統獨以後 그룹별·職種別 滿足度 (Spegel지 '91.9.16자)  
(각 %는 職業別 調査對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醫師	大企 業人	公務員	中小 企業人	事務職	勞動者	農民	年金 生活者	職場 女性	子女 많은 家庭
滿 足	95	89	81	73	63	23	19	17	16	8
不滿足	1	0	1	3	3	21	44	31	34	52
平 均	4	11	18	24	34	56	37	52	60	40

○ 統獨以後 各 黨別 支持度 (Allensback 輿論調查機關, Spiegel지 '91.9.16자)

(%)

		CDU/CUS (기민/기사당)	SPD (사민당)	FDP (자민당)	Gruene (녹색당)	PDS (민사당)
舊西獨	전독총선	44.3	35.7	10.6	4.8	0
	'91. 8말	36.1	40.2	11.1	7.0	0
舊東獨	전독총선	41.8	24.3	12.9	6.1	11.1
	'91. 8말	26.4	39.2	13.8	10.5	7.6
전 체	전독총선	43.8	33.5	11.0	5.0	2.4
	'91. 8말	39	40	11	7	2

※ 現 執權與黨이 統獨프리미엄으로 첫 全獨總選에서 壓勝을 거두었으나, 現在는 野黨인 社民黨보다 支持率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舊東獨地域에서는 支持率의 偏差가 크게 反轉되어 社民黨의 支持率은 크게 上昇하고 있음.

○ 東·西獨間 統獨에 즈음한 1년동안 失業趨勢

(獨逸聯邦政府 官報)

		西 獨 地 域	東 獨 地 域
실업(명)	'90.8	1,812,800	361,286
	'91.8	1,672,200	1,063,200
단축조업(명)	'90.8	26,600	1,500,000
	'91.8	129,600	1,451,700
실업율(%)	'90.8	6.2	4.1
	'91.8	5.6	12.1

○ 1년동안 統獨이 西獨經濟에 미친 影響 (獨逸經濟研究所 推定值)

- 東獨으로 物資 및 서비스 提供 增加額 (輸出額) : 1,100억 DM
- 外國으로부터 輸入 增加額 : 560억 DM
- 税金 및 社會保障 寄與金 增加額 : 500억 DM
- 東獨으로부터 移住 就業人口 增加 (집은 東獨에 있으며, 西獨으로 出退勤하는 Pendler 포함) : 50만명
- 東獨으로부터 西獨으로 總 移注民 (완전히 生活根據地를 옮긴 사람) : 360만명 (매년 17만명 增加 豫想)

○ 向後 5년간 統獨이 世界經濟에 미치는 影響 (獨逸經濟研究所)

(%)

	年		도			
	'90.7	'91.6	'91.7-'92.6	'92.7-'93.6	'93.7-'94.6	'94.7-'95.6
經濟成長率 (실질)						
西獨 지역	2.3		1.9	0.9	1.9	3.1
獨逸	0.2		0.7	0.8	0.8	0.8
英國	0.6		0.5	0.5	0.6	0.7
美國	0.2		0.7	0.8	0.9	0.9
OECD 이외의 지역	0.4		0.3	0.0	0.1	0.3
輸出 지역 (1)	-1.5		1.0	1.6	1.8	2.3
獨逸	1.5		3.4	3.4	3.8	4.2
英國	2.3		2.1	1.9	2.0	2.1
美國	1.3		3.5	3.2	3.6	3.8
OECD	1.8		1.7	1.4	1.6	1.7
OECD 이외의 지역	1.9		2.5	2.4	2.8	3.1
輸入 지역 (2)	14.1		14.6	13.5	14.5	15.7
獨逸	0.2		0.9	1.2	1.3	1.4
英國	0.4		0.9	1.2	1.4	1.6
美國	0.2		1.3	1.7	2.1	2.3
OECD	0.1		0.4	0.1	0.3	0.6
OECD 이외의 지역	2.7		3.0	2.8	3.0	3.3

- (1) 東獨地域으로 輸出은 包含되어 있지 않음 (東獨地域에 대한 막대한 物品供給으로 다른 地域 輸出不振)
- (2) 東獨地域의 輸入額이 包含되어 있음 (東獨地域 特需로 인해 輸入增大)

○ 信託廳의 企業私有化 實績

一 賣却對象企業 關聯事項

규모(종업원수)	기업 수 (개)	총종업원수(명)
50명 미만	3,895	38,500
50-250명	2,675	346,900
251-500명	1,020	363,800
501-1,000명	640	408,700
1,001-1,500명	215	262,000
1,501-2,500명	180	346,200
2,500명 이상	165	1,090,500
계	8,790 개	2,856,600 명

一 賣却對象企業 地域別 分布現況

(%)

	기업 분포	종사자 분포
삼도	33	31
부산	9	10
대구	14	16
대전	14	18
광주	12	10
전남	18	15

一 私有化 實績 ('91. 7월말 현재)

(개)

	'90	'91. 1	'91. 2	'91. 3	'91. 4	'91. 5	'91. 6	누 계
私有化企業數	408	255	298	300	335	544	443	2,583

※ 總企業數 8,790개중 약 30%를 私有化하였음.

## 統獨關聯 主要人士 面談錄

- o 이 자료는 주독대사관 염돈재 공사가 91.10.28 10:00~13:00간 독일 전내독성 차관보 「도비에」 박사와 독일 통일과정에 관해 대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o Burkhard Dobiey 박사는 1940년 동독에서 출생, 법률 및 정치학을 전공한후 수상실(70~71), 의회(72~80), 기민당(81~84)에서 근무하다가 85년 내독성 차관보로 부임, 91.1.21 내독성이 해체될때까지 근무하면서 독일 통일과정중 가장 역동적인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사 가운데 한사람이며, 현재에는 기민당 사무총장 정치담당 고문으로 재직중임.



문 : 내독성에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기민당에서 새로운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본인은 91.1.21 「빌름스」 내독성 장관이 내독성의 해체식에서 행한 연설내용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가지 점에서 「빌름스」 장관의 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첫번째는 "내독성은 임무를 완전히 달성하고 해체하는 유일한 정부 부처"라는 언급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내독성은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본인은 귀하를 비롯한 내독성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한민족의 통일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귀하와 같이 훌륭히 임무를 완수하고 그 직을 떠나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름스」 장관의 연설 가운데 또하나 본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은 "독일통일은 평화와 자유를 위한 것"이라는 그의 언급입니다.

독일에서도 그러한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비록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왜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하느냐, 통일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는것은 "통일을 위해 우리가 어느정도의 희생과 노력해야 하느냐"하는 점과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점과도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빌름스」 장관이 "통일은 평화와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정의한 것은 독일정부가 어떤 이상과 목표하에 통일을위해 노력해 왔는가를 명백히 밝혀주는 말이라고 생각되며, 우리의 통일노력에도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독일과 한국은 통일 환경에 있어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가치는 조금도 적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독일 통일과정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많은 실무경험을 가진 귀하의 의견을 듣고저 합니다.

본인이 작년 8월 독일에 부임한후 독일 통일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동안, 본인은 상호간의 대화와 교류라는 측면에서 볼때 현재의 남·북한간의 관계는 1960년대 후반 독일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국제환경의 변화라는 측면을 제외하고 순수한 남·북한간의 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60년대 양독간의 관계보다도 더욱 경직되고 상호교류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1950년대의 양독간의 교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남·북한 관계 및 한국민족의 통일에 관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 본인은 한국이 아직도 분단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또 현재로서는 통일의 전망이 그리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과거 우리의

경험이 한국의 통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돕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실이 예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남·북한의 정규적인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지는 하지만 통일을 위한 외부여건은 60년대의 독일에 비해서는 매우 호전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일성은 강력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김일성의 사후에는 무엇인가 변화가 올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도 대화의 지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의 통일은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통일은 완만한 과정(slow process)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통일이 갑작이 이루어진것은 동독정권이 갑자기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독의 경우 70년대 이후에는 서독의 지원 없이는 지탱(survive)해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안정을 위해 지원(stabilization injection)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90년 10월까지 우리는 「통일」이라는 「큰다리」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독측이 「큰다리」를 만드는 것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류와 협력이라는 많은 「작은다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자신의 정치·경제·사회체제가 튼튼하면 언젠가는 자력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Theory of Magnetism).

한편 「호네커」와 동독의 지도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채 계속 환상(dream land)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호네커는 그들의 경제사정이나 생활수준이 사회주의국가 가운데서는 가장 형편이 좋으며, 또 1920년대나 1930년대에 비교해서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변했고 동독국민들도 외부의 변화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독의 지도부가 그들에게 더이상의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정부를 버렸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어느정부나 정치인이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며, 한 국가가 어떤 체제를 갖느냐 하는것은 결국 국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독국민이 동독정권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서독입니다. 서독의 정치·경제·사회체제가 자력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며, 그동안에 놓았던 많은 「작은다리」들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국 독일통일은 역사의 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독일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문제에 대해 독일인들은 자제(discipline)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서독에는 한국에서와 같이 혁명운동(revolutionary movement)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원만한 과정(soft transition)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급작스러운 완전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통일열망을 갖고 있는 한 국가 내에서 2개의 상이한 정치체제를 갖는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결국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오랜 천년의 단일국가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나긴 역사가 40~50년간의 단절로 그 흐름이 바뀔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통일로 향하는 과정에 있어 특히 우방에 대해 솔직해야 하며,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독일통일에 대해 프랑스와 같은 이웃나라들이 우려를 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우방들이 우리의 통일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본인의 경우 1년에 2~3번씩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TV에 자주 나가 독일통일 문제와 독일의 장래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독일통일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장 협조적이었으며, 우리의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문 : 독일 사민당(SPD) "보른 앵홀름"(Bjoern Engholm) 당수는 91.5.29 취임 연설에서 "70년대초 빌리 브란트가 동방에의 문을 개방하여 독일 통일의 길을 열어 놓았으며 이 길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현재와 같은 위치에 와 있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으며 한국에서도 독일통일은 동방정책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콜 수상의 대외정책 보좌관이었던 "호르스트 텔치"(Horst Teltchik) 씨는 독일통일 직전인 90.9.22. "디 벨트"(Die Welt)지 기고문에서 "독일 통일은 현상유지를 항구화 하려했던 사민당의 동방정책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상반된 견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며 귀하께서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독일통일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 동방정책의 설계자인 "브란트"와 "에곤 바"는 분단이라는 현실적인 토대위에서 동·서독 관계를 재정립하려 했던것일 뿐, 독일통일에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양독간의 교류증진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련제국"과 "동·서 분단" 상태가 매우 오래 지속되리라고 예상했다는 점에서 큰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전제하에 「동독 포용정책」을 통해 2개의 독일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선 상호간의 교류를 증가시켜 분단의 고통을 경감하려고 하였습니다. 「동방정책」을 계기로 양독간의 교류가 대폭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방정책 자체가 당면한 정책의 목표로서 「통일」을 염두에 둔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방정책"은 사민당의 정책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동방정책"을 처음 시작한것은 기민당(CDU)입니다.

기민당 정부는 이미 1950년대에 소련,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에 착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55.9월 "아데나워" 수상이 소련을 방문하여 외교관계를 수립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독과의 관계에서는 서독측이 제시한 관계개선의 전제조건(preconditions)들이 너무 어려운 것들이었기 때문에 동독으로서는 수락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독을 하나의 국가, 즉 다른 나라로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 이들 조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교류가 대폭 증대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란트의 집권기간중 교류는 증가하였지만 브란트 정부는 국제정세와 동독 내부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였으며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동독정권의 여러가지 악행(atrocity)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정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동·서독이 서로 가깝게 지내는 동안 오히려 분단 상황에 익숙해져 통일노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와같은 분단상태가 매우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1982년 기민당(CDU)이 다시 집권한후 통일노력이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콜" 정부는 그당시 진행되던 동독과의 교류 관계는 그대로 지속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통일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독간에 각종 조약이나 협정의 숫자가 늘어 갈수록 분단상황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지만 기민당 정부는 동독과 협정을 체결하는 일을 그대로 계속해 나갔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동독과의 교류와 협력이 가져올 득실들을 면밀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formal aspect)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민당 정부가 동·서독간의 교류·협력관계 유지를 중요시했던 것은 "통일에의 접근"이라는 측면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즉 동독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서독국민의 1/3 이상이 동독에 가족·친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서로 왕래하고 만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였고 서독국민들의 가족인 동독국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도 서독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즉 "통일"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인도적인 측면(humanitarian aspect)도 상호 교류를 지속해야 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브란트"와 "에곤 바"가 닦아 놓은 동·서독간의 긴밀한 관계기반을 더욱 발전시켜 실질적인 통일의 길로 연결시킨 것은 "콜"입니다.

"콜"정부는 동·서독간의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통일"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했습니다. "바이체커"대통령(87년)과 "콜"수상(88년)의 소련 방문, 동·서독간의 청소년 교류합의(82년)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청소년간의 교류는 독일 통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서독을 방문한후 같은 민족인 자기들도 서독처럼 잘 살수 있으며, 또한 잘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체제가 변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서독방문 경험을 자랑스럽게 얘기함으로써 젊은세대간에 그러한 생각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생각이 그후 동독"민주혁명"의 원동력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 : 역사에 있어서 "가정"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없었어도 독일통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 : "동방정책"이 없었어도 동독의 변화는 왔을것이고 결국 독일통일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동방정책"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가장 적합한 정책"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독일통일이 달성된 배경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EC가 동구국가들에게는 좋은 모델로 생각된것 처럼 서독은 동독인들에게 자력(magnetic)을 가진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 레이건의 대소 정책도 소련의 정책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SDI 계획등 레이건의 정책때문에 소련은 미국과 군사적인 경쟁을 해나갈 수 없다는 점과 군사경쟁이 지속될 경우 상호간의 「갭」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동독은 체코, 폴란드 등 동독 주변국가들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본인은 88년 고르비의 보좌관 "다시체프"를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다시체프"는 동독이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련이 계속 동독을 붙들고 있는것은 장래 소련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소련에게 서구, EC로 향하려거든 서독을 통해 가라고 설득하였으며 소련에게 우리의 설득에 확신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소련은 "호네커"가 자신들을 가장 필요로 할때 "호네커"를 버렸습니다. 그당시 동독도 소련군이 자기들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훈련된 소련의 군대, 50만명의 주 동독 소련군은 "호네커" 정권 유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소련으로서는 동독사태에 개입할 경우 동·서간의 화해체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페레스트로이카와 고르비의 해외에서의 높은 명성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소련의 입장을 명확히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결국 동독국민은 공산체제하에서는 "장래"가 없다고 생각하여 동독정부를 버렸으며 소련도 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 : 그러나 동독에는 17만명의 군대도 있었고, 수 많은 공산당원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고, 또 막강한 스타지(Stasi)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독정권이 총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붕괴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 : 동독에서 시위사태가 발생했을때 우리는 동독정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판단해 보았으며 결국 동독정권이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독시위의 무력진압에 동원될 수 있었던 조직은 군대, 경찰과 "스타지"이며 각계에 침투되어 있는 핵심 공산당도 동독체제 수호에 나설수 있는 세력입니다. 그러나 동독인민군의 경우 최하급 병사들은 징병제에 의한 젊은 군인들입니다. 이들 젊은 군인들은 동독의 현체제로서는 자신들의 장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상부의 명령이 있다해도 자기 국민들에게 발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발포 명령을 받았다면 오히려 그들의 상관이나 동독정권에 대해 총부리를 겨누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의 경우 일반적인 질서유지 임무만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시위 진압에 동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타지"의 경우 시위대의 규모가 1천명 정도 되었다면 발포를 해서라도 시위를 진압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위 군중의 숫자가 갑자기 불어났기 때문에 "스타지"라 하더라도 "대량학살"을 각오하지 않고는 발포를 할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량학살"사건이 일어날 경우 역시 동독은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량학살"이 일어나면 동독국민들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려운 동독경제가 더욱 나빠져 경제적으로 완전 붕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독에서 시위사태가 일어났을때 우리들은 동독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핵심 공산당원의 경우 그들도 자신들의 체제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의 대부분은 젊은사람, 바로 그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발포명령에 찬성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동독의 "시민혁명"은 스스로 내부에서 시작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기세를 얻었으며(self-fueling momentum)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동독인민군도, "스타지"도, 핵심 공산당원들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합리적인 생각들이 동독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동독의 붕괴, 독일의 통일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 : 그간 서독은 동독에 대해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미 1950년대 부터 시작된 각종 형태의 경제적 지원 중 직접 지원액만도 49억 마르크에 달합니다. 이러한 서독의 경제적 지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통일을 염두에 두고 민족간의 화해와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것입니까? 아니면 동독측이 상호교류 및 통행 방해등으로 역지를 부리니까 할 수 없이 응하게 되어 동독에 뜯긴것입니까?

답 :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에는 2가지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인도적인 이유”(humanitarian reason)며,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인도적인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독 국민의 1/3이  
 동독에 가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서독 국민들은 동독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좀더 경제적으로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독이 지원해 주기를 바랐으며 또 한편으로는 동독내의  
 가족들을 만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서독정부가 동독과 잘 교섭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로서도 가족간의 관계라는 것이 자주 만나지 않으면  
 그 유대가 약화되므로 이를 방지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동독이 우리측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미끼(bait)로 경제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동독과 가급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통일 촉진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은 물론입니다.  
 동독의 대외 경제관계는 75%를 ”코메콘”(COMECON)에 의존했고 15%가 서독,  
 10%가 서방세계와의 교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독 및 서방과의 교역  
 25%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5%가 경화(hard currency) 수입과 신기술 습득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독도 서독 및 서방에의 경제적 의존은 마약과 같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가급적 의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는 서독국민들이 이미 이에 익숙해져 있어 결국 서독에 계속 의존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또한 서독측으로서는 동독의 모든 산업체제가 소련체제로 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경제지원을 통해 동독산업을 서독이나 EC 체제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같은 것도 그렇고 공업제품 규격에 있어서도 서독체제(DIN : German Industrial Standard)에 맞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서독측은 동독의 대서독 경제의존이 "영향력 행사의 채널"(channel of influence)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1960년 동독의 베를린장벽 구축시 그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고 시도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결국 영향력 행사가 먹혀들어 가지 않았고 그후에도 여러번 영향력 행사에 유혹을 느낀적도 있으나 제대로 먹혀갈 것 같지도 않았고, 또 상호관계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도 우려되어 한번도 이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예상치 않은 몇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서독 화폐가 동독에 많이 유입되므로서 동독에는 "서독 마르크"라는 "제2의 통화"(second currency)가 생겨났으며, 동독내의 "외화상점"(hard currency

shop)에서는 서방 화폐만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독 마르크"를 선호하여 동독 화폐의 권위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또 장기간 대외결제를 위해 서독 "마르크"를 사용해온 동독정부로서는 더 많은 서독 "마르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적 왕래를 허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나 결국 동독 붕괴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문 : 서독의 경제지원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독의 경제적 지원이 동독정권으로 하여금 더 오래 지탱하는데 도움이 된 역효과를 가져온 측면은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한국도 최근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시작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남·북 화해와 북한 체제의 변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아주 가난한 상태에 머무는 것보다 생활수준이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주민들의 민주화·자유화 열망이 강해져 북한의 내부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경우 북한정권이 더 오래 지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들이 한국측의 지원을 군비강화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북한의 독재정권이 더 오래 지탱하는한 북한에 살고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더 오랫동안 독재정권 하에서 신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 독일의 경우 서독의 경제지원이 없었다면 「호네커」 정권은 이미 1980년대 초에 파산상태에 이르러 붕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80년대 초는 「브레즈네프」 시대였고, 동·서 대결구조가 지속되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호네커」 정권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소련의 지원(군사적 지원을 의미)으로 또다른 친소·공산정권이 집권했을 것이므로 「호네커」 정권의 붕괴가 독일통일로 연결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민주주의와 민주화 욕구는 국민들이 적정한 생활수준이 도달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때 교육수준도 자연히 향상되어 자유에 대한 욕구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독의 경우 2차대전 이전의 공업적인 기반, 특히 인적자원, 서독의 경제적 지원, 서방과의 교역을 통한 신기술 개발 등으로 공산권 가운데서는 가장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가 인간의 능력과 창의력 개발을 막는 체제이므로 비록 일정수준의 경제발전을 달성했다 해도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독은 경제지원을 통해 동독을 침식시키는 정책(eroding system)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국의 경제지원을 군사목적에 사용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별로 지원할 경우(project-oriented assistance) 타분야로의 전용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국가를 지탱시키는 것은 무기나 탄약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여부입니다. 동독은 많은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 구동독지역에 배치된 독일군의 주요임무가 구동독의 무기와 탄약을 보호하는 것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무기와 탄약은 동독정권의 붕괴를 막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의 경우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귀하의 말씀을 들으면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오히려 북한정권의 몰락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남·북간의 긴장이 당분간 고조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군비강화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 경우 경제파탄을 일으켜 북한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 물론 그러한 논리가 타당합니다.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은 더빨리 경제파탄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계속 탱크나 만들도록 해놓은 것은 좋은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몇가지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북한이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그동안에 더욱 고통받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김일성 정권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남·북 주민간에 적대감과 불신이 높고 북한주민 대부분이 남한 사정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북한주민들이 김일성 정권에 대치할 대안으로서 한국을 선호할 가능성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붕괴는 또다른 독재세력의 탄생을 가져올뿐 통일의 기회는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 : 동·서독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서독 TV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독과 달리 동일언어의 서방 TV가 없었던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에서 오히려 민주화 물결이 더 빨리 일어났다는 점과 서독 TV 외에도 동독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독 TV의 역할이 과대평가 된 것은 아닐까요?

답 : 서독 TV의 역할은 조금도 과대평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독 TV는 동독국민들이 서방 및 서독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었다는 점 외에도 동·서독 국민이 이질감 없이 똑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서독의 여러매체 가운데 라디오나 간행물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TV의 경우는 다릅니다. 통일이전에 우리들은 매일저녁 7시에는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다고들 얘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시간에는 서독국민과 동독국민들이 모두 TV 앞에 앉아 서독 TV 뉴스를 시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동·서독 국민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독 TV의 역할과 관련, 특히 중요한 것은 광고프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동독국민들은 TV 광고를 통해 서독의 사정을 편견없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소비취향 면에서도 서독국민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동독의 「외화상점」(Inter Shop)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품목은 광고에 자주 등장한 품목들이 대부분 입니다. 결국 TV 광고는 선전없이 서독의 상황을 선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TV의 토론프로(Talk-Show)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토론을 통해 서독사회에서는 정부를 자유롭게 욕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여러문제들에 관해 서독국민들과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과 만났던 어느 동독 고위관리는 서독 TV의 영향이 동독측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도 있으나, 오히려 좋은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독국민들이 서독 TV를 통해 마약, 폭력, 알콜중독, 부랑자 등 서독사회의 치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것들 때문에 동독정부가 서독 TV 시청을 용인한 것은 아닙니다. 동독측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서독 TV 시청을 방해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노력했고, 공산 청년당원들을 동원하여 서독측으로 향한 TV 안테나를 부서버리기도 했으며, 1982년 흑백 TV 방송을 컬러 TV로 바꿀때에도 일부러 서독과는 다른 방식인 Secom Ost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TV 전파 방해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동독주민들이 서독

TV를 못보도록 전파방해를 할 경우 동독과 인접한 서독의 많은 지역에서 TV 시청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매우 큰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독정부는 동독주민의 서독 TV 시청을 용인할 수 밖에 없었으며, 나중에는 동독에서도 동독 TV와 서독 TV를 모두 칼리로 시청할 수 있는 TV(convertible system)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와 다른것은 동독정권은 그래도 북한정권 보다는 덜 탄압적이어서 라디오나 TV 「다이알」을 고정시키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동독에서는 그러한 일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문 : 동독 지도부로서도 서독과의 교류가 동독정권 안정에 위협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측이 서독과의 교류에 응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 서독측에서는 동·서독 교류효과에 관해서 이산가족 고통완화, 민족 동질성 회복 등의 효과만을 얘기했으나 교류가 가져올 효과, 즉 동독체제를 침식(erosion)시킬 것이라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들은 이러한 교류효과를 명확히 계산에 넣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독도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 우리측의 이러한 의도를 잘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와 같은 국제정세와 소련의

영향력이 지속되는한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안심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통일을 소련은 물론, 불란서와 같은 서방국가 조차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독으로서는 교류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소평가 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류는 일단 시작되면 증가되기 마련이고, 특히 경제면에서 의존을 하게되면 마약효과와 같이 점점더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도 한국과의 교류가 북한정권의 안정에 큰 위해가 되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면 교류에 응할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우리는 북한을 고립화시킬 의사가 없다"고 자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독일통일 이후 통일의 후유증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관련하여 「헬무트 콜」 수상은 통일 1주년을 앞둔 지난 10.2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와의 회견에서 가장 과소평가했던 문제점 가운데 「환경파괴」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그외에도 더 중요한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는 「콜」 수상의 언급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또 막상 통일이 된후 통일과정이나 구동독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큰 오류를 저질렀던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 「콜」 수상이 「환경파괴」 문제를 가장 큰 잘못으로 지적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양독간의 환경협정을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동독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큰 실수(error)는 역시 동독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독경제가 연간 4%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조금은 믿었으나, 통일후에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원가계산 방법도 몰랐고 통계작성 방법도 몰랐던 것입니다.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mistake)는 통일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89.11월 동독의 시위사태가 확산되었을 당시 우리는 통일은 매우 빨리 오리라고 예측했으나,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판단착오가 그후의 여러가지 절차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또하나의 실수는 「정신적인 적응」(mental adaption)이 그렇게 어려울 것인지를 판단치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도 잘못 판단을 하였었습니다. 통일후 구동독 국민들은 「2등 국민」이라는 열등의식에 시달렸으며, 특히 서독법률에 적응할 줄을 몰라 내부통일(inner unification)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일후 구동독 국민들은 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알고 지킬 수 있는 서독법이란 거의 없었습니다. 서독의 각종법률은

서독이 2차대전 이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조금씩 발전시킨 법제도인데 우리는 이러한 법률들을 너무 급작히 동독국민들에게 적용시키려 한 것입니다. 서독의 법체제를 구동독지역에 완전하게 이식시키려 했던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이식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충격은 매우 심각한 것이며, 우리는 구동독 국민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했습니다.

문 : 귀하께서는 독일통일이 너무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독 국민들이 수백만이 서독으로 이주해 왔다면, 서독 정부는 어떻게 할 작정이었습니까?

답 : 아마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대열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약 200만명 정도는 서독으로 이주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독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이주자는 서독으로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차대전전 우리는 1,200만명의 각 국 거주 독일인들의 이주를 경험한 바 있었고, 서독국민들도 동독 이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눌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대규모의 동독 이주자들이 생긴다면 동독은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젊은이들이고 대부분이 동독에게 가치가 있는 기술자·전문가들이었습니다. 89.7월 헝가리를 통해온 동독 이주자들의 평균연령은 27세 였습니다.

동독경제 유지의 핵심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주한다면 동독이 국가로서 존립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문 : 최근 수년간에 걸쳐 동구권과 공산권이 모두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물론 고르비의 등장과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이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만, 소련내의 변화, 고르비의 등장자체를 포함하여 공산권의 변화가 도래한 배경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의 시험이 끝나 공산주의의 매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들기도 합니다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보다 큰 역사의 흐름에서 볼때 이러한 공산권, 동구권의 변화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더 많이 보장해 나가는 인류발전의 한 흐름이 공산권에도 확산된 결과라고도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는 최근 동구권과 공산권의 급격한 변화 배경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답 : 공산권의 변화를 인류역사 발전의 큰 흐름의 맥락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분야는 본인보다는 역사가들의 평가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좁은 차원에서 동구권 변화 배경을 살펴볼때 CSCE의 과정이 동구권의 변화를 촉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CSCE를 통해 동·서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유럽정세가 안정되고, 상호간의 교류가 증가됨에 따라 공산주의가 더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 졌습니다. 이세상에 실수없는 정부, 오류없는 체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제도 하에서는 교정

능력이 있습니다. 야당이 있고, 비판적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 사회는 「오류에 익숙한 체제」(mistake-friendly system)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산독재 체제하에서는 오류의 교정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류와 실수는 계속되고 상황을 더욱더 나빠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국민들은 보다 나은 체제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경쟁능력 없는 동구 공산 체제는 CSCE 과정을 통해 자체 오류가 더욱 선명히 부각되어 결국 스스로 패배·붕괴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문 : 끝으로 한국의 통일을 위해 또다른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일성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은 오래 못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내 개혁세력의 입장이 강화되도록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과거 서독은 미국 등 우방국가들이 동독 사람들을 초청해서 연설도 하게 했고, 세미나도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 언론이나 학계의 반응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도 어떤 사람이 강연해야, 어떤 논리라야 서방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는 가운데 개혁주의자들, 개방세력들이 자연히 서방사회로 나오게 되었고, 이들의 대내적 입장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대통령께서 ”북한을 고립화시킬 의사가 없다”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국측에서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북한의 새로운 세대도 동독의 젊은세대와 마찬가지로 공산·독재체제 하에서는 「장래」가 없다는 것은 알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결국 북한은 붕괴되고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獨逸統一後에 있어서 當面課題 :

體制變革 (System Transformation)

1. 體制變革 研究의 必要性

- 2次大戰以後 世界는 自由陣營과 共產陣營의 兩極 體制를 維持해 오면서 體制變革의 經驗이 없어 그에 관한 理論이 全無한 까닭에 현재 蘇聯邦의 解體 등 脫 冷戰의 時代를 맞이하여 體制變革 研究의 必要性이 絶 對히 要求되고 있음.
- 특히 東獨과 類似한 體制를 갖고 있는 北韓을 對象 으로 統一政策을 遂行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앞으로 體制變革에 대한 깊은 研究가 絶對함.

2. 獨逸에서의 體制變革

가. 法律的 側面

- 西獨 基本法 第23條에 獨逸統合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음.

나. 學問的 側面

- 西獨側의 東獨研究는 베를린大의 東獨問題研究所 나 東歐研究所에서 東獨이나 東歐共產國家의 資料를 방대하게 蒐集하여 分析하였고, 주로 體制優越性을 比較하기 위하여 GNP등 指標比較的 立場에서 研究하였음.

- 그러나 兩 研究所의 尙大하고 緻密한 研究에도 불구하고 東獨에 있어서 東獨共產黨, Stasi, 軍隊로 連結되는 三角關係의 메카니즘을 把握하지 못한 關係로 현재 東獨體制를 變革시키는데 많은 隘路를 겪고 있음.

## 다. 政策的 側面

### 1) 1950 - 1970年代 西獨의 立場

- 나치의 獨裁를 벗어나서 西方側의 信賴할 수 있는 民主主義를 實現하기 위한 아데나워의 西方政策에 힘입어 西獨에 英·美를 모델로 하는 民主主義가 構築됨으로써 獨逸統一의 基盤을 마련.

### 2) 1971 - 1972年

- Willy Brandt首相의 東方政策(Oestpolitik)에 힘입어, 學生, 社會團體, 教會 등 東獨에서 入國禁止를 하지 않는 한 兩獨間 交流를 推進했으며, 西獨은 自由陣營에서 2次 大戰以後에 共產圈과 가장 活潑한 貿易을 推進한 나라가 되었음.
- 1972年에 締結된 基本條約에서, 西獨은 獨逸內에 2개의 國家가 存在한다는 事實을 否認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Hallstein原則을 廢棄함으로써 實質的 關係의 發展을 보았음.

### 3) 1972 - 1987年

- 文化協定을 통해 東·西獨 學校間 學生交流가 이루어지고, 深刻한 東獨의 環境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環境協定 締結, 落後된 東獨經濟를 살리기 위한 科學技術協定 등 各種 協定이 締結되고 從前의 各種 東獨體制 開放 努力들이 結實을 맺는 時期였음.
- 東獨은 環境問題에 있어서 深刻한 危險에 處해 있었는데 勞動力의 動員을 目的으로 만들어진 大型 콤비나트(Kombinat)는 環境汚染의 主犯으로서, 콤비나트가 세워진 지역의 地下 5 - 6m까지 化學物質이 浸透하여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狀況이라고 함.

### 4) 1987年 - 1989.11.9

- 東獨이 科學技術面에서 國際競爭力의 衰退로 東獨 共產黨이 沒落하게 되는 時期로써 各種 協力協定을 통해 東·西獨間에 大量交流가 이루어졌으며, 1989. 11.9 베를린障壁이 무너졌음.

### 5) 1990.1 - 1990.10

- 獨逸統一이 實現된 期間으로서, 지난 1955년 Saar州가 住民投票로 1957.1.1부로 西獨에 統合되었듯이, 東獨도 國民投票에 의하여 議會民主主義 方式에 의해 統合된 해임.

### 3. 體制變革의 方法

- 體制變革(System Transformation)을 論할때 大개 制度的 側面(Institute Transformation)만 강조하지만 그것을 實現하기 위한 組織變革(Organization Transformation)과 사람變革(Personality Transformation)이 더욱 重要하며, 東獨이나 北韓과 같이 黨, 秘密警察 軍部가 그물망처럼 連結되어 있는 體制的 變革은 組織의 連結고리를 푸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특히 마르크스 레닌主義 教育으로 二分法的 人間 思考를 바꾸는 것은 한 세대 이상의 時間을 要求하고 있음.

- 獨逸政府는 東獨地域의 組織變革을 위하여 西獨側 經營者, 教師 등을 東獨地域에 派遣하여 變革을 시키고 있고, 東獨사람들의 教條主義的이고 全體主義的인 思考를 創意的이고 民主的인 思考體制로 變革시키기 위해 西獨地域의 教師들이 東獨地域에 直接가서 教育하는 등의 試圖를 하고 있음.

### 4. 結 論

- 東獨과 類似한 北韓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北韓體制를 變革시키는데 있어서 獨逸의 경우를 많이 研究하고 獨逸에서 失敗한 事例들을 教訓삼아 미리미리 準備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獨逸統一에서 要求되는 金錢的·非金錢的 費用은 政府部門의 統一基

金만으로도 1,500억DM가 要求되며, 企業과 個人이  
奇附한 것을 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算出金額의  
2배가 넘는다 하니 놀라운 일이며, 특히 兩極體制의  
相異한 文化에서 오는 價値體系의 差異를 解決하기  
위하여 많은 研究가 있어야 함을 強調하는 바임.

# 東·西獨 國境開放時 舊東獨 避難民에 대한 設問調查結果

## 1. 避難民·移住民들의 成分 構造

### ① 性別

(%)

구 분	장벽개방 이전 ( '89.10.10 - '89.11.8)	장 벽 개 방 이 후			설문조사 대상전체	구동독 전 체
		'89.11.9 - 11.30	'89.12.14 - 90.1.31	'90.2.1 - 3.14		
여 성	41	40.6	31.2	35.9	37	53.2
남 성	59	59.4	68.8	64.1	63	46.8

※ 障壁開放以後 移住者 中 男性의 比率이 늘어나고  
있음 .

### ② 結婚狀態

(%)

구 분	장벽개방 이전 ( '89.10.10 - '89.11.8)	장 벽 개 방 이 후			설문조사 대상전체	구동독 전 체
		'89.11.9 - 11.30	'89.12.14 - 90.1.31	'90.2.1 - 3.14		
결 혼	57.6	51.2	45.2	40.6	47	63.7
독 신	29.8	35.9	42	45.4	39.7	18.4
이 혼	11	12.3	11.9	13.2	12.3	7.4
미망인	1.6	0.6	0.9	0.8	1.0	10.6

※ 障壁開放以後 結婚한 移住者의 比率이 떨어지고  
있음 .

※ 反面 獨身者의 比率은 계속 늘어났음 .

③ 年 齡 別 構 造

조사대상 : 2,582명 (%)

구 분	장벽개방 이 전	장 벽 개 방 이 후		구 동 독 전 체 인 구 비 중 율
		'89.11.9-30	'89.12.14-'90.1.30	
18 - 21세	12.6	18.1	17.8	7.5
22 - 29세	33.7	34.2	41.1	17.4
30 - 39세	30.4	30.2	23.4	19.3
40 - 49세	16	13.1	11	16.2
50세 이상	7.3	4.4	4.7	39.6

※ 避難 · 移住民들의 年齡은 平均的인 東獨住民들에  
비해서 젊음. (젊은층의 移住比率이 높음)

④ 家 族 과 함 께 避 難 · 移 住 與 否

(%)

구 분	장벽개방 이 전 ( '89.10.10 - '89.11.8 )	장 벽 개 방 이 후			설문조사 대상전체
		'89.11.9 - 11.30	'89.12.14 - 90.1.31	'90.2.1 - 3.14	
가족전체와 함께	56.7	50.6	34.1	29.4	39.9
가족은 놔두고	39.9	48.2	65.2	69.8	58.7
일부가족과 함께	3.3	1.3	0.6	0.8	1.5

※ 障壁開放以前에는 家族全體와 함께 移住하는  
比率이 높았으나, 障壁開放以後에는 우선  
家長이 먼저 移住하여 職場과 住宅을 마련한  
후 家族이 合流하는 경우가 많았음.

⑤ 職業別 資格

조사대상 : 2,497명 (%)

구 분	장벽 개방 이전 '89.10.10 - 11.8	장벽개방이후	
		'89.11.9 - 11.30	'89.12.14 - 90.1.31
무 자 격	2.5	2.4	2.2
직업학교 자격	65.4	74.4	77.9
전문학교 자격	21.4	17.6	13.3
대 학 자 격	10.7	5.5	6.5

※ 障壁開放 以前에는 專門學校 資格以上の 專門職種 移住比率이 높았음.

(舊 東獨 全體에서 上記 專門職種 比率은 8.6%임)

⑥ 全體避難·移住者中 主要 專門職種別 構成比率

(%)

구 분	장벽 개방 이전	장벽개방이후		
		'89.11.9 - 11.30	'89.12.14 - 90.1.30	'90.2.1 - 3.14
의사 / 치과의사	3.1	1.2	0.7	0.4
대졸 공학기사	1.7	0.3	0.7	0.6
간 호 원	2.9	3.9	2.3	2.5
교 사	2.3	0.8	0.8	0.7
자동차 정비공	2.9	1.3	1.4	1.1
미 장 공	2.7	3.5	2.8	1.7

## 2. 移住動機

### ① 年 齡 別

다중답변 가능, 조사대상 : 2,582명 (%)

구 분	연 령 별	장벽개방 이전	개 방 이 후	
			'89.11.9 - 30	'89.12.14 - '90.1.31
정 치 적 인 제 반 조 건 불 만 즉	18 - 24 세	94.7	96.1	92.8
	25 - 39 세	98.1	96.3	93.5
	40세 이상	98	99.1	93.8
개 인 적 인 부 자 유	18 - 24 세	97	97.1	84.2
	25 - 39 세	98	98.3	85.1
	40세 이상	95.7	97.3	91.8
열 약 한 노 동 조 건	18 - 24 세	54.7	57.4	71.6
	25 - 39 세	55.4	58.8	73
	40세 이상	47.9	60.4	69.5
낮 은 생 활 수 준	18 - 24 세	80.5	83.5	86.9
	25 - 39 세	77.2	81.1	90.2
	40세 이상	77.2	83.8	85.6
친척이나 친구가 서독에 있어	18 - 24 세	58.9	61.3	58.9
	25 - 39 세	65.2	64.2	57
	40세 이상	77.8	66.3	66.1

※ 移住動機中에서는 政治的인 諸般條件, 個人的인 不自由 등의 理由가 壓倒的임.

② 性別

다중답변 가능, 조사대상 : 2,498명 (%)

구 분	성 별	
	남 성	여 성
정치적인 제반조건 불만족	94.8	96.5
개인적인 부자유	94.7	93.8
열악한 노동조건	52.6	65.1
낮은 생활수준	83.4	81.6
친척이나 친구가 서독에 있어	70.9	59.1

3. 西獨으로 移住後의 希望事項

① 時間代別

다중답변 가능, 조사대상 : 2,582명 (%)

구 분	장벽 개방 이전	장벽 개방 이후	
		'89.11.9 - 30	'89.12.14 - '90.1.31
높은 보수, 생활수준, 주택, 구매 가능	43.1	55.3	74.3
더 나은 직장, 생활환경	23.1	32	45.3
여 행 자 유	38.6	18.8	5.8
개인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	78.4	68.7	38.2

※ 障壁開放 以前에는 政治的인 面에서, 障壁開放 以後에는 經濟的인 面에서 要求가 더 큼.

## ② 所持 資格別

다중답변 가능, 조사대상 : 2,582명 (%)

구 분	무자격	직업학교자격	전문학교자격	대학자격
높은 보수, 생활수준, 주택, 구매 가능	62.3	59.4	51.7	33.1
더 나은 직장, 생활환경	35.8	35	27.1	20.8
여 행 자 유	24.5	23.4	27.6	19.3
개인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	49.1	61.7	69.4	74.7

## 4. 避難·移住民들의 兩獨間 統合形態에 관한 意見

'90.1.20 - 2.8까지, 조사대상 : 793명 (%)

완 전 통 일	국가연합식의 통일	두개의 완전한 주권국가
83.9	12.6	3.5

## 5. 避難·移住民들의 各 黨의 支持度

조사대상 : 1,300명 (%)

구 분	독일연합	사민당	자민당	PDS	녹색당	공화당	기 타
'90.2.20 - 3.14	44.2	21.4	3.2	.	2.9	1	27.2
'90.3.18 동독총선	48.1	21.8	5.3	16.2	.	.	8.5

※ 避難·移住民들은 舊 東獨 殘留者들보다 더욱 右派的인 傾向이 강했으나, '90.3.18 總選 結果 또한 殘留 東獨住民들도 社民黨보다는 獨逸聯合의 右派를 支持하였음.



# 〈經濟分野〉



## 兩獨間 財産權 處理에 관한 合意

(향후 재산권 처리는 통합조약 제41조에 의거하여 마련된 본 합의사항을 따르게 됨)

1. 1945 - 49 년 사이에 동독지역에서 소련군정청의 공친력 발동에 의해 몰수된 재산은 반환되지 않음. 소련정부와 동독정부는 당시 취해진 조치 (토지개혁을 지칭함) 를 수정할 수 없음. 서독정부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 상황 (통독과정중 외적 측면을 지칭함) 을 고려하여 위의 사항을 준수토록 함. 향후 새로이 구성될 통독의회가 국가차원에서의 적절한 보상조치를 최종 결정하도록 서독정부는 강구함.
2. 부동산·공장부지, 그밖의 재산에 대한 신탁관리와 사용제한 조치는 철회됨. 정치적 망명이나 그밖의 이유로 동독국가 행정기관으로 흡수된 재산에 관한 처분권은 전소유주에게 반환됨.
3. 몰수된 부동산 재산이 다음 a), b)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과거 소유주나 그 상속인에게 반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a) 토지나 건물이 공유재산으로 헌납되었거나, 공동 주택지 조성을 위해 전환 사용되었거나, 공장부지로 사용되었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는데 편입되어 그 원래 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 반환은 불가능함.

이러한 사례는, 동독주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의해 사전 보상이 되지 않았을 때에만 보상조치를 받음.

- b) 만약 동독주민이 양도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이나 물적 사용권을 정당하게 취득했을 경우, 이의 상쇄는 등가의 재산물로 교환되거나 혹은 보상의 방법을 통해 사회계약적 차원에서 치루어짐. 이 규정은 또한 국가신탁관리인에 의해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효함. 이 문제는 세부규정을 요청함.
- c) 위임된 재산에 대한 반환권이 이전 수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있을 경우, 반환대신 보상이 행해질 수 있음.

자산 평가액 변동에 따른 보상문제는 특별규정을 두기로 함.

- 4. 제3항의 규정은 경제적인 강제조치를 이유로 인민공유재산으로 이전되어 지금까지 국가기관이나 그 임무수행자에 의해 관리되어 오는 주택지의 경우에도 아울러 적용됨.
- 5. 본 성명내용에 저촉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동독주민의 기존 사용권 및 세입주자 보호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장되며, 이는 기존 동독법령에 따라 규정됨.
- 6. 행정관리하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처분 제한이 철회됨. 원 소유자가 기업의 재산을 인수함.

1972년 인민공유재산으로 몰수된 기업과 자본지분에 대해서는 1990. 3. 7일 제정된 “사유기업의 창설·활동 및 기업지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이와 관련하여 동 법률 19조 2항 4절은, 국가지분이 사유단체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해석 적용됨. 매각결정은 관할부서의 감정절차없이 처리됨.

7. 1949 - 72년까지 인민공유재산으로 몰수된 기업과 자본지분은 사업체의 장차 있을 재산가치 변화를 고려하여 전체 혹은 자본지분 내지는 주식의 형태로 전소유주에게 양도됨. 이는 전소유주가 보상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됨. 이 건은 세부규정을 요청함.
8. 재산내역이 — 사용권을 포함하여 — 부적법한 방식 (예를 들어 권력오용, 부정, 또는 재산 취득자의 사기 내지는 강요)에 형성된 경우는, 취득된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동시에 반환되지도 않음. 정당하게 형성된 재산건에 대해서는 3번 b항이 적용됨.
9. 재산몰수가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례와 관련하여 동독정부는 이들의 수정을 위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해야 함.
10. 대부 및 채권에 대한 서독시민의 지분은 1990년 제2기분 — 화폐통합이후까지 — 이자까지 포함하여 처리됨.
11. 지불과정상 현존하는 외국환 제한조치는 화폐·경제·사회 통합의 발효와 더불어 폐지됨.

1 2. 법인체 청산법을 근거로 하여 서독 정부기관을 통해 신탁 관리되어 오던, 동독 소재 공법기관의 재산은 법적 권리인 내지는 그 법적 상속인에게 이전됨.

### 1 3. 청산규정

- a) 동독정부는 필요한 범류지침과 절차상의 규정을 즉각 제정해야 함.
- b) 동독정부는, 해당 시민들이 어느기관에 언제까지 그들의 청구권을 신고해야 할 지를 공표해야 함. 신고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됨.
- c) 보상청구 해결을 위해 정부예산과는 별도의, 법률적으로 독자적인 보상기금이 동독내에 설치됨.
- d) 동독정부는, 13번 b) 항에 따른 기간 만료시까지 과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대지와 건물들이 매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이는 당사자 쌍방이 반환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과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1989. 10. 18일 이후 양도 매각된 부동산과 건물들은 차후 심사를 받는다.

1 4. 양독정부는 기타 세부사항들의 확정임무를 전문가들에게 부과함.

## 獨逸 貨幣·經濟·社會統合 發效 1周年에 즈음한 評價

獨逸의 貨幣·經濟·社會統合은 當時 狀況上  
不可避한 選擇이었으며, 成果는 施行段階에 있기  
때문에 未知數라는데 衆論

- 東·西獨間 國家的 統一에 앞서 實施되었던 貨幣·經濟·社會統合('90. 7. 1 發效)이후 1년간에 대한 評價는, 當時 狀況으로 보아서는 다른 代案이 없었  
다는 것이 衆論이나 國家的 統一에 이은 東·西獨  
地域間 生活水準 隔差의 解消라는 側面에서 보면  
그 成果는 아직 未知數임.
- 당시 野黨인 社民黨과 많은 經濟學者들은 性急  
한 統合에 대해 많은 問題點을 提起하며 慎重論  
을 폈으나 東獨住民들의 移住民 물결을 막고  
(한달 平均 20萬), 國際政治적으로 有利하게  
展開되는 狀況을 이용하여 民族的 課題 達成을  
앞당기기 위해 취해진 政治的 決斷에 따른 것이  
었음.
- 通貨統合을 늦추고 대신 一種의 國家聯合方式에  
立脚한 긴 過渡期間을 設定하고 東獨의 體制를  
서서히 市場經濟體制로 編入시킨다는 論理는 當  
時 東獨住民들의 無條件的인 統一熱望 情緒와는  
背馳되는 것이었음.

-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날 東·西獨 地域 住民들은 經濟的 構造 改編作業이 苦痛을 隨伴할 수 밖에 없고, 東獨地域에 市場經濟制度 導入에 따른 效果가 상당한 時日을 要하게 될 것이라는 事實을 깨닫게 되자, 舊東獨地域에서는 勇氣와 希望이 사라진 반면, 舊西獨地域에서는 統一負擔때문에 不滿이 漸增하고 있음.

“手術은 成功했으나 患者는 죽어버린” 狀態처럼 統獨經濟의 規模는 커졌으나 經濟力은 오히려 後退, 兩側地域 住民不滿 高潮

- o 貨幣·經濟·社會統合 1周年이 지난 오늘날 統一獨逸의 國民經濟 規模는 커졌으나, 經濟力이 강해지지 않는 못했다는 評價가 大部分인데 마치 “手術은 成功했으나 患者는 죽어버린” 現象에 비유되고 있음.
- 東獨地域 經濟의 持續的인 下降으로 統一獨逸의 1人當 GNP는 프랑스보다 낮아졌으며, 3%미만의 인플레이 維持時代는 지나갔고, 輸出額 第1位의 位置도 흔들리고 있음.

- 가장 深刻한 問題는 東獨地域의 失業問題로서 總就業人口(統獨以前 約900萬)중 3분의 1이 失業 또는 短縮操業 狀態에 있으며, 많은 研究機關 發表에 의하면 '91年末까지 失業 170萬, 短縮操業 200萬등 東獨地域만 40%의 失業事態가 豫想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 東獨地域 住民들은 자신이 創出하는 經濟生産能力의 두배에 달하는 돈을 받고 있으며(이는 물론 西獨地域으로 부터의 莫大한 移轉支出에 힘입은 것임), 西獨地域 住民들은 東獨에 提供해야 하는 이러한 費用을 支辨하기 위해 적절한 豫算方法을 考案해내지 못하고, 結局 政府의 税金引上과 財政赤字 財政運營 方式을 감수하고 있음.
- 基本法(憲法) 106條에 明示된 “全聯邦地域에서의 同等한 生活條件의 創出”을 위해서는 西紀 2000년까지 西獨地域보다 東獨地域에서 每年 5배의 高度成長을 記錄해야 하는 것으로 專門家들은 評價하고 있음.
- 더구나 이를 위해서는 2000년까지 聯邦政府의 東獨地域 新設 5個州에 대한 財政移轉費用이 每年 1,000億-1,500億DM정도가 所要되어야 한다고, 舊東獨 삭센州知事 Biedenkopf(基民黨)은 말하고 있음.

獨逸政府는 迅速한 東獨經濟 回復을 위해 税金  
 引上과 財政赤字 運營등을 통해 統獨費用을 調  
 達하고 있으나, 利率 上昇, 인플레이 憂慮, 마  
 르크貨 信賴下落등 副作用 招來

○ 獨逸聯邦政府는 이러한 統獨費用 支辨을 위해 두가  
 지 方法에 依存하고 있는 바,

① 税金引上 措置를 통해 稅入을 늘리고 있음.

— '91. 7. 1부터 賃金과 給料등 個人所得에  
 대한 7.5% 追加課稅, 1ℓ 휘발유당 25페니히  
 追加稅, 電話使用料, 保險稅, 自動車稅 등의  
 税金引上과 各種 年金 및 失業保險 納入金の  
 引上등으로 子女가 2명이고 月收入이 3,500DM  
 인 家口는 한달에 820DM(연간 약 1000DM)을 더  
 負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Der Spiegel誌가 調査한 바에 따르면 統獨費  
 用 支辨을 위한 税金引上으로 각 個人當 平均  
 擔稅率은 '90년의 41.5%에는 '94년에는 45.2  
 %로 增加될 것으로 展望함.

獨逸政府는 迅速한 東獨經濟 回復을 위해 税金  
 引上과 財政赤字 運營등을 통해 統獨費用을 調  
 達하고 있으나, 利率率 上昇, 인플레이 憂慮, 마  
 르크貨 信賴下落등 副作用 招來

○ 獨逸聯邦政府는 이러한 統獨費用 支辨을 위해 두가  
 지 方法에 依存하고 있는 바,

① 税金引上 措置를 통해 稅入을 늘리고 있음.

— '91. 7. 1부터 賃金과 給料등 個人所得에  
 대한 7.5% 追加課稅, 1ℓ 휘발유당 25페니히  
 追加稅, 電話使用料, 保險稅, 自動車稅 등의  
 税金引上과 各種 年金 및 失業保險 納入金の  
 引上등으로 子女가 2명이고 月收入이 3500DM  
 인 家口는 한달에 820DM(연간 약 1000DM)을 더  
 負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Der Spiegel誌가 調査한 바에 따르면 統獨費  
 用 支辨을 위한 税金引上으로 각 個人當 平均  
 擔稅率은 '90년의 41.5%에는 '94년에는 45.2  
 %로 增加될 것으로 展望함.

— 당장의 國家財政 缺損을 매꾸기 위한 不可避한 措置이나 “税金引上 없는 統獨” 이란 約束을 全獨總選에서 내건 바 있는 韓首相 政府의 信賴問題가 政治爭點化 되고 있음.

② 世帶間 負擔 配分方式이라 할 수 있는 赤字財政 運用을 들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問題點이 指摘되고 있음.

— 持續的인 公共部分의 資本市場 借入增加는 利子率을 上昇시켜 投資를 沮害하게 되는 바, 결국 東獨地域의 投資를 萎縮시켜 長期的으로 東獨再建이 어려워짐.

— 계속되는 財政赤字 累計에 의한 支拂利子 增加는 國家의 財政的 여유를 壓迫하는 바, 현재 1조 3천억 DM으로 推定되는 赤字累計額에 대한 支拂利子만도 全體 豫算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國際的 投資者들이 獨逸의 방만한 膨脹豫算 運用으로 인한 인플레이를 憂慮하게 될 경우 硬貨로서의 마르크貨는 信賴가 喪失될 것임.

基民黨政府는 많은 問題點에도 不拘, 5年안에 東獨住民의 物質的인 生活水準이 西獨地域의 못사는 州(30%隔差)정도로 上昇할 것으로 樂觀

- 基民黨政府는 이와같은 많은 問題點에도 不拘하고 2年안에 主要한 社會間接資本施設과 行政·司法體系가 確立이 되고, 5年안에 東獨住民들이 受容할 수 있는 物質的인 同等한 生活條件의 創出이 可能하다고 樂觀論을 堅持하고 있음.
- 5年안에 東獨地域의 生産力이 增加하여 經濟水準의 隔差가 과거 西獨地域의 잘사는 州와 못사는 州(예를들어 잘사는 헷센州와 못사는 슐레스비히홀스타인州간의 個人所得 격차는 27%정도 差異가 남)간의 차이로 좁혀질 것이라고 함.
- '91년 西獨에서 東獨으로 財政移轉 支出額 1,400억DM(聯邦政府 總豫算規模 4,000억DM와 比較해 볼 때 엄청난 額數임)을 통해 현재 '91 東獨地域 GNP總規模 2,000억DM水準의 經濟가 飛躍的으로 發展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함.
- 다만 環境汚染 除去問題와 住居環境 改善問題는 相當期間이 지나야 解決이 可能的한 問題로 보고 있으며, 西獨水準으로 東獨地域의 環境淨化 施設 投資에 所要되는 費用은 약 2,000억DM으로 推定되고 있음.

## 統獨以後 財政上 問題點

### I . 舊 東獨地域 新設 州政府 ·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立度 脆弱

#### 1. 原 因 (稅入激減)

- 舊東獨地域 企業의 倒産으로 法人稅 部門稅收 不振
- 舊西獨地域에 비해 所得水準이 낮아 (平均 50-60%) 個人所得稅 部門 稅收 不振
- 國有財產의 私有化 不振으로 財產稅 部門 稅收 不振
- 稅務行政體系의 未確立으로 稅源捕捉 未洽

#### 2. 對 策 (稅入增大)

- '91 舊東獨地域州는 舊西獨地域州의 1/3, 地方自治團體는 1/10 水準
- '95까지 東獨地域 經濟再建으로 그 格差가 줄어들 것이 豫想되나 1/2水準 維持 推定

< 住民 1人當 租稅收入 現況 >(推移) (單位 : DM)

	'91	'92	'95
舊西獨地域州	3,300	3,500	4,300
舊東獨地域州	1,150	1,300	2,100
舊西獨地自團體	1,300	1,400	1,650
舊東獨地自團體	150	300	800

## II . 舊東獨地域 再建을 위한 財政支出 增加

### 1. 原 因

- 東西獨 地域間 生活格差 解消(經濟的인 所得水準 側面에서 과거 西獨의 잘사는 州와 못사는 州間의 差異程度로 把握)을 위한 財政移轉 支出費用
  - 東獨地域은 西獨地域보다 每年 5倍以上의 經濟 成長을 記錄해야 하며, 2000년까지 每年 1,000-1,500億 DM 所要推定

#### 〈 統獨에 따른 主要費用 推定치 〉

- 蘇聯軍 撤收費用 : 130億 DM
- 舊東獨政府 財政赤字 引受分 : 300億 DM
- 舊東獨 對外債務 引受分 : 300億 DM
- 信託廳 借入金 : 900億 DM
- 過去 東獨國有企業의 舊債務 引受分 : 1,000億 DM
- 舊東獨地域 住宅 補修維持·現代化 : 500億 DM
- 舊東獨 農業構造 再編을 위한 支援金 : 70億 DM
- 舊東獨地域 交通網 改善 (西獨水準) :  
: 總 1,270億 DM  
(鐵道 480億 DM, 道路 700億 DM, 海運 80億 DM, 空港 10億 DM)
- 舊東獨地域 環境淨化施設 投資 : 2,000億 DM
- 舊東獨地域 郵便·通信分野 施設投資 : 550億 DM
- 東·西獨地域間 教育環境 格差 解消 : 700億 DM
- 에너지 産業設備 現代化 : 1,000億 DM

## 2. 對 策

- 産業構造 再編을 위한 投資는 民間企業에 委任하고 있으며, 政府는 投資의 活性化와 産業立地 強化를 위해 公共投資(社會間接資本·環境保護·教育·에너지部門)에 注力함.
- 各種 財源 調達 手段

① “獨逸統一基金”에 의한 支援 : '94년에는 完全 消盡

< 年度別 支援額 >

(單位 : 10億DM)

年 度	'90 下半期	'91	'92	'93	'94	總額
支援額	22	35	28	20	10	115

(住民數에 比例하여 各州·地方自治團體에 財政支援)

② 税金引上措置를 통한 財源마련

- '91. 7. 1 부터 2年間 投資에 障礙가 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限時的으로 引上

- 引上内容 : 個人 및 法人所得에 대한 7.5% 追加課稅, 石油稅(휘발류 1리터당 25pf 追加), 保險稅, 自動車稅, 담배稅

〈 各 住民들 追加負擔額 〉

( 單位 : DM )

每 月 所 得	追 加 負 擔 額	
	獨身者 家庭	2명의 子女가 있는 家庭
1,400	32.80	25.50
2,000	41.10	25.60
3,500	84.40	58.50
5,000	118.50	82.80
6,500	158.80	111.60
8,000	223.20	160.60
10,000	294.80	206.50

〈 住民 個人所得에 대한 擔稅率 變化推移 〉

( 單位 : % )

年 度	'70	'75	'80	'85	'90	'91	'95
담세율	33.9	36.6	39.3	42	41.5	43	45.2

### ③ 赤字財政運用

- 世代間 負擔配分 方式이라할 수 있는 持續的 赤字財政 運用은 公共部門의 資本市場 借入을 增加시키고, 結局 利子率 上昇으로 인한 投資沮害로 東獨地域의 再建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放慢한 膨脹豫算 運用은 硬貨로서 마르크貨의 信賴問題와도 關聯되어 相當한 批判이 擡頭되고 있음.

#### < 公共部門 赤字 累計額 >

(單位:10億DM)

年 度	'85	'86	'87	'88	'89	'90	'91
赤字額	847	894	951	1010	1039	1171	1300

(聯邦鐵道,聯邦郵便 赤字包含)

### ④ 各種特別賦課金 導入 檢討

- 環境淨化施設 改修를 目的으로 環境特別賦課金
- 東獨地域 雇傭促進을 위해 失業手當 寄與金 增額 등

⑤ 統獨으로 經濟的 利得을 누린階層으로 부터 一定額 徵收, 基金造成方案 檢討

- 移轉 沒收財産을 返還 받는 사람으로 부터 一定額 徵收
- 移轉 沒收財産에 대해 補償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一定額 徵收

蘇聯占領下 舊東獨地域 沒收財産 不返還에 관한

## 憲法裁判所 判決

- 憲法裁判所는 '91.4.23 統合條約 規程中 4條 Nr. 5와 41條에 依據 蘇聯占領軍 治下에서('45 - '48) 斷行된 土地改革으로 인해 沒收당한 財産(약 320만 ha, 舊東獨地域 土地의 1/3)을 不返還하기로 한 決定의 違憲與否 審査에서 만장일치로 合憲判決을 내림.
  - 蘇聯과 舊東獨政權은 東·西獨間 統合條約과 2+4會談 協商過程에서 獨逸統一의 前提條件으로서 이를 관철시켰고, 반면 原所有者들은 基本法上 保障된 財産權 神聖不可侵性을 들어 返還을 주장했었음.
- 訴冤提起者들은 上記 統合條約의 規定들이 基本法(憲法) 制 3條(平等權), 制 14條(財産權), 制 79條(基本法 改正不可事由)에 違背된다고 主張했으나 裁判部는 이유없다고 合憲判決을 내림.
  - 統合條約 4條 Nr. 5에 基本法 143條 3項에 插入된 上記 沒收財産의 不返還 方針은, 79條 基本法 改正不可事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 “ 당시 西獨의 國家權力이 事實上 그리고 法律的으로 東獨地域에 미치고 있지 않았던 점을 勘案하면, 마치 外國의 國家權力作用에 의한 諸般措置에 대해 그 어떤 責任을 질 수 없듯이 당시 蘇聯 占領軍이 행한 沒收措置에 대해서도 責任을 질 수 없으므로” 基本法 制 14條 (財産權)에 違背되는 것은 아니라고 判示함.
  
- 다만 基本法 制 3條 (平等權)에 依據 立法權者는 事後 報償에 관한 적절한 規定을 마련할 것을 判示함.
  - 이 判決에 依據 財務部는 現在, 過去 沒收財産 報償에 관한 立法 推進中임.

## 舊東獨 財產權 處理問題

### I . 信託廳의 組織 및 任務

- 信託廳은 東獨 國營企業의 私有化 推進機構로서 聯邦政府의 財務省이나 經濟省보다 東獨의 將來를 決定하는데 더 많은 權力을 行使하고 있음.
- 組織 構成은 株式會社와 類似하나 公的인 法人으로서 首相의 監督을 받으며, 上院과 下院에 각각 報告義務를 갖고 있음.
  - 行政實務委員 (Verwaltungsraete) : 6名
  - 理事會 (Verstandsmitglieder) : 5名
  - 委託株式會社 (Treuhandaktiongesellschaft) : 5個
- 任 務
  - 8000개 東獨國營企業의 將來 決定 (整理, 處分 혹은 財政補助後 措置 등)
  - 東獨國營企業의 賣却價格 決定
  - 人民所有 不動産과 林野 處理問題
  - 各 企業이 創出한 利潤의 處理問題
- 設置根據
  - “ 人民所有財產의 私有化와 再調整에 관한 法律” (『信託法』으로 통칭, '90年 7月 1日 發效)

## II . 蘇聯占領下 舊東獨地域 沒收財產 處理問題

### 1 . 財產權 處理에 관한 合意 ('90.6.15)

- 蘇聯軍 占領('45 - '49)下에서 土地改革에 의해 이루어진 沒收財產은 返還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함 .
  - 蘇聯과 東獨政府는 당시 취해진 措置를 撤回하지 않기를 희망
  - 西獨政府는 統獨에 따른 對外的 마찰을 줄이기 위해 統獨議會에서 國家補償 次元에서 考慮하도록 決定 留保

### 2 . 憲法裁判所 判決

- “ 당시 西獨의 國家權力이 事實上 그리고 法律的으로 東獨地域에 미치고 있지 않았던 점을 勘案하면, 마치 外國의 國家權力 作用에 의한 諸般 措置에 대해 그 어떤 責任을 질 수 없듯이 당시 蘇聯占領軍이 行한 沒收措置에 대해서도 責任을 질 수 없으므로” 基本法 第14條 (財產權)에 違背되는 것은 아니라고 判示함 .

- 다만 基本法 第3條(平等權)에 의거, 立法權者는 事後 補償에 관한 적절한 規定을 마련할 것을 判示함. 이 判決에 의거 財務省은 現在, 過去 沒收財産 補償에 관한 立法을 進行中임.

### Ⅲ. 返還 또는 賠償 可能的한 財産權

- '49年以後 沒收된 다음과 같은 財産에 관해서는 '90.10.31까지 政府가 申告를 받아 返還 또는 賠償與否를 決定함.
- 申告對象 請求權
  - 押收 또는 信託管理된 亡命者의 資産
  - 1945.5.8부터 1953.6.11까지의 期間동안 現 東獨地域에 常住한 적이 없거나 適法하게 東獨으로부터 出國한 者로서 上記 期間內에 이미 西獨國民이 된 者의 所屬財産이기 때문에 臨時로 國家의 管理下에 있는 財産
  - 國家의 管理下에 있는 外國 財産
  - 前 所有權者가 取得者, 國家機關 또는 第3者의 不法한 行爲로 인하여 喪失한 財産

- 高額の賃借料 및 이로 인하여 發生한 債務의 重課로 인하여 押留, 所有權 拋棄, 贈與(無償讓渡 包含) 또는 相續權 拋棄를 통하여 公有 財産으로 된 宅地
- 1952.3.20 破産된 農家에 관한 法令(CBL NO, 38. 226페이지)에 의하여, 1953.2.19 以前에 所有權者의 勤務能力 또는 財政難으로 인하여 信託管理下에 있게 된 農家の 請求權
- 以前 所有者들은 東獨에서 마지막 살았던 곳의 地方行政機關이나, 居住地가 없던 所有者들은 그 財産이 位置한 곳의 地方行政機關에 財産의 內容을 자세히 記載하고, 登記簿 寫本이나 證據寫眞을 添附하여 申告를 해야 함.
- 추후 締結된 統合條約 41條에 의하면 이러한 財産이 다 返還되는 것은 아니고, 東獨地域의 投資를 促進하기 위해 特別法律로 規定되는 垆地나 建物の 경우 國民經濟的 次元에서 必要 不可缺하다고 判斷될 경우 現 賣買價格으로 補償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IV . 過去 東獨政權에 의해 強制로 沒收된 財産權 의 返還問題

##### 1 . 論難의 展開

- 舊東獨地域 投資障礙의 가장 核心要因으로 꼽히고 있는 過去 東獨政權에 의해 強制로 沒收된 財産權의 返還 및 處理의 遲延問題가 政治圈에서 舊東獨地域 再建問題와 관련하여 최대의 爭點으로 떠오르고 있음 .
  - 信託廳이 過去 公有企業과 財産을 賣却, 私有化하여 東獨地域의 經濟構造를 改編하려 해도 法的인 所有關係가 不分明하여 企業들이 引受를 꺼리고 있고
  - 元所有者가 該當財産을 生産手段으로서 認識, 投資를 통한 經濟活性化와 雇傭創出을 위해 使用하기 보다는 단순한 財産增殖을 위해 계속 所有權만을 保有하려는 傾向이 있어, 東獨地域의 經濟는 계속 沈滯되고 失業者는 늘어 社會的 緊張이 高潮되고 있음 . 따라서 적절한 對應策과 法案制定이 立法者들에게 主要課題로 擡頭되고 있음 .

- 企業家들은 東獨地域 投資計劃을 세우려 해도 元所有者가 不分明한 경우는 後日의 法的인 紛爭 可能性이 있어 꺼리고 있고, 元所有者가 確定的인 경우라 하더라도 元所有者가 明確한 意思 決定을 하지 않아 投資가 挫折된 경우도 있음.
- 이에 대한 對應策으로 政治家들 사이에 投資 促進을 위해 “ 返還보다는 補償을 통한 조속한 法的인 所有權 確定” 立場이 擡頭되고 있음.
  - 이러한 主張이 貫徹되기 위해서는 우선 統合條約內에 規定된 基本原則의 改正이 前提되어야 하며, 憲法學的으로 볼 때 獨逸基本法條項中 關聯條項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下의 核心部分에 속하는條項이므로 原則變更에는 상당한 論難이 豫想됨.
  -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法的인 側面에서 바이마르憲法이래 社會的 公共福利 增進을 위해 神聖不可侵한 財產權이라도 制限할 수 있는 裁量權이 立法權者에게 주어져 있다는 憲法精神中の 社會國家的 原則을 들어 “ 返還보다 補償 優先” 을 主張하고 있음.

## 2. 政府의 最終立場

- '91.3.12 自民黨內에서 Moellermann 經濟相과 Kinkel 法務相은 論難을 거듭한 끝에 既存 統合條約의 “補償보다 返還”의 原則은 지키되, 投資促進을 위해 廣範圍하게 例外를 認定한다는 線에서 妥協을 하고, 이러한 案을 聯政內의 基民黨에서도 受諾함으로써 政府의 最終 立場이 決定되었음.
- 不動産(土地, 建物)의 경우는 다른 投資者가 雇傭을 創出하거나 住宅問題 解決에 기여하거나, 社會間接資本施設 擴充에 參與할 때는 元所有者의 所有權 返還 要求는 撤回되고 補償만 이루어짐.
- 企業의 경우는 새로운 買入者가 雇傭을 創出하거나 企業의 競爭力을 向上시킬 경우나, 과거 所有者가 더 이상 企業을 運營할 意思가 없는 경우 返還要求는 撤回되고 다른 投資者에게 賣却됨
- 그러나 基本法 14條의 私有 財産權 保障 條項에 制限을 가하는 이러한 決定은 東獨 地域의 投資促進과 景氣浮揚을 위해 限時的으로 '92年末까지만 有效함.

- 上記 條件에 該當되어 返還申請이 撤回되는 以前 所有權者들은 補償을 받게 되는데, 現 去來市價와 現저한 差異가 날 경우 差額 補償金을 追加로 받게 됨.
- 관련 所有財産은 公共法人 (地方行政機關, 州政府, 聯邦政府)과 信託廳 管理下의 財産에 限定하며, 信託廳과 該當機關이 上記 條件 充足與否에 관한 決定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하여 投資節次를 簡素化함.
- 關聯財産을 賣却할 때는 以前 所有者에게 該當機關 또는 信託廳이 意見開陳의 機會를 賦與해야 하며, 즉시 決定事項이 通告되어야 함.
  - 그러나 元所有者의 問題提起나 反對意思 表明이 있다고 해서 그 賣却決定 履行이 遲延될 수 없음

## V . 信託廳 私有化 實績

- 信託廳은 1991.5.31 현재까지 2,140 企業體를 私有化시킴 .
- 私有化는 4月부터 增加趨勢를 보이기 시작 , 5月에는 544 企業體로 最高 實績을 보임 .
- 地域別로는 Sachsen州 (2위 : Brandenburg州 )가 월등한 記錄을 세움 .
- 私有化 實績

	90 .	91 . 1	91 . 2	91 . 3	91 . 4	91 . 5	계
본사	180	57	69	72	62	172	612
지사	228	198	229	228	273	372	1,528
총계	408	255	298	300	335	544	2,140

# 東獨經濟의 全面 私有化 反討論

## 1. 序 言

- 아래 報告書는 舊東獨의 經濟學者 <舊東獨 學術院 會員이자, 中央經濟學術院(Zentralinstitu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 副所長>인 Harry Maier가 舊東獨 經濟를 再建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市場 經濟秩序의 完全한 編入, 또는 私有化를 통해 舊東獨 經濟의 潛在力을 解體시키지 말고,

潛在力을 최대한 活用하여 産業構造 調整政策을 통해 점차적으로 統合시켜 나가도록 過渡期的인 混合 經濟政策 戰略(eine gemischtwirtschaftliche Strategie)을 펴야한다는 要旨의 글 “Integration statt Zerstoerer fuer eine gemischtwirtschaftliche Strategie in den neuen Laend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91.7.12 掲載)을 要約한 것임.

- 이 論文이 흥미로운 것은 舊西獨의 經濟研究機關이나 經濟政策 推進機關들이 既存의 舊東獨經濟를 過小評價하고 빠른 私有化를 통해 舊東獨經濟의 完全한 市場經濟 編入을 主張하는데 반해,

舊東獨 出身으로서 一方的 經濟統合에 따른 社會的인 問題 發生 可能性을 우려, 舊東獨經濟의 肯定的인 側面을 살려나가는 漸進的인 混合經濟政策을 代案으로 提示하고 있다는 점임.

## 2. 舊東獨經濟의 市場經濟로의 改編에 따른 問題點

- 舊東獨經濟의 社會的 市場經濟로의 構造改編에 따라 發生하는 問題點들은 舊東獨의 既存 經濟潛在力을 제대로 評價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構造調整過程에 舊東獨 經濟를 編入시키지 못한데 原因이 있음
  - 西獨 DM의 東獨地域 導入이 不可避했고 이에 따라 모든 舊東獨의 財貨가 價值切上됨에 따라 生産力은 低調한 가운데 生産費 上昇으로 거의 모든 生産製品이 競爭力을 喪失하게 되고 東獨地域 住民들은 커다란 經濟·社會的 難關에 봉착하게 됨.
  - 全體 GNP는 '90年度 下半期에 27.5%, '91年度 上半期에 25%가 減少했으며, 특히 製造業 部門의 生産量은 '90年度 下半期에 57.7%가 減少했음.
  - 總 就業人口는 '89년도 960만명에서 早期停年, 失業待機(Warteschleife), 西獨地域으로 移住 등으로 '91年度 前半期에 780萬名으로 줄었으며, 앞으로 240萬名의 失業과 100萬名의 短縮操業 勤勞者가 發生할 것으로 豫想됨.

- 附加價值 生産 側面에서 東·西獨間의 隔差는 커져 왔음 .
  - 70年代 西獨企業은 東獨企業보다 投資生産性이 2.1배 높았으나 , '89년에는 6.6배가 높았음 .
  - '89年の 東獨의 1인당 GNP가 西獨의 38% 水準이었음 .
- 이러한 經濟的 隔差가 存在하는데도 市場의 힘에 의지하여 國家經濟政策을 통한 保護對策 없이 東獨의 經濟를 放置한다는 것은 經濟의 崩壞로 , 해당 經濟主體의 苦痛뿐만 아니라 , 國家的 負擔으로 歸着됨 .

### 3. 東獨經濟의 全面 私有化의 不當性 理由

- 막대한 支出費用 때문에 個別企業이 아닌 全體國民 經濟를 짧은 時間에 완전히 私有化하여 舊西獨化 하는 것은 不可能함 .

- 戰後 西獨의 經濟를 復興시키기 위해 Marshall-Plan에서는 西獨 GNP의 1%만 投入을 해도 可能했으나, 現在 東獨經濟를 西獨水準으로 再建하기 위해서는 每年 1,100 - 1,200억DM(舊東獨 GNP의 2/3水準)을 投入해야 하며 최소한 5年동안은 支出額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投入되어야 함.
- 이러한 費用은 결국 國民의 負擔으로 歸着되는 바, 短期間에 걸쳐 東獨의 企業을 競爭力있는 企業으로 바꾸기 위해 私有化를 優先 推進하고, 나머지 企業을 閉鎖시키는 것은 社會·經濟적으로 많은 危險負擔의 要素를 안고 있음.
- 信託廳의 급속한 企業 私有化政策도 다음과 같은 具體적인 問題點이 있음.
  - 西方投資者들에게 일시에 많은 投資對象物을 供給하게 되어, 賣却協商에서 不利한 位置에서 서게 되고, 그 賣却價格을 낮추게 되었음.
    - 9,000개 企業의 賣却 推定值가 '90年 여름에 총 8,000억 - 1조억DM이었으나, '91년에 는 6,000억DM으로 豫想되고 있음.
  - 西獨側 企業의 西獨地域 投資額 減少는 技術 開發 可能性을 억제시킴.

- 東獨의 모든 企業을 私有化시키기 위해서는 舊西獨 企業들이 西獨側에 전혀 投資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3년반을 投資해야 함. (西獨企業의 西獨地域 '89년 投資總額은 1,730억 DM)
- 私有化되지 않는 企業을 閉鎖하여 既存의 일자리를 廢棄하고, 새로운 競爭力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費用이 들게 됨.
  - 過去 西獨에서 1名の 일자리를 創出하는데 投資되는 費用은 25만 DM임을 考慮할 때, 200만의 일자리를 새로이 創出하기 위해서는 5,000억 DM이 所要됨.
- 急進적인 私有化 政策은 私有化 가망이 없는 企業들의 勞動者들을 不安하게 하여, 과도한 賃金引上 要求를 하게 하거나, 西獨으로 移住를 促進시켜 能力있는 人的資源(Humankapital)이 東獨地域 經濟再建에 動員되지 못하게 함.

#### 4. 東獨經濟 私有化의 對策

○ 이러한 問題點 發生을 極小化하기 위해서는 私有化를 통한 構造再編을 하되, 너무 성급하게 根本的인 體制轉換을 서두르지 말고 당장은 私有化가 곤란하지만 中·長期的으로 競爭力이 있는 기업은 國有企業(Staatsunternehmen)形態로 存續시키면서, 既存企業이 갖고 있는 技術革新의 潛在力과 人的資源을 結合시켜 企業을 再生시켜 나가는 『私企業 및 國有企業 併存의 長期戰略』을 추구해야 함.

－ 質的인 면에서 舊西獨이나 西方地域에 비해 떨어져 있지만 研究技術開發 側面에서 舊東獨의 技術革新 潛在力은 世界的 水準으로 볼 만큼 상당했음

- 東獨의 研究技術開發(F & E Ausgabe) 支出額은 總 GNP의 2.8%('89)로서, 西獨의 2.7%와 비슷했음.
- 製造業分野 總 投資額에서 研究技術開發費가 차지하는 比率도 23.6%('89)로서, 西獨의 32.3%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이태리 등 其他 EC 國家보다 2배나 많았음.
- 人口 1,000名당 研究員이 16名('89)으로 研究員 比率도 西獨과 똑같으며, 다른 EC國家보다 높았음.

- 人的資源의 質이 教育水準面에서 볼 때 결코 EC나 西獨에 뒤지지 않았음.
- 舊東獨에서는 勞動者의 62.5%가 일정한 資格을 갖춘 專門職 從事者(Facharbeiter)인 반면, 舊西獨에서는 58%였음.
- 全體勞動人口中 專門大 이상 졸업자가 舊東獨의 경우는 21.2%였던 반면 舊西獨은 18.8%였음.

## 5. 結 論

- 따라서 體制의 相異點을 強調하여 過去를 無로 돌리고 새로운 制度를 確立하는 것을 目標로 經濟構造 再編을 서둘러 推進할 경우, 既存 人的資源 活用 및 蓄積된 技術開發의 可能性은 全面 廢棄되고 이에 따른 社會的 損失과 새로운 體制로 代替하는 費用만 增加하게 됨.
- 아울러 高級人力이 東獨地域을 떠나 西獨地域으로 移住함에 따라 自生力있는 經濟構造 確立은 어려워지고, 西獨側으로부터의 “自立을 위한 支援”(Hilfe fuer Selbsthilfe)도 그 效力이 喪失됨.

- 既存 人力資源중 새로운 世代의 經營人에 대한 再教育과 既存研究機關의 再編成을 통해, 社會的 費用을 줄이는 가운데 舊東獨企業의 市場經濟構造로의 編入을 촉진시켜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私有化를 통한 私企業과 國有企業(보통 西方世界에서도 一定한 部分은 國有企業임을 감안)의 暫定的인 併存이 不可避함.

# 信託廳의 企業私有化 關聯 論議

## 1. 舊東獨 國營企業의 私有化 實態

- 國營企業體의 性格을 띠고 있는 信託廳은 財務省의 管理下에 立法權者로 부터 舊東獨의 國有企業을 可能한 限 迅速하게 私有化하고 構造改編시키는 任務를 附與받았음.
- 3,400여개의 企業('91.10 現在)을 私有化한 바 있는데(현재 아시아地域에는 인도, 싱가포르, 日本에 各各 1個의 企業 賣却), 나머지 企業은 舊東獨企業이 콤비나트形態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企業分割을 하여 賣却豫定이므로 企業이 私有化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獨逸經濟研究所(DIW)는 推定하고 있음.
- 아직 私有化되지 않았으나 企業全體 또는 一部가 生存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企業體는 信託廳이 參與하여 財政的 過渡期 生存支援은 물론 企業을 整備하여 私有化될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음.
- ◆ 해당 企業體들은 '91.10末까지 企業을 評價할 수 있도록 開始貸借對照表와 企業整備方案을 提出해야하며 信託廳은 이를 根據로 企業을 계속 存續시킬 것이냐를 決定하게 됨.
- ◆ 이미 노른자위 企業은 거의 私有化된 形便이므로 賣却條件이 좋지 않은 企業을 財政과 經營노우하우를 投入하여 整備한 후 賣却possible한 狀態가 되도록 하는데는 막대한 時間과 經費가 所要될 것으로 전망됨.

## 2. 不實 國營企業에 대한 處方

- 다른 企業體와의 競爭에서 生存能力이 없거나 企業整備가 不可能하다고 判斷되는 企業은 閉鎖시켜야 함.
  - 이 경우 舊東獨 産業構造의 特性上 一定地域에 大規模 企業體가 集中配置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地域 經濟的 觀點下에서 職業安定과 失業問題를 勘案하여 時間的으로 安排하는 등 政治的인 考慮를 해야하며, 또 州政府와 聯邦政府가 社會福祉的 政策을 펴는데 信託廳이 積極的으로 支援해야 함.
- 現在 企業私有化는 建築材工業 및 建設分野, 食品工業分野에서 가장 活潑하고, 化工, 造船, 金屬, 鐵鋼分野는 賣却이 全無하거나 미비한 實情임.

## 3. 信託廳 活動에 대한 批判

### 가. 勞組側 批判

- 勞組側은 信託廳을 없애고 現在의 私有化政策 대신, 더 많은 企業을 國家가 적극 介入하여 整備하도록 要求하고 있음.

- ◆ 특히 失業者問題와 關聯하여 이런 批判을 무마하기 위해 現在 信託廳은 閉鎖企業 從事者들에 대한 社會福祉計劃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各州에 勞組側도 參與하는 信託廳 執行委(Treuhandkabinett)를 設置하여 主要事項에 대해 共同決定하도록 配慮하고 있음.

#### 나. 企業·經營者側 批判

- 반면 企業·經營者側은 新託廳의 活動이 舊東獨 國家의 또 다른 干涉과 類似하며, 私有化와 投資協商을 오히려 遲延시키고 있어 市場經濟路線에 立脚한 企業構造 再編裁量의 餘地를 점점 줄이고 있다고 批判함.
- 信託廳이 不足한 財源과 人力으로 最大의 成果를 내기 위해 積極 介入하고 있으나, 오히려 各 企業의 投資意慾을 促進시키기 보다는 抑制시키는 役割을 하고 있다고 함.

#### 다. 活動基準의 模糊性 批判

- 한편 信託廳 活動의 基準이, 該當企業·買入者·所有者인 國家 其他 利害關係人들의 各宗 要求때문에 一貫的이지 못하고 明確하지 못하다는 批判이 일고 있음.

- 예를 들어 未私有化企業이 持續的인 經營과 存續을 保障해 주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融資를 얻을 경우, 이에 대해 信託廳이 保證을 서주고 있는데 (현재 300억DM에 이르고 있음) 어떤 基準으로 保證을 서주고 있는지가 不分明함.
- 現在 大部分의 融資金이 企業의 生産單價를 줄이기 위한 施設의 現代化나 投資目的에 쓰이지 않고 職員들의 賃金支拂에 使用되고 있는 바, 이는 企業 構造 轉換을 위해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
- 이를 통해 企業이 合理化되지 못하고 閉鎖되는 경우는 結局 國家의 負擔으로 歸着되는데, 이러한 負擔을 明確하게 하기 위해서도 어떤 基準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함.

#### 4. 整備可能 企業에 대한 『獨逸經濟研究所』 (DIW)의 提案

- 새로운 信託廳의 私有化 戰略과 關聯하여 최근 獨逸의 最高 經濟研究所인 DIW는 週刊報告書 ('91.10.10日字)에서 다음과 같은 提案을 하였음.
- 우선 信託廳은 各 企業의 開始貸借對照表와 企業 整備方案을 檢討한 후 企業整備가 可能한 企業은 명확한 基準을 設定한 法的인 根據에 의해 적절하게 自己資本을 擴充하도록 支援해야 함.

- ◆ 各 個別企業을 따로따로 審査하게 될 경우 政治的인 壓力이나, 地域政策的 考慮에 따라 『企業整備가 不可能한 企業』도 維持시킬 수 있으므로 個別審査대신에 客觀的인 私有化 規定을 만들어 이에 따라 處理해야 함.
  - ◆ 企業의 數가 많고 또 복잡한 經濟狀況 때문에 일일이 個別企業을 다 審査한다는 것은 信託廳의 既存人力으로 不可能함.
- 일단 企業整備가 可能하다고 判斷된 企業은 現在 가장 큰 經營上 隘路로 나타나고 있는 舊債務를 완전히 탕감시켜주는가, 資本出資를 통해 스스로의 努力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해 주어야 함
  - 整備可能 企業의 製品競爭力 提高를 위한 支援措置 形態는 製品生産의 單價를 줄이기 위해 크게 賃金 費用을 補助해주는 方法, 資本費用을 支援하는 方式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가지 形態를 並行하는 方式을 권고함.

#### 가. 賃金費用 補助方法

- ◆ 첫번째 方式은 大部分 信託廳 管理 殘留企業體가 短期間의 效果的인 賃金費用 支拂補助 없이는 企業體의 生存이 不可能함을 勘案하여 採擇되고 있는데 (Berkley大學 研究팀이 開發하였다하여 Berkley -

Model이라고 불리움) 長期的으로 莫大한 國家의 負擔때문에, 그리고 企業體들의 政府依存을 恒久化시켜 自生力을 確保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나. 資本費用 補助方法

- ◆ 두번째方式은 各種 投資支援 措置를 통해 資本費用 節減을 통한 企業構造 調整과 資本의 現代化를 꾀하는 것으로, 이 方式은 長期間의 資本懷妊期間때문에 短期間에 效果가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음.

#### 다. 並行補助方法

- ◆ 따라서 이 두가지 方式을 接合시키되, 政府의 保存期間을 5年으로 限定시켜 이 期間內에 競爭力을 갖추지 못하는 企業은 自動 淘汰되도록 함.
- ◆ 즉 老後한 資本手段이 革新되고 改善될 때까지 唯一한 生産의 長點인 낮은 賃金을 維持하도록 過渡期間 동안 賃金補助金을 支拂하되 5년의 期間을 두고 점차 生産性的의 向上에 맞도록 補助金을 줄여나가면서, 持續적으로 各種 稅制上 特惠와 投資補助金을 지급하여 競爭力있고 現代적인 生産施設을 擴充할 수 있도록 支援해 나간다는 것임.
- ◆ 이러한 支援아래서만 自生力을 갖춘 産業構造가 確保되며, 企業이 長期的으로 賃金을 支拂하면서도 競争能力을 갖추 수 있다고 함.

# 舊東獨의 農業構造 再編

## 1. 舊東獨의 農業構造 再編

- 統獨과 더불어 舊東獨의 自給自足 中心의 計劃 經濟 農業體制는 市場經濟體制의 一部인 農業體制로 轉換해야 했으며, EC 單一市場內에서 競爭力을 갖출 수 있도록 全面 構造 再編되어야 했음.
- 舊東獨地域 農林業 從事者들도 一定한 所得을 통해 社會福祉的 市場經濟體制(soziale Marktwirtschaft) 內에서 一定한 產業的 寄與를 하며, 社會福祉體系 編入을 통해 生活條件을 西獨地域 水準으로 漸次 適應시켜 나감.
  - 이를 위해서 既存의 農業·林業協同組合을 解體시켜, 生産手段을 再 私有化하고, 특히 農業分野에서는 家族農 單位로 生産構造 및 組織을 再編해야 함.
  - 農業構造 轉換過程에서 不必要한 人力으로 看做되어 解雇되는 從事者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出發을 위한 轉職 職業教育을 實施함.
- 過去 自然을 훼손하면서까지 最大量 生産을 目標로 했던 方式을 脫皮하고, 市場條件에 맞는 質 爲 主의 生産方式을 하도록 함.

- 農企業의 規模를 經濟的 必要性에 맞게 合理的으로 調整하고, 生産性 向上을 위해 優秀한 農機械 등 資本擴充을 해야 하며, 市場構造를 確立해야 함.
- 農村地域 社會間接資本施設을 擴充하여 産業 基盤을 構築함.
- 既存의 農業分野에서 發生한 環境汚染을 除去하고 環境保護的인 農業生産方式을 採擇함.

## 2. 農業構造 再編에 따른 法 整備

- 上記의 統獨과 關聯한 諸般政策을 具體化하고, 舊 西獨의 法을 舊 東獨地域에 全面 適用함에 따른 過渡期的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法的인 根據를 마련함.
- 우선 貨幣·經濟·社會統合 第15條에 依據, 舊 東獨의 經濟가 EC의 市場經濟秩序에 編入될 수 있는 基礎를 마련함.
- EC 執行委員會는 '90.12.4 舊 東獨 農業의 EC 農業經濟圈 統合에 따른 EC法에의 適應을 위한 過渡規程들을 議決함.

- 統合條約(Einigungsvertrag)을 통해 舊 西獨의 聯邦法이 全面的으로 適用이 되나, 갑자기 西獨 地域農業과 同等한 條件下에서 競爭을 할 경우 舊 東獨農業이 거의 市場을 喪失하고, 構造再編 過程에서 社會的인 問題發生이 豫想되어, 統獨 直前 舊 東獨 人民議會가 議決한 農業構造調整法은 그대로 過渡期的으로 有效하도록 하고 몇가지 法은 統合條約의 附屬文書에 例外的인 規程을 두고 있음.
- 이 農業構造調整法은 統獨以後 聯邦議會에서 새로이 改正되었는 바,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음.
  - 既存 農業生産協同組合(LPG)은 '91.12.31까지 解散되어 協同組合, 家族農 形態의 自營農, 會社農 등으로 다시 登錄함.
  - LPG를 脫退하고자 하는 組合員들에게 共有資產 이던 農機具와 在庫 農産物에 대한 正當한 權利 保障
  - LPG의 構造轉換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構造調整上 過度한 剩餘人力的 解雇權을 LPG 理事會에 附與 함.
  - 未解決 財産權의 所有權 確定 및 返還과 關聯하여 LPG 理事會 任員들이 負債를 包含한 모든 責任을 짐.

- 農林分野의 人民共有資産(國有財産)의 경우는 統合條約 第25條에 따라 信託廳에 의해 管理되며, 原所有者에게 返還되거나, 州政府 및 地方自治 團體에 所有權이 移管되지 않는 財産은 私有化됨.
- 該當 財産은 協同組合이나 個人에게 賃借되었던 農林業分野 國有財産으로, 不動産 및 動産, 國營 農場 및 事務所, 植物園, 競馬場, 屠畜場 등임.
- 이러한 農林分野의 財産을 私有化하고 構造再編 함에 있어 舊 東獨의 新設 農業構造를 考慮하고, 不動産의 價格을 上昇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 3. 狩獵分野에 관한 法 調整

- 狩獵分野에서는 既存 聯邦狩獵法(Jagtrecht)이 基 本的으로 적용되되, 統合條約에 依據 약간 修正됨.
- 各州는 現在 75ha로 規定되어 있는 狩獵場 規模 를 좀더 넓힐 수 있음.
- 舊 東獨에서 實施되었던 狩獵資格證 試驗은 既存 西獨에서 實施되었던 試驗과 同一視함.

- '92.12.31까지는 過渡期的으로 舊 東獨地域에서  
의 狩獵行爲는 狩獵協會에 의해 指定된 場所에서  
만 함.
- 各 州는 州別 狩獵法을 制定함.

#### 4. 農業構造 轉換에 따른 問題點

- 現在 農業構造 轉換은 애초 政策 決定者들이 생각  
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게 進行되고 있음.
- 우선 貨幣·經濟·社會統合으로 인해 舊 東獨市  
場에 低廉하고 品質이 좋은 農産物이 마구 流入  
되어 舊 東獨 農家가 生産物의 販賣網을 잃게  
된 것이 가장 큰 要因임.
- 더구나 社會主義 計劃經濟에서 市場經濟體制로  
轉換하는데 歷史的 事例가 全無한 關係로 當初  
의 樂觀的인 理論的 假定을 훨씬 넘어서 舊 東  
獨의 經濟가 一時에 崩壞되었음.
- 未解決된 財産權의 處理問題가 構造調整을 遲延  
시키고 있음.

協同組合 組合員이 脫退를 원할 경우 財産權을 確定하는데는 자기의 持分과 그 以後 財産發展 狀況에 대한 精確한 評價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財産分割을 위한 새로운 會計制度에 의한 DM 開始貸借對照表가 아직 作成되지 않았거나 檢討되지 않아 進展이 안되고 있음.

또한 舊 東獨의 農家財産은 所有權과 占有權이 分離되어 있지 않았고, 또 國有財産의 原所有者에로의 返還과 地方行政機關에로의 所有權 移轉은 舊 東獨地域의 司法·行政體系 未構築으로 더욱 遲延되고 있음.

## 舊東獨 經濟의 崩壞 原因

### 1. 新經濟政策(Noes)의 失敗

- 스탈린主義的 統制·計劃經濟體制에 의해 外形的 成長을 하던 東獨의 經濟가 活力을 잃고 沈滯에 빠지자 前 東獨共産黨 書記長 Ulbricht는 6次 全黨大會('63)에서 新經濟政策(Noes: Neues Oekonomische System der Planung und Leitung der Volkswirtschaft)을 發表함.
- “市場”과 “利潤”을 部分的으로 導入하여 企業의 競爭力을 提高시키려는 이러한 經濟政策은 하나의 實驗으로 끝나고 오히려 經濟는 混亂에 빠져 住民들에 대한 生必需品 供給이 더욱 惡化되자, 70년에 同 政策은 撤回됨.
- Mittag에 의하면 Noes의 撤回를 蘇聯의 브레즈네프가 호네커를 통해 要求했으며 그 以後 東獨에서 經濟體制를 改革하려는 試圖 自體가 不可能하게 되었다고 함.

### 2. 社會福祉政策과 中央集權的 計劃經濟政策의 失敗

- 政權을 잡은 Honecker는 西獨에 대해 社會主義 優越性을 誇示하기 위해 東獨 經濟能力의 限界를 벗어나는 무리한 社會福祉政策을 펴면서, 철저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確立시켜 나감.

第8次 全黨大會('71)에서 “ 經濟는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라 社會政策을 實現하기 위한 手段” 이라는 主張아래 經濟政策을 社會政策의 道具化 하고 經濟規模에 맞지 않는 住民에 대한 住宅供給, 勞動時間 短縮, 各種 社會施設에 대한 國家支援 政策을 펴.

- 이에 따라 經濟의 再生産 能力은 점차 줄어들었고 生産物은 擴大再生産을 위해 投資되기 전에 分配되어 버리는, 이데올로기가 經濟의 法則에 우선하는 經濟政策 運用이 계속됨.
- 또한 漸增하는 社會福祉 費用을 堪當할 수 없게 되자 財政 赤字는 늘어가고 이에 따른 利子를 支辨할 수 없게 되어 外國으로부터의 債務가 늘어갔음.

企業을 計劃經濟下에서 效果的으로 統制하고, 住民에게 利潤이 아닌 動員方式에 의해 勞動의 誘因을 提供하기 위해 3,500個의 企業體를 250個 大型 Kombinat로 통폐합함.

- 이에 따라 國際競爭力이 있던 中·小企業體들이 사라지게 되고 國家獨占 經濟體制가 成立되어, 能率과 競爭力이 떨어지고 결국 東獨 商品의 世界市場 占有率이 점점 줄게 됨.

- 住民들의 生必品 供給隘路를 打開하기 위해 모든 工場은 製品生産에 있어 生産物의 5%를 義務적으로 消費品이 차지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각 工場은 生必品 割當量을 채우기 위해 生産活動과 전혀 무관한 것도 虛僞報告를 하게 되었는데, 官僚的 命令經濟體制는 그 能力에 따라 經濟計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上部에서 指示된 割當量 채우기에 중점을 둔, 現實과 동떨어진 報告書를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어 外形的인 經濟指標 發表에도 不拘하고 不實經濟化 되는 것이 不可避했음.

### 3. 經濟崩壞의 決定的 要因

○ 東獨經濟가 70年代末부터 80年代初에 걸쳐 決定的으로 沈滯狀態에 빠져, 體制崩壞의 發端이 시작된 것은 다음 두가지 要因에 起因함.

- 첫째는 '70年代末부터 國際原油價가 暴騰하였는데 主要 原油提供國인 蘇聯이 供給量을 매년 1,900만톤에서 1,710만톤으로 줄인 데 있었음.

- 原料資源을 全적으로 外國에 依存했던 東獨은 '81부터 成長率과 輸出鈍化가 뚜렷해지기 시작했음.

- 이에 따라 住民들의 生活水準을 낮추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높아진 住民들의 期待水準과 Honecker의 西獨에 대한 社會主義 優越性 誇示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社會福祉的 政策은 拋棄되지 않았음.

둘째는 獨自적으로 尖端産業 開發을 위해 電子産業分野에 막대한 投資를 한데 있었음.

- 西方側의 하이테크分野에 대한 對東歐圈 禁輸措置로 인한 技術開發의 애로를 打開하고, 獨自적인 電算産業體를 갖기 위해 140억 東獨마르크를 投資함.
- 上記 投資額은 東獨의 電子産業(Robotron)을 國際적인 競爭力을 갖춘 水準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미미한 水準이었으나, 舊東獨의 經濟規模로 볼 때 다른 分野의 投資를 萎縮시키고 資源配分을 歪曲시킬 만한 막대한 額數였음.

原料輸入에 필요한 外換 確保와 電子産業分野 投資를 위해 東獨은 SED 산하 對外貿易 總括會社인 Koko와 그 責任者였던 Schlack-Golodkowski에 주로 依存했는데, 統獨以後 그 活動이 問題가 되고 있음.

- 특히 西獨側은 schlack를 통해 東獨經濟의 破産을 막기 위해 '83년에 10억 DM의 借款을 提供했는데, 만약 이 西獨의 借款이 없었다면 東獨經濟는

이미 '80년초에 파탄에 빠지고 '89년 大變革過程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정도의 상당한 住民들의 反抗과 體制의 動搖가 있었을 것으로 봄.

- 그러나 西獨側은 당시의 國際情勢가 美·蘇間의 對立이 激化되는 新冷戰 秩序下에 있었기 때문에 經濟支援을 통해 우선 東獨體制를 安定化 시키는 쪽으로 對東獨 政策을 推進했었음.

- 이러한 對東獨政策 推進에 있어서 前 바이에른 州知事 Strauss(CSU)와 東獨側의 Schlack가 큰 役割을 했으며, 이 두사람간에 오고간 去來와 對話가 問題되어 統獨以後 國家謀反罪 등의 嫌疑로 이 두사람에 대한 調査가 進行中임.

- Guenter Mittag은 또한 西方과의 協力問題에 있어서 늘 安保政策 우선을 強調하며 제동을 걸었던 政治局內의 強硬派인 Stoph, Mielke, Krolikowski 등이 舊東獨 經濟가 西方의 도움으로 改革될 수 있는 可能性을 遮斷하여, 東獨經濟를 破綻으로 몰고간 張本人들이라고 주장함.

## '91 秋季 經濟展望 報告書

- 舊 東獨地域의 經濟는 沈滯局面을 벗어나 점차 回復段階에 들어서고 있음.
- '91 舊 東獨地域 平均 經濟成長率 (GDP基準) -22.5% 기록, '92에는 +10% 豫想
- '91 舊 西獨地域 平均 經濟成長率 +3.5%, '92에는 +2.0% 豫想

(%)

구 분	'90	'91			'92		
		전반기	하반기	평 균	전반기	하반기	평 균
구서독지역	4.7	4.5	2.5	3.5	1.5	2.5	2.0
구동독지역	-14	-33.3	-8.5	-22.5	8.5	11.5	10

- 失業者는 舊 東獨地域 經濟構造上 여전히 과도한 隱蔽 失業이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構造 改編過程에서도 계속 增加될 展望.
- 短縮 勤勞者를 除外한 失業者만 舊 東獨地域의 경우 '91에는 95만, '92에는 140만에 달할 것임
- 舊 西獨地域은 '90의 188만에서 '91, '92 각각 170만으로 減少됨.

(만 명)

구 분	'90	'91	'92
구 서독지역	188	170	170
구 동독지역	24	95	140
총 계	212	265	310

- 統獨費用과 관련해서는 '92年度 1,600억 DM이 舊 西獨 地域으로부터 舊 東獨地域으로 移轉 支出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舊 西獨地域에서는 負擔의 配分을 둘러싼 論爭이 계속될 것으로 展望함.
- 同 研究機關 展望報告書에서 가장 우려를 表示한 部分은 生産性에 맞지 않은 勞組側의 賃金引上 要求로 나타남.
  - 勞組側의 舊 西獨 水準으로의 急激한 賃金引上 要求는 賃金引上에 따른 價格引上, 競爭力 脆弱에 따른 舊 東獨企業에 대한 國家支援 增大 등 惡循環을 일으켜, 健全하며 生産性 있는 産業構造 定着을 沮害할 것으로 봄.
  - '92의 賃金引上率은 最大 5%이내에서 抑制해야 하며, 4%가 가장 適切하다고 展望함.
  - 현재 賃金協商 締結로 '91에는 16%, '92에는 36%의 總額賃金引上이 豫想됨.
  - 舊 東獨人들의 實質所得은 이로 말미암아 統獨以前에 비해 '92에는 25%가 上昇할 것으로 나타남.
- '92의 인플레이率은 4.5 - 5%에 이를 것으로 展望함.



# 〈軍事分野〉



## 東·西獨間 軍隊統合에 따른 諸問題

### I . 東部司令部

- '90.10.3 統獨과 더불어 聯邦國防省은 舊東獨人民軍의 指揮權과 兵力, 裝備 등 모든 것을 引受하기 위해 東部司令部(Das Bundeswehrkommando Ost)를 設置하여 '91.6.30까지 9개월동안 統獨에 따른 軍事統合問題를 관장케 하였으며, '91.7.1부로 東部司令部를 解體시킨데 이어 解雇되지 않고 殘留하게 되는 兵力은 各軍 예하에 所屬시켰음.

### II . 東·西獨間 軍隊統合에 따른 諸問題

#### 1 . 人員選拔과 減縮에 따른 問題

- 舊東獨人民軍의 獨逸聯邦軍 統合에 따른 가장 큰 問題點은 人員 選拔과 減縮(解雇)에 따른 問題임.
  - 現在 統獨에 따른 國際的인 諸條約에 따라 獨逸聯邦軍은 65만 (舊東獨人民軍 包含)에서 '94년까지 37만으로 減縮하기로 되어 있음.
  - 減軍은 退職에 따른 社會福祉, 財政問題 뿐만 아니라 退職後의 社會的 適應, 새로운 職業選擇의 問題를 안고 있음.

— 舊東獨 人民軍中 優秀한 人力을 吸收하기 위한 人力 審査·選拔問題는 아주 短期間에 이루어졌으나, 2年동안의 試補期間(Probeit)을 設定, 일단 選別된 者들을 時限附 軍人(Soldat auf Zeit)으로 勤務케 한 뒤, 最終적으로 正式軍人으로 採用할 計劃임.

- 舊東獨人民軍 總 9萬名중 5萬名을 일단 引受했는데 그중 15,000 - 17,000명이 將校와 下士官임
- 舊東獨人民軍의 特徵은 將校는 많은데 有能한 下士官이 不足하다는 것임.

## 2. 共同體 意識化의 問題

○ 과거 서로를 敵으로 간주하던 分斷狀態의 意識을 克服하고 統合軍으로서의 共同體意識을 갖도록 하는 問題도 있음.

- 舊東獨人民軍中 50歲以上과 大領以上의 現役들은 모두 轉役시켰기 때문에 舊體制와 관련된 主要 權力基盤은 除去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500여명의 西獨軍 將校들이 東獨地域에 派遣되어 舊東獨人民軍을 큰 問題없이 指揮하고 있으나, 勤務環境, 報酬, 生活方式 등에서 差異가 常存하고 있어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님.

- 殘留 舊東獨人民軍들중 5천명의 將校와 3천명의 下士官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體制下의 民主軍隊에 적응하도록 2주에 걸친 教育課程을 이미 履修케 하였음 .

### 3. 東·西 俸給體系 相異에 따른 問題

- 그러나 俸給體系가 다르고, 舊東獨地域의 勤務環境이 劣惡하여 東·西獨軍間에 갈등이 存在함 .
- 軍人도 公職者와 마찬가지로 西獨水準의 60%에 해당하는 俸給(점차 生産性의 向上에 따라 隔差를 줄여갈 計劃이지만)을 받고 있는 바, 職業軍人이 아닌 義務兵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隔差를 解消할 方針임 .
- 최근('91.1 - 5) 東部司令部에 接受된 1,600件的 訴願請求(Eingabe)중 700件이 俸給 差別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80件이 人間的인 差別待遇를 호소하고 있음 .
- 國防省이 算定한 바에 따르면 東·西獨 軍施設(특히 內務班, 衛生施設, 炊事場)의 隔差를 줄이는데 最小한 160억 DM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했는데, 現在 統獨以後 豫算中 國防費가 縮小되고 있기 때문에 隔差 解消에는 상당한 時日이 所要될 것 같음 .

#### 4. 東獨裝備 廢棄에 따른 問題

- 統獨과 함께 獨逸聯邦軍에 引受된 裝備와 탄약들은 減縮 廢棄될 豫定인데, 이에 相當한 費用이 所要될 것임 .
  - CFE 協定에 의거 戰車·戰鬪機, 大砲, 艦艇, 미사일 등 5大 武器體系에 대해서 NATO 16個 國이 각자 얼마만큼의 武器를 줄일 것인가가 決定되었는 바, 舊東獨人民軍의 裝備는 MIG-29기 (性能檢査에서 優秀한 비행기로 評價, 東獨人民軍이 相當한 附屬品 在庫量을 갖고 있어 10-15년 使用 決定)만을 除外한 거의 모든 裝備를 廢棄 또는 販賣할 計劃임 .
  - 裝備(彈藥 包含) 處理時 第3國에의 販賣問題는 現存 條約上 明示된 制限規定은 없으나, 가능한 限 NATO 會員國에 販賣할 豫定이며, 聯邦 安保理事會에서 每件別로 可否를 決定할 豫定 임 .
  - 舊東獨人民軍이 保有하고 있던 彈藥 30만톤의 處理가 가장 많은 費用과 期間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되는데, 彈藥 廢棄에 10-15년이 所要될 것으로 專門家들은 推定하고 있으며, 그 費用은 算定조차 못하고 있음 .

- 탱크 1대를 廢棄하는데 平均 10만 DM의 費用이 들며, 약 2800대를 廢棄해야 하므로 그 費用만 2억 8천만 DM에 이를 것으로 推定됨.

## 5. 東獨駐屯 蘇聯軍 撤收에 따른 問題

- 舊東獨駐屯 蘇聯軍은 '94年末까지 漸進적으로 撤收할 計劃임.

- 統獨當時 蘇聯人은 軍人 34萬名과 民間人 21만 등 총 55만명이었으며, 蘇聯軍이 占領하고 있던 兵營·訓練場 등의 不動產 價値는 1000억 DM으로 推定되고 있음.

- '94까지 매년 4-5個 師團이 撤收할 計劃이며, 약 4000基에 달하는 各種 武器도 이에 包含되어 있음.

- 殘留 蘇聯軍의 脫營問題가 深刻하게 提起되고 있는 바, 蘇聯軍隊의 紀綱解弛와 獨逸의 經濟·社會的 매력 때문에 歸鄉을 拒否하고 현재도 250명의 蘇聯軍이 政治的 亡命을 要請하고 있음

### Ⅲ. 東獨軍 所有 軍事機密 引受

○ 統獨과 더불어 東獨人民軍이 保有하고 있던 軍事機密 書類 2만 6천건이 獨逸聯邦軍에 의해 引受되었는데 多數의 마르샤바條約機構 軍事活動에 관한 書類가 包含되어 있음.

— 上記 資料中 '89 가을 東獨에서 대규모 示威가 일어났을 때 東獨 軍人들에게 國民들을 향해 銃器를 使用하라는 指示命令 書類는 發見되지 않았음.

# 〈司法・法律分野〉



## Staasi 文書 閱覽 法律制定

- o 과거 Stasi가 작성.보관하고 있던 각 개인에 대한 정보기록문서를 포함한 구동독 국가보위부 (Mfs) 소유 문서취급규정에 대한 새로운 법률안이 금년도 말까지, 빠르면 금년 여름휴가가 이전에 독일 연방하원을 통과예정으로 연방내무성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중임.
  - 과거 Stasi는 구동독 억압체제의 상징이었기에, 수백만에 달하는 동.서독 주민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탐보고서가 공개되고 악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과거 전력이 밝혀짐에 따라 법치국가적 질서가 확립이 안된 동독지역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마치 판도라는 상자와도 같은 이문서의 취급과 처리에 신중을 기해왔음.
  - 연방정부는 통합조약에 따라 Stasi문서 취급에 관한 연방정부 특별전권 위임자인 Gauck으로 하여금 '901.12.18 "Stasi 문서 임시이용규정"을 만들어 관련문서의 처리. 이용.보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관련사항 통독관련 자료로 기보고 : 분류번호 100-66)
  - 구동독 국가보위부 소장서류와 자료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안 (Gesetz ueber die Sanierung und Nutzung der Unterlagen und Daten des Mfs : 약칭 Stasi 문서법)의 초안은 각 정당 원내교섭 단체가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과거정산문제와 관련 피해자측에 속한 민권운동단체 등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연방내무성 주도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 그러나 과거 동독공산당의 후신인 PDS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기로 함.
- o 법률토론과정을 거의 주도하게 될 내무성의 준비초안 내용에 의하면 자료수집, 자료해명, 자료관리, 자료사용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의거하고 있음.

- 개인으로 하여금 그의 인권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것.
  -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상에 관해 기술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것.
  - Mfs의 활동에 관한 역사적, 정치적, 법률적 평가를 촉진시킬것.
  - 법집행기관이나 기타 관계부처에 형사소추 등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복권, 사회 지도급인사 임명시 과거 권력 심사자료 등 특정목적으로 이용될 것.
- o Stasi 문서철(Akten)을 나란히 병열하면 장장 200 km나 되는데 현재 80 km 정도가 아직도 문서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을 정도로 조사가 안되었음.
- 이의 관리를 위해 독일연방 전담위원이 위촉될 계획인 바 정부로부터 임명될 것인지 하원으로부터 선출될지는 아직 미정임.
  - 또한 의원, 각주대표, 학자들로 구성될 자문위원회 구성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 최고기관이 연방전담위원에게 Stasi 문서 취급에 관해 자문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의 특별전권위임자인 Ganck도 연방정부에서 추천된 5명의 자문위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음.
  - Stasi 문서 연방전담위원은 여타한 공공기관이나 비공공기관일지라도 Stasi 서류철을 제출하도록 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인데 Stasi 문서는 Berlin의 중앙보관소와 신설 5개주의 주정부 보관소에 보관되도록 함.
- o 연방내무성은 합법적인 이용권자의 범위를 해당관계인, 비호자, 근무요원, 제3자와 같은 4대 집단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해당관계인"이라 함은 MfS에 의해 인적사항이 수집되었던 자인바 근무요원이나 비호자는 아니었던 자를 말하며

- "비호자"는 Stasi로부터 보호를 받았거나 지원을 받은자인바 근무요원은 아니었던 자이며
  - "근무요원"은 MfS에서 주업으로 근무했던 모든 사람을 비롯하여 비공식 요원으로서 인적사항과 관련되는 자료를 공급한 자이며
  - "제3자"는 서류철에 거론되어 있으나 "해당관계인"이 아닌 "모든 기타인"을 뜻한다고 함.
- o 이제까지의 Stasi 문서 임시이용규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Stasi의 모든 문서는 열람이 허용이 안되나, 복권 및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존하는 위해행위"에 대한 방어를 위해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국회의원, 판.검사, 공무원 등의 신규채용시 과거 전력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Stasi 문서 전권위임자 Gauck이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 새로운 법률안에 따르면 "해당 관계인"은 그에 관한 서류철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 관계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를 복사하여 발행도 가능하며 이와 같은 권한은 실종되었거나 사망한자의 가족에게도 있음.
  - 광범위한 정보 취득권(Auskunftsrecht) 및 정보 열람권(Einsichtsrecht)은 근무원에게도 적용되나 근무원이 자기가 작성한 보고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을것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음.
  - 비호자에게는 정보 열람권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합법적 과심사항"이 입증될때 자신에 관한 저장자료에 관한 정보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제3자 역시 서류철을 열람할수는 있으나 타인의 이름과 기재내용을 발설해서는 안되며 서류철상의 다른 관계인이나 제 3자에 관한 자료가 관계인에게 복사되어 발행된 것 역시 발설되어서는 안됨.
- o 국가정보기관이 Stasi 문서에 손을 댈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이 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장기간 토론의 대상이 될 것임.

- 내무성 초안에 따름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서류는 정보보호 측면에서 정보기관에게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문서(과거 Stasi의 테러조직과의 연계문제 등)에 대해서는 열람을 허용토록 하고 있음.
- 야당과 자민당은 헌법보호청 등 정보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Stasi 문서의 열람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첨부할 것으로 예상됨.

## 舊東獨 스파이 處罰과 關聯한 諸問題

### I. 前東獨 秘密情報部 局長 裁判과 關聯한 聯邦大法院 決定

#### 1. 決定 內容

- 聯邦大法院 (Bundesgerichtshof)은 '91.8.6 現在 Muenchen에서 進行中인 前東獨 秘密情報部 局長 Schuett裁判과 關聯하여, 現在 蘇聯에 避身中인 前東獨 秘密情報部 總責('87까지)인 Markus Wolf 를 證人으로 召喚키로 決定함.
- '89부터 Wolf에게는 拘束令狀이 發付되어 있는데 聯邦法務省과 聯邦大法院은 Wolf가 獨逸에 入國하더라도 令狀을 執行하지 않고 刑事訴訟法 295條에 의한 “ 刑事未決法の 治外法權的 保護 ” (Sicheres Geleit)規定을 適用하여, 1주일 동안 獨逸에 머무른후 蘇聯으로 돌아가는 것을 保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聯邦大法院은 過去 스파이 活動을 昭詳하게 證言해줄 總責任者가 蘇聯으로 避身해 있는 狀況에서 Wolf의 拘束이라는 法的 利益과, 現在 各州法院에서 進行中인 過去 東獨 스파이들에 대한 個別裁判의 圓滑한 進行이라는 法的 利益 사이에서 高심한 結果 일단 後者를 택하기로 決定한 것임.

## 2. 決定背景

○ 이러한 決定은 舊東獨 스파이 處罰이라는 同一한 刑事事件에 대해 個別 州法院의 判決과 聯邦大法院의 解釋이 각각 달라, 舊體制 清算問題中 爭點으로 떠오르고 있는 舊東獨 스파이 處罰問題에 대한 聯邦憲法裁判所의 最終 判決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짐.

— '91. 7. 30 베를린 州法院(Kammergericht Berlin)은 起訴된 舊東獨 스파이總責(Wolf후임)이었던 Werner Grossmann과 그 側近 4명에 대한 裁判에서 이들에 대한 處罰은 憲法에 違背된다고 判示하고 憲法裁判所에 이에 대한 最終 決定을 委任했음.

· 베를린 州法院 判事들의 見解에 의하면 過去 東獨에서 活動한 西獨側의 스파이들은 刑事處罰되지 않고, 西獨側에서 活動한 東獨의 스파이들만 處罰한다는 것은 基本法(憲法)3條의 平等原則에 違背된다고 보고, 過去 東獨의 秘密諜報要員들의 活動은 西獨의 秘密諜報要員들의 活動과 결코 다를 바 없었다고 判示함.

- 이러한 決定과 關聯하여, '91. 5 聯邦大法院 (Bundesgerichtshof)은 Muenchen法院에서 進行中인 Schuett에 대한 同一한 性質의 刑事 事件임에도 이와 反對되게 處罰해야 한다는 相衝된 決定을 내린 바 있음.

## II . 舊東獨 스파이 處罰과 關聯한 相反된 立場

### 1. 處罰主張 立場

- o 베를린 州法院의 決定과 聯邦大法院 決定의 相衝 問題는 最終적으로 聯邦憲法裁判所가 法的인 立場을 確定하겠지만, 現在 5,000名으로 推定(聯邦大 檢察總長 Stahl)되는 過去 東獨스파이들의 去就 問題는, 批判이 擡頭되고 있는 過去清算 不撤去 問題와 關聯 論難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聯邦法務省과 聯邦大檢 등 이들 處罰을 主張 하는 側은 過去 東獨스파이들은 舊東獨共產黨 政權의 下手人들로서 秘密諜報活動을 通해 反 法治國家的인 體制를 守護하려 했으므로, 베를 린 州法院이 主張하듯, 이들에 대한 處罰이 基本法에 결코 違背되는 것은 아니라고 主張함

形式的으로는 같은 스파이活動이었지만 統一된 獨逸聯邦共和國이 過去 西獨의 正體性 (Identitaet)을 그대로 承繼하고 있는 點을 勘案하여

西獨의 스파이들은 西獨政府의 庇護하에 이러한 活動을 한 반면, 東獨의 스파이들은 당시 西獨에 대해 西獨의 內的·外的인 安保를 해할 目的으로 具體的인 危害行爲를 저질렀으며,

오늘날까지도 正確히 證據가 確保된 것은 아니지만 過去 많은 스파이들이 당시 西獨과 西유럽에 대한 秘密情報와 情報員들을 이전 東歐圈 國家(Ost Block)에 넘김으로써 國益을 損傷시켰으므로 당연히 이들은 處罰해야 한다고 主張함.

또한 最近 밝혀진 過去 東獨人民軍의 秘密文書 (聯邦獨逸軍 保管)에 의하면 東獨軍 作戰이 攻擊的으로 遂行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過去 西獨體制 安保危害行爲에 대해 過去 東獨의 스파이들이 커다란 寄與를 한 만큼, “ 攻擊的인 ” (offensiv)東獨스파이 活動과, “ 防禦的인 ” (defensiv) 西獨스파이 (BND) 活動은 區分되어야 한다고 主張함.

## 2. 處罰反對 立場

○ 반면 이들에 대한 辯護士와 베를린 州法院의 決定을 擁護하는 사람들은 刑法을 통해 결코 “ 좋은” (gute) 西獨스파이, “ 나쁜” (boese) 東獨스파이 식으로 區分하여 處罰할 수는 없다고 主張하며, 東獨의 스파이들은 法庭에 세우고, 西獨의 스파이들은 “ 統一祖國” 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 치켜세우는 것은 “ 勝者の 편에 서는 司法府” (Sieger-justiz)라는 非難을 면키 어렵다고 主張함.

— 스파이 活動은 雙方國家間 活動으로 오래전부터 通用되던 慣行이었으며, '72 東·西獨 基本條約 以後부터는 東獨의 國家性이 廣範圍하게 國際的으로 認定되었음을 勘案하면, 統獨이란 特殊한 狀況이지만 過去 東獨의 法에 의하면 이들이 결코 處罰될 수 없었으므로, 過去行爲에 대해 西獨法을 適用 이를 遡及해서 處罰하는 것은 基本法 3條의 平等權 條項에 어긋난다고 主張함. (美大統領 Bush도 過去 CIA局長이었고, 現獨逸法務長官 Kinkel도 過去 西獨情報部 部長이었음을 想起시키며 서로 立場이 달라졌을 때를 假定해 보면 處罰主張은 勝者の 論理라고 反駁함.)

- 또한 國際法的으로 널리 通用되고 있는 1907년에 制定된 國家間 戰爭에 관한 헤이그 條約(Haager Landkriegeordnung) 31條에 의하면, “ 戰爭中 스파이活動을 하다가 붙잡힌 경우 敵國에 의해 戰爭捕虜로 看做되므로 一般刑事處罰의 對象이 될 수 없다” 는 것이 辯護人側의 論旨임.

## II. 本件에 관한 輿論

- o 그러나 東獨의 政權이 무너졌고, 그것도 自體 住民들의 共產政權에 대한 抵抗을 통해 國家가 崩壞되고 西獨의 法的인 秩序에 一方的으로 編入이 된 만큼, 過去 東獨이 反法治國家的 秩序下的 國家(Unrechtstaat)라고 規定지을 수 있는 充分한 理由는 있으며, 이에 따라 法治國家와 反法治國家를 위해 행한 스파이活動도 區分되어 處罰되어야 한다는 것이 東獨 대다수 住民들의 過去 Stasi 등 共產獨裁 蠻行도 經驗했고 철저한 過去 清算을 바라는 情緒에 가깝다고 보여짐.

— 특히 過去 東獨住民에 대한 政治的인 彈壓機構의 代名詞처럼 되어 있는 Stasi 機構內에 所屬되었던 秘密情報部 要員들의 活動에 대해서, 法的인 側面에서의 適用 및 解釋上의 問題와 관계없이 過去 被害者를 포함한 대다수 東獨住民들이 “ 똑같은 일을 한 ” (arbeiten Hand in Hand) 사람들로 取扱하고 있는 만큼, 政治的인 側面에서 보면 處罰은 不可避한 것 같음 .

· 統獨前 統合條約 協商時 이들 스파이에 대한 赦免考慮 規定 插入與否가 論難이 되다가, 輿論의 反撥에 부딪혀 撤回되고 處罰하기로 方針을 定했었음 .

— 一般國民들은 納得할 수 없는 方法으로 蘇聯으로부터 1주일동안 獨逸을 訪問하게 되는 前 東獨 스파이 總責 Wolf는 過去 自己部下들을 積極的으로 辯護하며 過去 스파이行爲의 “ 雙罰性 ” 을 強調하겠지만, 現 獨逸內 司法府의 多數說은 反法治國家를 守護하기 위한 “ 合法的인 不法行爲 ” (gesetzliches Unrecht)에 대해서는 어떤 形式으로든지 現 法治國家 秩序下에서 處罰되어야 한다는 立場임 .

· 따라서 많은 法學者들은 일단 刑事處罰은 하되, 刑을 半減시키는 赦免(Amnestie)의 方法도 考慮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 .

I. 基本法에 따른 判事의 地位

- 西獨은 1945年以後 나치스政權에 의해 폐지되었던 法官 獨立性의 復活을 통해 法治主義國家의 基本原則인 三權分立의 原則을 確立하였는 바, 基本法 제9장에 이에 해당하는 廣範한 內容을 規定하고 있다.
  - 이와 같은 背景下에 法官職을 遂行하는 자는 專門知識은 물론 人格的인 面에서 特別要件을 갖추고 責任感이 있어야 한다는 結論이 導出된다
  - 따라서 法官은 精通한 專門知識을 갖고 있는 엘리트로서 人格이 高邁해야 하며, 合法性을 쟁취하려는 市民의 마지막 保護者라는 使命感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하며, 體制에 順應하는 機會主義者여서는 안된다.
- 이에 반해 東獨政權은 司法權의 獨立을 無視했는 바, 法官들은 體制에 예속된 指導層으로서 SED라는 國家政黨의 一般路線을 偏頗的으로 盲從하였고, 黨의 “階級認識 觀點”에 유리하게 法律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西獨의 法律秩序 및 法律認識과는 正反對되는 것이었다.

## II . SED의 統治機構로서의 社會主義的 法律行政

- Lenin은 市民社會的 法院機構를 破壞하고 새로운 社會主義的 法院으로 代替하는 것이 “ 프롤레타리아革命의 絶對的 義務” 라고 표현하였다 .
- 그에 부응하여 東獨에서는 法治主義國家에 대한 思想은 물론 自由民主主義國家의 相互 牽制 및 均衡을 維持시키는 裝置로서 獨自적이고 不偏不黨한 立·法·行政·司法의 三權分立의 原則이 廢止되었다 .
- 結果的으로 東獨의 司法府는 마르크스 레닌主義 幹部政黨인 SED의 主導權下에 있었으며, 司法府가 行위를 하기 위해 絶對적으로 필요한 基本原則은 SED가 決定하며, 司法府內의 黨組織은, 法律行政機關이 黨의 決定事項을 法律行政에서도 實現할 수 있게 되도록 監督을 했다 .
- 그리하여 法治主義國家라는 本質에 根本적으로 門外漢인 指導層이 大法院은 물론 法務部에서조차 法律行政을 遂行했던 바, 이들 SED 追從者들에 의해 決定된 原則들이 모든 法院에게 “ 가장 效率的인 指針이요 法律規範의 올바른 政治的 適用” 으로서 公布되었다 .

### Ⅲ. 東獨의 法律行政에 있어서의 SED의 幹部充員政策

- 國家機關을 비롯하여 法律行政에 있어서의 SED 政策의 核心은 幹部充員政策이었다.

“(黨)幹部가 모든 것을 決定한다”라고 스탈린은 누누히 力說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리되었다.

Stalin에 따르면, 幹部는 우선 勞動者階級の 政策을 파악해야 하며, 이와 같은 政策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 正確하게 實現할 能力과 態勢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結果 幹部業務는 組織的, 技術的 手段의 適用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黨의 主導權 確保를 위한 政策的·組織的 手段이었다.

- 法院分野 幹部政策의 組織은 東獨 法務部가 관할하였으며, 檢事는 東獨의 大檢察廳이 관할하였다. 判事나 檢事の 採用은 물론 法律學 專攻 大學生 選拔을 위한 엄격한 計劃이 確立되어 있었다.

法務部가 幹部業務 遂行上 充足해야 할 階級的 任務는 司法幹部의 65%가 勞動者階級 出身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法學志望 大學生으로 하여금 大學에 入學하려면 大學卒業前에 工場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女性分布 역시 幹部政策의 特徵이었다. 地區法院 및 郡法院의 女性分布는 55%였으며, 幹部級의 女性分布는 약 30%나 되었다. 많은 女判事와 女檢事들이 妊産婦 保護施策으로 缺勤이 잦아지자 女性人力 增員을 위해 法科大學生 選拔時 男女比率이 3:1에서 後에 2:1로 변경되었다.

#### IV. 東獨에 있어서 法曹人의 教育

- 東獨의 判事와 檢事 教育과 관련하여 大學의 法律學은 소위 社會主義的 單一教育體制와 직접 關聯이 있었다. 1968年度 社會主義 教育改革과 함께 大學의 法律學 研究는 社會主義的 法曹人을 養成할 任務가 부여된 뒤 勞動者階級の 階級的 觀點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 政權의 幹部政策의 對象이 되도록 하였다.

法曹人의 “階級的 教育의 目標”는 判事, 檢事, 國家公證人에 있어서 특히 다음과 같은 特性이 教育을 통해 習得되도록 指示하고 있다.

(當時 法務部長官 Kurt Wuensche)

- 獨逸民主主義共和國에 대한 忠誠과 勞動者·農民 權力의 완벽한 強化를 위해 모든 能力과 全力을 動員할 것.
-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확고한 社會主義 原則 遵守 및 政治的 信賴性 維持

- 社會主義 建設에 主張을 초래하는 모든 現象에 대하여 非妥協的 姿勢 堅持
  - 勤勞者와 긴밀한 관계 維持, 그들의 經驗을 이용하여 社會主義的 集團主義의 促進 및 開發
  - 社會主義的 10大 道德律에 立脚하여 社會生活과 政治活動에 있어서 뚜렷한 個性과 模範的 行動
- 大學教育은 基礎專攻과 專門專攻으로 分類되었으며, 4年間의 專攻後 Diplom 學位가 수여되었다. 70년초 이래 東獨의 法律行政의 專攻內容은 다음과 같다.

一 基礎專攻

- 마르크스 레닌主義 哲學
-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政治經濟學, 東獨 社會主義의 經濟制度
- 獨逸 勞動運動史, 現代 勞動者階級의 歷史的 任務와 黨의 主導的 役割

二 專門專攻

- 刑法 및 刑事訴訟法
  - 民法 및 民事訴訟法
  - 家族法
  - 勞動法
  - 農業生産組合(LPG)法
  - 土地 및 公證人法
- 및 其他科目에 관한 基礎知識

- 이와 같은 大學教育의 內容과 水準은 西獨의 法律學 專攻教育과는 全然 比較할 수 없는 것이었다. 決定的인 差異點은 專攻內容에서 뿐만 아니라 法律學的인 研究水準이나, 學術書籍의 出版量, 그리고 시험의 수준에 있었다. 司法官 試補에 비교될 만한 實務訓練과 卒業試驗인 第2次 考試와 같은 것이 東獨에는 없었다. 단지 지난 數年間 判事나 檢事로서 거쳐야 할 1년간의 實習期間이 고작이었다.

## V. 統合條約上의 判事와 檢事に 관한 審査節次

### 1. 統合條約上의 審査節次

- 東獨 法曹人들은 全然 다른 法律文化속에 있었으며, SED의 道具化를 면치 못했는 바, 黨派的인 判決을 통한 容疑者와 被告人에 대한 裁判節次上의 權利 剝奪 등으로 被害를 입은 東獨住民들은 쉽게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民主主義的 法治主義國家에서는 基本法上의 法治國家의 基本價値를 守護할 수 있는 사람만이 判事나 檢事로서 계속 勤務할 수 있기 때문에 統合條約은 法官으로 계속 勤務할 수 있는 東獨法曹人에 대해 法官選拔委員會를 통한 審査節次를 規定하고 있다.

東獨判事 中 審査後 選拔된 者는 우선 新設 5個州에서 試補判事 또는 時限附判事로서 勤務하게 되며, 최소 3年, 最長 5年間의 勤務以後 終身判事로서 任命될 수 있다.

- 統合條約에 따르면 判事選拔委員會 活動 및 檢事 再任用 審査를 1991년 4월 15일까지 完了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期限 遵守는 審査가 실제 進行되면서 實現不可能한 것으로 立證되었다. 왜냐하면 審査받아야 할 判·檢事들이 審査委員會 委員으로 選出되었었기 때문이다.

## 2. 各州의 法曹人 審査 實態

- 1990년 2월 Modrow 政府는 東獨政權의 判事와 檢事에게 政治的 부담이 될만한 經歷을 제거하고, 그들의 幹部書類를 좋게 고칠 수 있도록 措置하였는데, 이것이 또 다른 問題點으로 登場하였다. 判事와 檢事에게 송부된 幹部書類中 일부는 履歷書마저 없어져 버렸으며, 대다수의 書類는 1990年以後의 經歷만 記錄되어 있었다.
- 또한 聯邦 構造로 인하여 新設 5個 各州는 判事 選拔과 檢事任用을 위한 自體 檢討基準 設定時 相異한 基準을 設定하여 問題點이 發生하였다.

公開輿論에서 各 州間의 合意點 摸索이 强요되었지만, 오늘날까지 達成되지 못하고 있다.

“出身地域 恩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한 州에서 시험에 合格한 자가 다른 州에서는 엄격한 要求條件때문에 不合格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反對現象도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한다.

### 3. 작센州의 判事 選拔 및 檢事 任用基準

- 檢討가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Sachsen州의 判事 選拔 및 檢事任用委員會 委員長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問項에 기준하고 있다.
  - 申請者가 과거의 經歷에 비추어 市民들로부터 法治主義國家的 司法府 代表로서 信賴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
  - 申請者가 任用될 경우, 獨逸聯邦共和國의 價値體系와 法律秩序로부터 導出되는 精神과 法律條文에 忠誠할 것인지 여부
- 各 志望者들로부터 上記와 같은 주된 質問에 대한 答辯이 個別的으로 聽取되며, 特定 判斷基準에 의한 複合問項은 設定되지 않았다.

## VI. 展 望

- 各 州 政府의 이와 같은 多樣性으로 인하여 審査 結果가 어떻게 나올지 事前豫測을 전연 할 수 없는 형편이다.

申請書가 600건이나 接受된 Sachsen州가 가장 빨리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즉 Sachsen州에서는 檢討者의 1/3이 不適格者로 判明되어 있으며, 2/3는 계속 任用의 肯定的 判斷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7월말 처음으로 完了된 追後 選拔結果는 50%에 이르고 있음) 東獨法官中 90%가 심사에서 不合格할 것이라는 90年末 91年初에 행한 聯邦 法務部의 國務次官의 發言을 고려한다면(舊東獨 出身法官으로 구성된) 選拔委員會가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격하지 않게 처리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 이와 같은 추세는 新設 5個州에 대하여 과거 SED 政權下에서 그 시녀와 다름없던 法曹人들에 의해 대부분의 判決이 또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은 곧 Sachsen州의 Heitmann 法務長官이 말한 것 처럼 “ 평화스럽게 進行된 革命의 裏面 ” 이라고 하겠다.

- 나치스體制가 崩壞된 以後와 比較해 보면 1945年 직후 나치스 黨員이었던 判事와 檢事는 모두 公職으로부터 파면되었다가 일단 脫나치스化가 遂行된 이후 다시금 判事나 檢事로 採用되었다. 이에 대해 西獨의 各界 各層은 西獨司法府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했으나, SED政權이 崩壞된 오늘날, 당시의 실정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批判을 했던 者들이 沈默을 固守하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나치스가 아니라 共產主義者들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이 이와 같은 問題點을 “나치스法官의 컴백”에 반대했던 것과는 무엇인가 다르다고 認識했기 때문인가?

이와 같은 나치스法官의 복귀는 基本法上的의 司法體系 確立을 위한 적지않은 擔保였으며,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擔保와 또 다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나치스와 비슷한 方法으로 SED시스템도 1989년에 敗亡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치스體制가 根本적으로 否定되었기 때문에 脫나치化 以後 再任用된 判事와 檢事中 비록 나치스黨員이었던 者들도 民主的 法治主義國家의 改善에 忠誠을 다 했다. 그러나 SED는 비록 後繼政黨形式이지만 금지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 살아있다.

- PDS라 改名한 후 거대한 財産을 계속 維持하면서 聯邦政府가 政黨과 議員에게 보장하는 特惠를 누리고 있다. 再任用되는 判事나 檢事は 스스로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基本法이 提示하는 外觀上의 法官 職責에 맞는 自由民主主義的 基本秩序를 內的으로 確信化 해야 한다. 이와 같은 過去의 清算과 未來에 대한 方向設定에는 政治教育의 役割이 중요하다.
- 또한 專門性的의 提高에 있어서도 할일이 많이 있다. 舊東獨地域 出身 判事들이라 할지라도 3流 判事로 보아서는 안될 사람도 있기는 하나 統合條約 規定은 專門的인 職能이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幻想을 現實로 만드는 것이 將來의 任務이다.

東獨의 法律體系와 西獨의 法律文化間의 差異가 얼마나 컸었던가를 考慮할 때, 新設 5個州에 있어서 法治國家的인 司法體系 確立은 아직도 많은 時間을 要하고 있다.

# 過去 兩獨間 基本條約 (Grundlagenvertrag) 締結에 대한 立場

## 1. 憲法裁判所의 判決

- '72.12.21 東·西獨 實務協商代表(西: Bahr, 東: Kohl)間에 署名된 兩獨間 基本條約은 締結當時 條約內容이 基本法의 統一命題 條項에 違背되지 않느냐는 論難이 많았지만, 聯邦憲法裁判所가 '73.7.31 最終 合憲判決을 내림으로써 統一直前까지 兩獨間의 基本關係를 設定한 章典으로서 그 效力을 발함.
  - 憲法裁判所는 “ 基本條約이 平和의 保障과 分斷 苦痛 緩和를 통한 人道的인 側面에서 全民族의 利害를 考慮하고 있으므로 基本法 前文에 規定된 再統一命題(Wiedervereinigungsgebot)에 違背되는 것은 아니며, 이 條約에도 不拘하고 獨逸民族의 單一性和 單一獨逸國籍은 固守되며, 東獨은 國際法上으로 認定되지 않으므로” 合憲이라고 判決했음.
  - 또한 再統一은 憲法上의 義務命題이므로 “ 自由下의 再統一”(Wiedervereinigung in Freiheit)에 反하는 그 어떤 法律的·實質的 措置들일지라도 違憲이며, 聯邦과 州政府 등 모든 國家機關은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拘束됨을 재차 強調함.
  - 憲法裁判所는 基本條約이 “ 一種의 國際法的인 條約”(Seiner Art nach ein voelkerrechtlicher Vertrag) 이면서도, 條約 內容上으로는 兩獨間의 關係(inter-se-Beziehungen)만을 規定하는 “ 二重的인 性格”(Doppelcharakter)을 갖고 있다고 判示함.

## 2. 基本條約 締結에 대한 兩獨政府의 基本立場

### 가. 西獨政府의 立場

- 基本條約은 分斷苦痛을 緩和하고 窮極的으로 民族的인 同質性을 維持하기 위해 東獨側과 더 많은 協商을 벌이고 協定을 締結하기 위한 하나의 道具(instrument)임. 따라서 基本條約은 暫定性(Modus vivendi)을 갖음.
- 基本條約 文案에 대한 서로 다른 解釋과 立場에도 不拘하고 兩獨間의 問題를 協商과 協定 締結을 통해 漸進的으로 解決해 나가도록 法制化 한다는데 意義가 있음.
- “獨逸問題”는 이 條約에도 不拘하고 완전히 解決된 것이 아니고 將來에 政治的·法律的으로 다시 解決되어야 할 問題임. (“ Die deutsche Frage bleibt offen” )
- 이 條約을 통해 國際的 緊張緩和와 國家間 協力에 이바지함.
- 이 條約에서는 財產權과 國籍問題는 規定對象으로 삼지 않음.
- 이 條約은 “ 4대 協定”을 補完하여 베를린의 恒久的인 生存을 保障하는데 기여해야 함.

## 나. 東獨政府의 立場

- 이 條約을 통해 東·西獨關係가 “ 正常化 ” 되고 “ 平和共存 ” (friedliche Koexistenz) 關係가 成立됨 .
- 이 條約은 “ 國際法的으로 有效하며 ” (voelkerrechtlich gueltig) 따라서 東獨이란 國家의 主權性을 완전히 認定하는 것임 .
- 이 條約 締結은 外國으로부터의 東獨에 대한 國際的인 承認과 國際機構 및 協約締結에 東獨이 廣範圍하게 參與할 수 있는 중요한 契機가 됨 .
- 이 條約 締結은 冷戰期間 동안 東獨을 外交的으로 孤立시키고, 差別하던 西獨의 對外政策(할슈타인 독트린)의 一大 變換을 意味함 .
- 이 條約은 東獨의 西베를린에 대한 關係를 正常化시키는 중요한 契機임 .

## 다. 兩獨의 各 條項別 強調點과 解釋上의 差異點

- 上記의 基本立場을 바탕으로 兩獨政府는 總 10條로 되어 있는 基本條約의 具體的인 文案을 作成함에 있어 서로의 立場을 折衷式으로 表現했으나 各 條項別 強調點과 各 條項에 대한 解釋은 統一前까지 各各 달랐음.
  - 우선 兩側은 基本條約의 前文에 “ 民族問題를 包含한 根本的인 問題에 대한 相異한 見解에도 不拘하고 兩獨 國家·國民의 福利增進과 協力을 위한 前提條件을 創出하기 위해” 이 條約을 締結한다고 밝혔음.
  - 條約의 第1條, 第7條, 第8條의 文案作成에는 西獨側의 立場이 관철되었음.
    - 兩獨間의 關係를 東獨側은 國際法的으로 認定된 外國과의 關係로 設定하자고 主張한 반면, 西獨側은 民族内部의 特殊關係 (Beziehungen besonderer Art)로 主張했는 바 이를 折衷하여 第1條에 “ 正常的 善隣關係” (normale gutnachbraliche Beziehungen)로 표기함.
    - 第7條에서는 이 條約을 基礎로 各 交流協力 分野에서 實質的이고 人道的인 諸問題를 規定하기 위해 諸協定을 締結해 나가도록 함.

- 第8條에서는 東獨側이 大使를 交換하자고 주장했으나, 內獨間의 特殊性을 勘案하여 常駐代表를 交換하기로 함.
- 反面 東獨側은 第2條, 第4條, 第6條에 큰 意味를 부여함.
- 第2條에서 兩國에 부여된 “ 모든 國家의 主權的 平等, 獨立, 自主性 및 領土保存의 尊重” 義務는, 西獨側이 東獨을 “ 國際法的인 主體” (Voelkerrechtssubjekt) 로 認定한 것으로 간주함.
  - 第4條의 “ 兩國家의 어느 한편도 다른 한편을 國際的으로 代表할 수 없다” 는 것은, 이제까지의 西獨의 單獨代表權 (Alleinvertretungsanspruch)을 拋棄한 것으로 간주함.
  - 第6條의 “ 兩國의 主權的 高權 (Hoheitsgewalt)은 각자의 領土에 한정되며, 兩國은 對內·外問題에 있어 각자의 獨立성과 自主성을 尊重한다” 는 東獨의 獨立國家성을 완전히 認定한 것으로 간주함.

※ 그러나 西獨은 第6條의 文案作成時 東獨側이 要求한 “ 認定” (anerkennen)이란 表現대신, “ 尊重” (respektieren)이란 意味가 모호한 表現으로 國家의 存在를 尊重하나 國際法的인 國家認定은 아니라는 基本立場을 관철시킴.

- 第3條(相互 武力使用 禁止, 相互 國境線 不可侵)
- 第5條(유럽의 安全에 기여하기 위해 軍縮支持)
- 第9條(既 締結된 兩國의 兩者間, 多者間 條約 不變) 등은 國際的 緊張緩和의 趨勢에 비추어 볼 때 兩國이 거의 異見이 없었음.

※ 第10條는 效力 發效에 관한 條項임.

### 3. 基本條約 締結의 裏面

- 基本條約을 통해 兩獨間의 關係는 正常化되고 國際的으로 公式化되었지만 그 以後에도 兩獨間 關係의 性格(國家間 平和共存이나, 民族内部의 特殊關係이나), 關係正常化의 目標(東獨은 自國의 獨自的인 國家性 認定쪽에, 西獨側은 條約의 道具的, 暫定的 性格을 強調하며 分斷苦痛 緩和를 통해 窮極的인 統一쪽에), “民族問題” 등에 있어서는 根本的인 立場差異를 보임.

#### 가. 民族問題에 대한 立場의 差異

- '74 유엔總會 演說에서 兩獨의 外務長官은 “民族問題”와 關聯하여 다음과 같은 相異한 立場을 表明함.

- 西獨外務長官 Genscher는 “ 우리側은 現 分斷 狀態를 民族問題 解決의 마지막 段階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獨逸民族에 의한 자유로운 自決權 行使를 통해 分斷國家는 再統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 하나의 獨逸民族에서 派生되는 兩獨間의 관계는 特殊關係(Beziehungen besonderer Art)라고” 재차 闡明함 .
- 이에 대해 東獨外務長官 Fischer는 “ 이러한 西獨側의 民族自決權 強調는 現 유럽의 狀態를 變更시키려는 위험한 發想” 이라고 警告하고 “ 이미 東獨의 國民들은 自決權 行使를 통해 社會主義 體制를 選擇했다” 고 主張하며, “ 오늘날 獨逸 땅에는 두개의 國家가 存在할 뿐만 아니라 2개의 民族, 즉 “ 社會主義的 民族”(sozialistische Nation)과 “ 資本主義的 民族”(kapitalistische Nation)이 存在한다라고 주장함 .
- 西獨은 브란트以後 “ 獨逸內에 相異한 社會體制를 가진 2個의 國家가 存在한다” 는 사실은 認定했으나(물론 國際法的인 認定은 아님), 東·西獨 國民은 하나의 民族으로서 看做한 반면, 東獨 指導部는 兩獨間 交流·協力이 進行됨에 따라 體制의 약화를 우려하며 철저한 對西獨 制限政策(Abgrenzungspolitik)의 一環으로, “ 2民族論”(zwei-Nationen-These)까지 主張하게 됨 .

- 東獨에서는 더이상 概念的으로 民族을 규정하는 要素가 人種的·言語的·歸屬的인 것이 아니라, 階級的 利害에 立脚한 經濟·社會的 土臺를 통해 새로운 “社會主義的 民族”이 탄생된다고 主張하였음. (理念擔當 政治局員이었던 Herman Axen 主張)

## 나. 國籍問題에 대한 立場의 差異

- 基本條約에 규정되지 않았던 財產權과 國籍問題中 財產權 問題는 兩獨間 서로 論議를 꺼려하다가 統獨直前 '90.6.15 兩獨間의 合意를 통해 以前 所有者에게 返還을 原則으로(統獨以後에는 投資가 返還에 우선되도록 法律이 變更됨) 解決되었으나, 國籍 問題는 基本條約以後 兩獨間의 20여년에 걸친 交流 協力期間동안 줄곧 爭點이 되어왔음.

- 西獨側은 國籍問題와 관련하여 基本法 第116條에 “1937年 12月 31日 現在(히틀러 第3帝國 登場以前) 獨逸帝國의 領土下에서의 獨逸의 國籍을 가졌던 者 또는 그의 配偶者, 卑屬”은 基本法에 規定된 “獨逸人”(Deutscher)으로서 獨逸國籍(deutsche Staatsangehoerigkeit)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는 西獨側이 分斷以前 獨逸民族의 正統性을 法的으로 繼承하고 있다는 立場을 闡명한 것이며, 따라서 東獨地域과 현재 폴란드·체코·蘇聯땅인 失地에 살고 있는 사람도 獨逸國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함.
  - 따라서 東獨에 살던 사람들(Uebersiedler)이나 폴란드·체코·蘇聯에 살던 사람들(Aussiedler)이 西獨으로 (基本法の 效力이 미치는 範圍內로) 移注·避難해 올 경우 다른 外國人에 要求되는 별도의 國籍取得 節次없이 西獨住民이 基本法上 갖는 모든 權利를 당연히 갖는 것으로 解釋했음.
- 東獨側은 서로 다른 2個의 國籍을 主張하며 '67.2 國籍法(Gesetz ueber die Staatsbuergerschaft)을 制定했고, 基本條約 締結以後에는 西獨側이 2個의 國家와 그에 따른 2個의 國籍을 明示的으로(ausdruecklich) 認定한 것으로 간주함.
  - 이러한 兩側의 國籍에 관한 相異한 立場은 兩獨間 交流協力 期間中 實務的으로 많은 問題를 불러일으켰음.

특히 兩國과 領事·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第3國에서 東獨住民이 西獨의 領事館이나 大使館(基本法の 效力이 미치는 곳)으로 避難하여 올 경우 이들을 獨逸國籍을 가진 者로 取扱하여 諸般保護를 提供해야 하는가 하는 問題가 提起됨.

東獨은 第3國과 領事關係에 관한 條約(Konsularvertrage)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최소한 西方國家에서는 西獨側의 立場이 관철됨.

東歐圈 國家에서는 東獨側의 立場이 관철되었고 東베를린의 西獨 常駐代表部에서는 東獨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領事業務는 보지 않았음.

# 東·西獨 常駐代表部 設置와 法的인 問題

## 1. 序 論

- 獨逸聯邦政府(이하 편의상 “西獨政府”)는 항상 內獨關係의 特殊한 性格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東·西獨 상호간의 代表部 設立 및 名稱附與에 관한 協商에 있어서도 內獨關係의 特殊性을 분명히 하려고 하였다.
- W.Brandt首相은 '70.5.21 Kassel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이하 편의상 東獨)閣僚評議會 議長 W. Stoph와 만났을 때 提示했던 『東·西獨間 對等한 關係를 規定하기 위한 基本原則 및 條約 構成內容』(소위 카셀 20개 조항)중 第19條項에 이미 兩國政府가 “長官級 特命全權委任者”를 任命할 것과 함께 “全權委任者를 위한 常駐勤務處”를 設置하는 內容이 包含되어 있었다.
- '72.12.21 基本條約 協商時 東·西獨 兩側은 基本條約 第8條에서 兩國政府 所在地에 각각 『常駐代表部』를 設置할 것에 合意하였다. 그 以來 東·西獨이라는 兩國關係의 法的 性格과 常駐代表部の 法的 性格 사이에 存在하는 聯關性은 늘 公開的으로 政治討論의 對象이 되어왔다.
- 西獨 憲法裁判所는 '73.7.31日 基本條約에 관한 判決에서 基本條約 第8條의 “兩國은 政府所在地에 각각 大使가 아니라 常駐代表를 交換한다”라는 規定을 兩國國家에 “法的인 立場에서 特殊한 性格을 認定하는 意見接近”으로 보았다.

西獨政府는 基本條約 第8條 第2項에 따른 協商에 있어서 代表部 設置와 連繫된 實質的 問題點 處理時 이와 같은 判決을 根據로 하려고 시도하였다.

- 常駐代表部 設置에 관한 議定書 및 附屬議定書는 '74. 3.14 署名되었는 바, 이는 '73.11.16 東獨 常駐代表部에 대한 便宜·特權·免除保障에 관한 法律制定을 통해 內獨間 前提條件이 造成됨으로써 可能하였던 것이다. '74.4.24 東獨 常駐代表部에 대한 便宜·特權·免除保障에 관한 施行令 制定으로 '73.11.16에 制定된 法律이 더욱 具體化되어 東獨 常駐代表部 勤務要員에 대한 特權·免除可能性의 範圍가 確定되었다.

## 2. 東獨 常駐代表部에 대한 便宜·特權·免除保障에 관한 法律

- '73.6.14 聯邦下院(Bundestag : 이하 便宜上 西獨下院)은 東獨 常駐代表部에 대한 便宜·特權·免除의 保障에 관한 法律을 議決하였다. 이에 聯邦評議會(Bundesrat: 以下 西獨上院)는 '73.7.6 同法을 批准하였다. '73.9.28 Berlin駐在 聯合國 占領軍 司令部가 同法에 대하여 見解를 表明하였으며, 드디어 '73.11.16 公布되기에 이르렀다.

○ 外交使節團과 그 職員에 대한 特權과 免除 賦與를 위해서는 正常的인 경우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 協約을 적용한다.  
그러나 西獨政府는 東獨과 眞正한 意味의 外交關係 樹立을 원치 않았다.  
따라서 비엔나 協約이 直接的으로 적용될 수는 없었으므로 東獨 常駐代表部에 대한 便宜·特權·免除 保障에 관한 法律 制定을 통한 새로운 法律的 根據가 造成되어야만 했다.

○ 이와 같은 意味上 法案上程에 대한 根據는 바로 同法이 西獨에 있는 外交使節團의 모든 外國人에게 주어져 있는 免除事案이 東獨 常駐代表部の 職員에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東獨側과 관련하여 볼 때, 獨逸內에 있는 東·西獨이라는 2개의 國家가 '61.4.18자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 協約의 締結國이라는 事實 自體만으로 兩國間에 비엔나 協約을 直接 적용해야 한다는 東獨의 要求는 根據가 미약하다.

○ 이와 같은 것을 時間的으로 볼 때, 유엔에의 加入文書 提出以前에 兩國은 外交使節團이 아니라 常駐代表部를 設置한다는 兩獨間의 合意가 이루어진 結果이기도 하다.

東·西獨 基本條約이 東獨의 비엔나 協約 加入文書の 提出以後에 비로소 東·西獨間에 그 效力을 발하게 되었다는 事實 하나만으로 東獨이 基本條約 協商 당시의

態도와 矛盾되게 비엔나協約의 直接 적용의 正當性 主張을 도출할 수 없는 것이었다.

基本條約 第10條에 따른 Note의 交換 및 그에 따른 이 基本條約의 兩國間 效力 發生은 東·西獨이 外交使節團을 交換하는 것이 아니라 常駐代表部를 設置한다는 相互間 合意를 原則으로 하면서 이룩될 수 있었던 것이다.

- 常駐代表部 設置는 비엔나協約이 意味하는 正常的 外交關係 樹立이 아니기 때문에 同 法律 第1條는 비엔나協約의 間接適用만을 용인하고 있을 뿐이다. 便宜·特權·免除保障과 같은 것은 “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에 따라 外交使節團과 그 職員에게 許容되는 정도로 保障될 수 있다” . 따라서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을 일반적으로 參照하는 대신, 同 協約의 特權·免除保障에 관한 規定만을 法案으로 受容해보려던 案은 '73.3.23 西獨上院을 통과할 수 없었다.
- 이와 같은 이유는 西獨上院이 東獨과의 外交關係 樹立은 전면 擧論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結果 西獨에 있는 外交使節團의 外國人 職員들에게 적용되는 特權·免除가 東獨 常駐代表部の 職員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東獨 常駐代表部の 法的 地位는 外交關係 또는 外國代表部라는 인상이 결코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이와 같은 論爭에 관하여 西獨政府는 同 法律 第1條가 단지 비엔나協約의 規定中 便宜·特權·免除의 保障에만 關聯된다는 見解를 표방했다. 따라서 同法에 내포되어 있는 權限附與는 그 內容·目的·程度에 따라 充分하게 規定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정도로 同 法을 적용해야 할지가 豫見될 수 있도록 成案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西獨下院으로 하여금 西獨政府가 同 法 第1條에 規定된 限界를 遵守하고 있는지 容易하게 監督할 수 있도록 同 法 第1條의 施行令은 오로지 西獨上院이 同意할 때에만 立案될 수 있도록 하였다.

- 西獨上院에 의한 同意의 必要性은 州政府나 地自團體로 流入될 租稅에 대해 法律 施行令을 통해 免除措置를 해주기 위한 法的 根據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發生한다. 이와 같은 規程制定의 必要性은 基本法 第105條 第3項에 根據한다.

- 同法 第3條에는 Berlin協定이 내포되어 있다. '73.9.28자 BK/0(73)를 통해 聯合軍 司令部는 同法이 “西獨內에서, 그리고 Berlin에 擴大”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條件附로 公表하였다.

'73.12.12자 法律을 통해 東獨 常駐代表部에 대한 便宜·特權·免除保障에 관한 法律은 西Berlin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3. 東獨 常駐代表部에 대한 便宜·特權·免除保障에 관한 施行令('74.4.24)

○ 東·西獨 會談代表들이 '74.3.14 兩國 政府所在地에 常駐代表部 設置에 관한 懸案問題가 내포된 議定書에 署名한 이후, '74.4.5 西獨上院은 東獨 常駐代表部에 대한 便宜·特權·免除保障에 관한 施行令에 同意하였다. 同 施行令은 '73.11.16자 法律에 根據하는 것으로서, 同 法律에 常駐代表部 設置를 위한 施行令의 制定이 委任되어 있다. 이와 같은 施行令은 東·西獨이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의 直接 적용이 아니라 단지 準用에만 合意하였기 때문에 必要하였던 것이다.

○ 그러나 이 施行令은 그 內容上 實제적으로 비엔나 協約의 諸規定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兩國間 交流에 通例적이고 必要不可缺한 例外措置의 程度를 규정하고 있다. 同 施行令 草案에는 東獨 常駐代表部와 그 職員이 權限을 主張할 수 있는 例外措置의 種類를 一目瞭然하게 나열해 놓았다.

同 施行令에는 비엔나協約을 벗어나는 一部 規定이 내포되어 있다. 이에 대한 法的 根據는 비엔나協約 第47條 第26項과 連繫된 '73.11.16자 法律 第1條이다.

○ 이와 같은 例外는 兩國間 關係에 있어서 常例적이었으며, 東獨과 相互主義에 根據하고 있었다. 그 상세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第3條 第1項 : 常駐代表部 代表 및 그 職員이 住居  
用으로 使用하는 空間에 대한 其他  
公課金の 免除
- ② 第3條 第3項 : 東獨에 대한 垡地購入稅의 免除, 東·  
西獨은 附屬議定書 第5條에서 이와  
같은 免稅措置를 明確하게 表現해 놓  
았음.
- ③ 第3條 第4項 및 第5項 : 車輛稅 및 保險稅 免除,  
이와같은 事項은 兩國間 交流  
에 있어서 常例的이며, 東獨  
역시 西獨 常駐代表部에게 이  
와 같은 免稅措置를 보장하였  
음.
- ④ 第15條 : 비엔나協約 第35條 規定이외의 家事從事者에  
대한 規定임. 이 規定을 통해 東獨 常駐代表  
부의 職員으로서 西獨에 常用居住地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兵役義務 遂行을 해야 함.

그와 반대로 西獨 常駐代表部の 職員들에게는  
그와 같은 規定이 不必要했던 바, 獨逸人으로  
서 西獨에 居住地를 갖고 있는 자는 東獨으로  
부터 外國人으로 看做되었기 때문임.

⑤ 第16條 第1項 : “ 常駐代表部 건물의 建設 또는 改築에 사용되거나 건물과 밀접하게 連繫된 施設物과 관련된 ” 支出公課金 免除의 대상일 경우에 한하여 비엔나協約 第36條 第1項의 規定은 예외가 認定됨 . 東獨 역시 互惠性을 保障하였음 .

○ '74.4.5 西獨上院은 施行令 議決에 즈음하여 “ 東西獨은 外交關係를 交換하는 것이 아니라 外交關係가 成立될 수 없도록 特殊한 形態의 常駐代表部를 交換한다 ” 라는 事實을 재차 確認하였음 .

4 . 東獨駐在 西獨 常駐代表部 勤務要員의 特殊服務에 따르는 諸問題에 관한 法律

○ '74.3.22 西獨下院은 東獨駐在 西獨 常駐代表部 勤務要員의 特殊服務에 따르는 諸問題에 관한 法律을 制定하였으며, '74.4.1부로 效力이 發效되었다 . 同法은 東·西獨이 外國이 아니었으므로 外交代表部 勤務要員에게 적용되는 規定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必要不可缺하였다 . 同法에는 公務員의 暫定退職 措置, 公務員 俸給(退職金 加算과는 無關한 補助金), 人事代理權, 移住費用 등과 같은 상세한 內容이 包含되어 있다 .

## 5. 常駐代表部 設置에 관한 議定書 및 附屬議定書

- 議定書는 어려운 協商을 거쳐 '74.3.14 Bonn에서 署名되었다.  
東·西獨 基本條約 第8條에 根據하여 兩側은 附屬議定書의 效力 發效와 더불어 常駐代表部를 開設할 것에 合意하였다. 議定書는 '74.5.2에 效力을 發生했다. 代表部의 名稱은 각각 『獨逸聯邦共和國 常駐代表部』 및 『獨逸民主共和國 常駐代表部』였다.  
代表部 代表의 직함은 각각 『獨逸聯邦共和國 常駐代表部 代表』 및 『獨逸民主共和國 常駐代表部 代表』였다. 常駐代表部 代表의 信任狀 提呈은 각각 兩國 國家元首에 의해 遂行되었다.
- '61.4.18자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이 常駐代表部, 그 職員, 家族, 家事從事者들에게도 적용되었다.  
議定書 第5에 規定된 常駐代表部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 派遣國의 利益을 接受國에서 代辯하며 人的인 支援과 補助를 함.
  - 東·西獨間 政治·經濟·文化 및 其他 分野에 걸친 正常的인 善隣關係의 促進 및 擴張

○ 西獨 常駐代表部에 대한 東獨의 相對官廳은 東獨 外務省이었으며, 東獨 常駐代表部에 대한 西獨의 相對官廳은 西獨 首相室이었다. 常駐代表部の 職員數는 相互間 同意下에 確定되었다.

○ 6個에 달하는 附屬議定書와 더불어 追加 規程이 결정되었다. 第1議定書 覺書는 常駐代表部 代表의 note交換을 통한 同意, 其他 職員의 書面을 통한 任命, 接受國 政府의 代表 및 其他 職員의 召喚權이 規定되어 있다. 第2議定書 覺書에는 何時를 막론한 出入國 權限이 規定되어 있다. 第3議定書 覺書에는 常駐代表部の 通信施設 設置 및 作動에 관한 權限이 規定되어 있다. 第4議定書 覺書와 더불어 西獨政府는 Duesseldorf 駐在 東獨 對外貿易部 事務所가 東獨 常駐代表部 貿易政策室 支所로서 變更됨에 合意하였다.

이에 東獨은 만일 西獨政府가 이에 副應하는 規程과 더불어 申請書를 提出할 경우 同意할 用意가 있음을 宣言하였다. 第5議定書 覺書는 派遣國의 代表部用 垆地購入 및 其他 共用 垆地購入時 稅金과 其他共課金을 免除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 第6 議定書 覺書는 西Berlin 포함에 관한 規定이 設定되어 있다. 이 規定에 따라 西獨 常駐代表部는 '71. 9.3자 4大 戰勝國協定에 따라 西Berlin의 利權을 代辯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東獨政府와 西Berlin 市政府와의 合意事項은 이에 無關하였다.

이 議定書 覺書는 그 내용상 '72.12.21자 基本條約 署名을 기해 있었던 西Berlin에 관한 兩側의 宣言과 一致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 西獨政府는 議定書의 法律的 性格에 관하여 議定書가 基本條約 第8條에 대한 後續協定이 아니라 施行合意라고 確定하면서 “ 施行合意는 東·西獨間의 政治的 關係가 이미 基本條約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立法機關의 同意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 하였다.
- 이에 반해 參考文獻上에는 附屬議定書가 基本條約 第8條에 의한 後續合意라는 견해가 있다. 附屬議定書는 西獨 憲法裁判所의 基本條約에 관한 確定判決에 羈束되므로 당시까지 基本條約 解釋에 관한 모든 事項이 意味上 第7條에 따른 追加議定書의 締結에도 意味上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 따라서 議定書는 基本條約의 遂行에 考慮될 수 있는 東獨과의 後續條約 및 後續合意로 通用된다. 또한 議定書가 一種의 不完全한 行政協定으로서 基本法 第84條 第2項 및 第85條 第2項과 連繫하여 볼 때 第59條 第2項 第2면의 諸規定으로 인하여 立法機關의 同意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던 바, 당시 野黨이 다수였던 西獨上院이 議定書의 施行을 遮斷시킬 可能性도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점은 議定書에 관한 議會處理 過程中 實際적으로 대두된 바 없었다.

## 6. 特殊關係

- 일부 參考文獻上에는 常駐代表部 設置에 관한 議定書가 東·西獨 關係의 特殊한 性格을 反映하는 것이 라는 사실에 疑問이 提起되었다. 西獨政府는 잘 알려진 바대로 이에 반대되는 觀點을 표방했다. 西獨政府의 觀點에 따르면 東·西獨 關係의 特殊한 性格은 이미 基本條約中 다음과 같은 規定과 함께 그 根據가 提示되었다.
  - “4大 戰勝國의 權限과 責任”이 存續한다는 事實에 대한 一致된 見解
  - 外交使節團 대신 常駐代表部를 交換한다는 合意
  - 東·西獨間의 既存貿易이 對外貿易이 아닌 內獨貿易이라는 性格을 喪失하지 않는다는 事實에 대한 合意
  - 國籍問題를 基本條約上에 규정하지 않는다는 兩側의 合意 導出, 이는 西獨側의 單一獨逸國籍 存續이라는 主張
  - 相異한 法的 立場으로 인하여 財產權 問題가 基本條約에 規定될 수 없다는 事實에 대한 合意

○ 民族問題에 관해 변함없이 持續되는 見解差異가 있음이 基本條約의 前文에 명시되었다.

“ 民族問題를 포함한 根本的인 問題에 대한 相異한 見解에도 불구하고 兩獨國家 國民의 福祉增進과 協力を 위한 前提條件을 創出하기 위해” 이 條約을 締結한다고 되어 있다.

○ '73.7.31자 聯邦憲法裁判所의 基本條約에 관한 判決과 함께 基本條約은 特殊關係를 규정짓는 條約임이 確認되었다. 聯邦憲法裁判所는 基本條約이 一般的인 國際法の 秩序로부터 分離되는 것이 아니면서도 특히 基本條約과 함께 造成된 對象別로 制限的 特別法 秩序에 속함을 강조하였다.

“ 즉 基本條約은 一種의 二重性格을 띠고 있는 바, 그 種類로 볼 때 一種의 國際法的 條約이지만 그 특수한 내용을 볼 때는 무엇보다도 兩者關係를 규정짓는 條約이다” 東·西獨 相互 맞물려 있는 특수한 法的 接近은 第8條(常駐代表部)로부터 導出되며 또한 批准節次의 特殊性和 條約의 全般的 傾向으로부터 導出되는 것으로서 國境을 초월한 人的交流의 改善을 目標로 條約當事國間 최대로 긴밀한 協力を 하고 內獨貿易이 對外貿易으로 간주되지 않음에 合意한 사실로부터 도출된다.

○ 西獨政府의 觀點에 따르면 常駐代表部 設置에 관한 議定書는 다음과 같은 特殊性이 強調되고 있다.

- 公式名稱 : 『常駐代表部』
  - 代表의 公式職名 : 『常駐代表部 代表』
  - '61.4.18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이 단지 “準用” 됨에 관한 合意
  - 西獨 常駐代表部에 대한 管轄權이 西獨 首相室이라는 事實
- 이와 같은 것이 바로 - 基本條約의 特殊한 外形의 裏面에 숨겨져 있는 - 事實上의 特殊性으로서 基本條約이 그 내용상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곧 東·西獨 間의 既存 特殊關係로부터 출발한다는 結論을 認定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表現하자면 基本條約과 常駐代表部 設置에 관한 議定書가 이와 같은 特殊關係를 造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와 같은 特殊關係를 確定시키고 明確하게 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觀點은 - 聯邦憲法裁判所가 選擇한 文章形式의 意味表現과 더불어 - 獨逸과 獨逸民族의 特殊한 狀態, 즉 敗戰과 무조건 降伏 및 그로 인한 被占領狀態를 비롯한 最終적으로 獨逸全體에 대한 4大 戰勝國의 最後의 責任이란 權限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獨逸全體에 대한 4大 戰勝國의 最高 責任은 '73.12.21자 書信交換과 함께 4大 戰勝國으로부터 確認된 바 있다.

- 바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부터 基本條約과 議定書는 出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에 反對하면서 西獨과 東獨이 國際法的 結束力이 없이 단지 特別法 秩序下에 그와 같은 條約을 締結함에 合意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東獨은 그와 같은 의지가 결여되었었다. 基本條約의 性格만 갖고 特殊한 關係가 條約上으로 根據가 없다는 主張은 이와 같은 觀點을 曲解함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이와 같은 特殊關係는 基本條約上에 내포되어 있고 바로 基本條約이 이와 같은 特殊關係의 存續을 原則으로 하면서 締結되었기 때문에 特殊關係의 立法化에 관한 合意 도출은 필요치 않았다.

## 7. 信任狀 提呈을 둘러싼 論難

- 常駐代表部 設置에 관한 議定書 第3條에 의하면 각 常駐代表部 代表는 각 國家 元首에게 信任狀을 提呈하게 되어 있다.

信任狀 提呈이란 接受國의 國家元首로부터 外交使節의 代表가 公式的으로 認定을 받는 節次를 말한다. 信任狀 提呈의 節次는 派遣國에 의한 代表의 任命으로부터 接受國의 國家元首에게 信任狀을 전달하는 일련의 過程을 總稱한다.

- 政府與黨 (SPD)과 野黨 (CDU) 사이에 각 國家元首의 信任狀 提呈問題에 관하여 激烈한 論爭이 벌어졌다. 野黨側은 聯邦憲法裁判所法 第32條와 基本法 第93條 1項 1節에 따른 機關 爭訟을 憲法裁判所에 申請하여 常駐代表部 設置에 관한 合意에 反對하려고 試圖하기도 하였다.

野黨側 主張의 核心은 東獨 常駐代表部 代表의 信任狀 提呈은 결국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을 排除시키는 結果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즉, 信任狀 提呈을 통해 東·西獨은 外交關係를 樹立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이들의 主張이었다. 外交關係 樹立은 명백히 東獨을 암암리에 外國으로 認定하는 것이 되며 이것은 基本條約에 관한 聯邦憲法裁判所 判決에 違背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하여 東獨 常駐代表部 代表의 信任狀 提呈은 基本法 第59條 1項 3節의 要件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國際法的 認定으로서 東獨은 결코 外國이 아니므로 결코 國際法的인 認定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제까지의 聯邦政府 主張에 背馳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은 “ 特殊한 內獨關係 ” 와 관련하여 聯邦憲法裁判所 判決이 明示적으로 附與한 義務를 聯邦政府는 최선을 다하여 履行해야 하는 것과도 背馳되는 것이다.

따라서 聯邦大統領에의 信任狀 提呈은 基本法을 違反하고 基本法과 基本條約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權威的인 解釋에도 背馳된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聯邦政府는 東獨 常駐代表部 代表에 의한 信任狀 提呈行爲가 결코 憲法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基本法 59條 11項 3節에 따르면 聯邦大統領은 “ 派遣된 者 ” 를 迎接하고 信任狀을 받도록 되어 있다. “ 派遣된 者 ” 란 文字 그대로는 意味上 보통 外國으로부터 外交使節로 理解한다.

그러나 東獨 常駐代表部 代表는 이 意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議定書 文案에 常駐代表部の 特殊性을 具體적으로 표현해 놓았으므로 결코 東獨은 外國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東獨도 한 國家이며 基本條約의 二重的 性格上 兩國家間의 關係上 각 常駐代表部 代表가 상대방에게 信任狀을 提呈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信任狀 提呈이 꼭 外交關係 樹立下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國際法의 諸規定에 의하면 兩 國家間의 相互 合意에 의해 그런 관계는 얼마든지 成立될 수 있다는 것이 政府側 主張이다.

基本法 59條 1項 3節은 단지 “ 派遣된 者 ” 들이 聯邦 大統領에게 信任狀을 提呈할 수 있다는 事實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常駐代表部 設置에 관한 議定書의 署名時 政府聲明을 통해서, 聯邦政府는 基本條約을 통해서 政府間, 國家間의 關係가 決定되었다는 사실이 國家元首에 대한 信任狀 提呈을 위해 決定的으로 重要하므로, 信任狀 提呈의 形式은 常駐代表部の 性格을 넘어서서 決定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表明했다.

- '74.4.5 東獨代表部에 관한 便宜·特權·免除保障에 관한 施行令 議決時 聯邦上院은 常駐代表部 代表의 聯邦大統領에 대한 信任狀 提呈이 결코 東獨에 대한 外交的인 承認이라는 結果를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確認했다. 野黨은 最終적으로 聯邦憲法裁判所에의 提訴를 撤回했다.

8. 常駐代表部 設置에 관한 議定書 規定을 根據로 外交 關係 樹立이라 主張할 수 있는가?

- 信任狀 提呈問題 뿐만 아니라 議定書 規定 自體가 外交關係 樹立으로 歸結되는 것이 아니냐는 疑問이 계속 提起되었다. 政府의 계속적인 否認에도 불구하고 學者들에 의해 國際法 文獻을 통해 이러한 外交關係 樹立問題가 많이 言及되고 있다.

『常駐代表部 代表』란 職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常駐代表部와 그 代表의 活動內容과 그 機能때문에 學者들은 그것을 外交關係 樹立與否로 論爭을 벌였다.

즉, 비엔나協約에 의하면 『派遣된 者』의 長의 任務를 꼭 한정할 수는 없지만, 그 主要機能上 外交使節의 代表로서 接受國에서 派遣國의 利益을 代表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때 外交使節의 代表는 항상 『大使』라고 불리우지 않는다. 만약 常駐代表部 代表의 名稱이 『大使』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派遣된 者의 長』으로서 그가 任務를 遂行하는 한 그 機能을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비엔나協約 第14條 1項 1節에는 “그밖에 同一한 地位에 相應하는 派遣된 者의 長”의 職名에 관한 規定이 있다고 한다.

더구나 東獨이 『大使』라는 職名을 固守하며 外交關係 樹立을 強調하는 마당에 『常駐代表部 代表』란 職名만으로 內獨關係의 特殊性을 主張할 만한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議定書 4項의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의 규정들이 『準用되어』 적용된다는 規定도 비록 兩當事者가 완전한 外交關係 樹立을 원치 않는다고 合意한 明確한 證據가 되긴 되지만, 이 條項만으로 兩國間 사이의 法的 性格을 明確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議定書의 내용과 協約締結의 目的을 좀더 研究해 보아야 하는 바, 外交的 特權·免除에 관한 한 兩國家들은 『常駐代表部』에 外交使節的 地位를 許容하였으므로, “事實上” 外交使節과 同一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어느 정도로 國際法이 兩國間의 特別協約에 의거하여 “準用” 될 수 있으며 또한 國際法的인 主要 命題들이 유사한 적용에 의해 羈束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疑問이 提起된다고 主張한다.

- 議定書 5項에 規定된 常駐代表部の 任務가 비엔나協約 第3條의 規定과 類似하다는 主張이 있다.  
議定書上의 表現이 “正常的인 善隣關係”로서 비엔나協約上의 “友好關係”와는 다르다. 協商時 兩國間關係의 性格問題와 관련한 論爭에서 東獨側은 “正常的인” 性格을 強調했고, 西獨側도 “友好”關係를 強調했다. 議定書上에 두 單語를 똑같이 並記했다는 사실이 결코 兩國間 關係의 特殊性을 代辯할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議定書 文案上의 表現으로써 兩國關係의 特殊性에 관한 어떤 根據를 導出해 낼 수 없다는 것이 그 主張의 요지다.
- 각 常駐代表部の 接觸相對와 관련한 問題가 이러한 外交關係 樹立與否와 관련, 舉論이 되었다.  
東獨 常駐代表部는 例外的으로 聯邦首相室과 接觸을 하게 하도록 하였으나, 兩國家間의 接觸에서 완전히 外交關係를 排除하는 規定으로 볼 수 없다는 主張이 있다.

왜냐하면 비엔나協約 第41條 2項에서는 明示的으로 外交的 業務接觸 對象機關은 外務省이나 “相互 同意 下에 그밖의 接受國의 特定部處” 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議定書上의 이러한 규정때문에 따라서 兩國間 關係의 特殊性格을 논할 수는 없다” 는 것이다.

- 議定書 註釋 1項의 常駐代表部 代表 任命 同意에 관한 規定 또한 一般外交使節 代表의 아그레망 節次와 다르지 않다는 主張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政府間 Note交換으로 이러한 節次가 이루어진다.

비엔나協約 第4條에 의하면 派遣國은 接受國으로부터 外交使節 代表의 아그레망을 獲得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밖의 外交官들도 文書로서 任命이 되고 接受國으로부터 召還이 要求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合意는 國際法의 主要內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國內的으로 法的 規定 制定을 통해 立法化했다는 사실만으로 兩國間 關係의 性格을 變更시킬 수 없다는 것이 主張의 요지다.

- 聯邦政府의 主張에 대해 國際法的인 諸規定과 貫行을 열거하며 懷疑的인 反應을 보였던 이러한 見解를 통해 兩獨間 合意書의 全體的인 性格이 보다 분명히 설명될 수 있게 되었다.

議定書와 議定書 註釋에는 어쨌든 全體的으로 보면 外交關係 樹立을 許容치 않는 일련의 特殊性이 있다.

또한 聯邦憲法裁判所의 상세한 說明이 關係의 特殊한 性格을 이미 明確히 해주고 있다.

재삼 言及하건대 이미 基本條約에 特殊關係가 내포되어 있고 基本條約이 特殊關係의 持續이란 基本的인 立場하에 締結되었기 때문에 特殊關係의 立法化를 위한 별다른 콘센서스 形成이 필요치 않다.

이러한 事實은 常駐代表部 設置에 관한 國際法的 解釋과 評價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 結論的으로 國家間的 外交關係 樹立은 外交關係 樹立을 맺고자 원하는 兩國家間的 相互 同意下에서만 可能하다. 이것은 外交貫行의 基本命題로서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第2條에도 明示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外交關係 樹立에 관한 相互 同意가 東·西獨間에는 결코 한번도 있어본 적이 없다. 西獨政府는 늘 東獨과 外交關係를 樹立할 의도가 없음을 強調해 왔다. 이러한 基本立場下에 基本條約 第8條의 合意가 있었고 그에 따라 常駐代表部 設置에 관한 議定書가 合意된 것이다.

# 〈言 論 ・ 教 育 分 野〉



## 舊東獨 靑少年에 대한 社會主義 意識化

### 1. 舊東獨 共產黨의 靑少年政策

#### 가. 靑少年政策 目標

- 舊東獨 共產黨(SED)의 靑少年政策(Jugendpolitik)은 社會主義를 帝國主義로부터 保護하고 持續적으로 強化·發展시키기 위해 階級鬪爭意識으로 武裝된 社會主義的 人間을 養成하는데 그 勳점이 있었음.
- 靑少年法(Jugendgesetz)이 存在하기는 하나, 靑少年의 任務와 그에 따른 教育 등 靑少年政策은 共產黨에 의해 決定되고 領導됨.
- 共產黨의 重要한 大衆外廓團體로서 “自由獨逸靑年團”(Freie Deutsche Jugend:FDJ)은 이러한 黨의 靑少年政策을 傳播하는 道具로서 東獨體制維持에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였음.

#### 나. 自由獨逸靑年團(FDJ)의 性格

- FDJ는 '46. 3. 7 蘇聯占領下에서 호네커에 의해 創設되었으며, 어린이 組織인 “Pionierorganisation Ernst Thaelmann” 까지 指導하는 共產主義 政治教育團體였음.

- 定款에 의하면 自發적으로 加入토록 되어 있으나, 거의 14세 이상(加入 最小年齡)의 中·高等學生, 大學生, 職業學校 및 勞動者들이 總網羅되어 있었으며,
- 加入年齡 上限線은 24歲이나, 실제 幹部 등 5%程度가 24歲 以上이었음.(統獨直前 會員數는 230萬 程度)

#### 다. 自由獨逸青年團 (FDJ)의 主要機能

- o SED 黨員 後繼者 養成
- o ML主義 傳播를 통한 社會主義 意識化 教育
- o 學校·職業·軍事教育의 補充教育
- o 休暇 및 餘暇善用時 社會主義的 文化 및 藝術活動 獎勵
- o 다른 教育機關 및 家庭에서 教育의 先導

## 2. 舊東獨共產黨의 青少年政策의 效果

- o 青少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社會主義 意識化 教育은 70년대초까지 相當히 成果가 있었으나, 兩獨關係가 正常化되어 東·西獨間 人的交流가 시작된 뒤로는 教育의 說得力이 弱化되기 시작했음.

- 專門家들에 의하면 보통 注入式 教育은 14歲 以前까지 效果가 있으며, 그 以後부터는 “ 內的인 確信” (innere Ueberzeugung)이 없으면 教育의 效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DJ 所屬 東獨의 靑少年들도 西歐로부터 影響 (록음악 또는 東·西間 和解무드)때문에 SED의 靑少年 政策은 難關에 逢着함.
- SED (獨逸統一社會黨)側은 이러한 靑少年 教育의 問題點을 認識하자 義務的인 兵營集體訓練, 資本主義 및 西獨의 政治制度에 대한 敵對的이고 否定的인 意識 注入, 反社會主義的인 人文·社會科學 書籍에 대한 接近 封鎖 등을 通해 스스로의 確信에 의해서가 아닌 “適應을 強要” 함으로써 靑少年들로부터 創造性和 客觀的인 思考能力을 抹殺하였음.

### 3. 舊東獨 共產黨의 靑少年政策에 대한 評價

- o 이러한 理念教育의 東獨體制 維持에 얼마만한 成果가 있었고, 統獨後 東·西獨間 異質性 克服이라는 側面에서 어떤 影響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具體的인 論議는 아직 活潑하지 못함.

- '89 - '90年 東獨의 大變革期에 東獨을 脫出한 사람 중 약 46%가 25歲 未滿이었던 點을 勘案하면, 過去 教育의 成果가 疑問視 되기도 함.
- 그러나 '89 東獨에서 平和革命의 主役들이 大學生이 아니었고 주로 젊은 勞動者들이었던 點(勿論 反體制 知識人 包含)을 勘案하면, 未來의 特權階層으로서 體制順應的인 人間을 養成하는데 相當한 寄與를 했다는 主張도 있음.
  - 大學生의 대부분이 獎學金과 寄宿舍를 提供받았으며, 未來의 安定된 職場(물론 SED 黨員 資格포함)까지 保障받을 수 있었으므로, 統獨으로 가장 많은 것을 잃게된 階層이었음.
  - 統獨以後 SED의 後身인 PDS의 主要한 支持階層이 過去 東獨大學生이라는 事實 또한 이를 뒷받침함.
- 한편 高等學生 또는 職業學校 出身의 靑少年層은 價値體系의 混亂을 거듭하며, 民主的이고 多元的인 社會에 適應하지 못하고, 政治的인 極端化 現象(新나찌화 傾向)을 보이고 있는데, 自律性과 自己責任性에 基礎한 새로운 環境에 適應하는데 相當한 時日이 所要될 것으로 보임.

# 東·西獨間 放送協力에 관한 合意書

---

## 第 1 條

1. 契約當事者 쌍방은 相互 상대방의 TV프로그램을 買入한다. 相互買入의 對象이 되는 프로그램은 原則적으로 모든 分野의 TV프로그램을 포괄하나, 특히 TV 드라마, TV영화, 연극, 음악프로, 오락프로, 기록물, 스포츠프로, 청소년프로, 문화교양프로 등이 그 對象이 된다.
2. 當事者 쌍방은 자신들의 TV프로그램에 관한 販賣提議書, 카타로그 및 기타 적당한 資料를 定期的으로 交換한다. 契約當事者 일방은 상대방의 代表들을 위해 1년에 1회 또는 2회 프로그램 試寫會를 開催한다. 契約當事者 일방의 希望에 따라 특별 試寫會도 開催된다. 프로그램 買入條件은 매번 相互 合意에 의해서 確定된다.
3. 契約상대방 쌍방에 의해서 場所·內容·時間적으로 制限을 받지 않는다는 條件으로 買入되지 않는 한 著作權은 保護되어야 한다. 資料販賣時 프로그램을 交付하는 契約當事者는 프로그램을 受領하는 契約當事者에게 現存하는 著作權上의 의무들에 관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그밖에는 성립된 프로그램 購買契約의 範圍內에서 필요한 著作權上의 約定이 適用된다.

4. 契約當事者 쌍방은 締結된 프로그램 契約의 範圍內에서 아울러 該當 著作權法上의 約定을 考慮하여 買入한 프로그램을 自身の 裁量에 따라 使用할 權限을 가진다.  
즉, 契約當事者 쌍방은 作品의 內容과 意味가 歪曲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을 短縮시킬 수 있다. 契約當事者 쌍방은 상대방의 同意없이는 受領한 프로그램의 全部나 一部를 第3者에게 讓渡할 수 없다.
5. 契約當事者 쌍방은 放映日字에 관한 事項을 包含하여 프로그램의 使用에 대해서 相互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 第 2 條

契約當事者 쌍방은 兩國間의 法律規定과 이에 相應하는 可能性과 權限을 참작하여 常駐特派員, 一時訪問 特派員, 펜記者 카메라팀을 支援한다.

## 第 3 條

유로비전 (Eurovision)과 인터비전 (Intervision)간에 既存의 慣行과 合意에 의해서 相互主義 原則에 따라 費用負擔없이 提供되는 서비스가 아닌 한, 契約當事者 쌍방은 政治·文化·스포츠事件의 取材에 있어서 合意된 謝禮를 支拂하고 相互 서비스 (直接 衛星中繼 包含)를 提供받는다.

#### 第 4 條

契約當事者 쌍방은 共同製作을 圖謨할 것이다. 合意에 의한 共同製作을 위해서 特別 共同製作 契約을 締結한다.

#### 第 5 條

契約當事者 쌍방은 상대방의 時事프로나 기타의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를 자신의 프로그램에 編輯하여 使用할 수 있다. 이에는 現存의 慣行이 適用된다.

#### 第 6 條

契約當事者 쌍방은 法的으로 可能한 範圍內에서 相互 希望에 따라 獨逸語로 된 第3國의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細部的인 事項은 合意에 의해서 確定된다. 原作者에 대한 著作權料 支拂과 原著作者로부터의 放映權 買入은 이에 의해 影響을 받지 않는다.

#### 第 7 條

契約當事者 쌍방은 서로 상대방에게 중요한 情報나 프로그램에 관한 刊行物을 提供한다.

## 第 8 條

1. 契約當事者 쌍방은 相互 情報旅行, 博覽會, 展示會, 그 밖의 行事に 代表者들을 派遣할 수 있다. 細部 事項은 개개의 경우 별도로 合意한다.
2. 製作技術上의 經驗 交換은 별도의 約定에 의한다.

## 第 9 條

契約當事者 쌍방은 TV競演大會나 TV祝祭行事に 관한 사항을 告知한다. 契約當事者 쌍방은 作品 出品 및 公式 代表團 派遣 등 行事參加 可能與否에 대해서 好意的으로 檢討한다.

## 第 10 條

契約當事者 쌍방의 代表들은 더이상의 協力에 관한 基本的인 協議와 調整을 위해서 時間적으로 서로 合意하여 수시로 만난다. 이러한 會습은 契約當事者 쌍방의 地域에서 交代로 開催된다.

## 第 11 條

兩側은 本 合意를 實現시키는데 있어 發生되는 모든 紛爭을 法的인 判決에 依存하지 않고 平和적으로 解決하도록 努力한다.

## 第 1 2 條

1. 本 協約은 3年間 有效하며 署名과 同時에 效力을 發生한다.
2. 本 協約은 契約當事者 一方이 적어도 有效期間 滿了 3個月前에 文書로 解止하지 않는 한 3年間씩 延長된다.
3. 本 協約의 變更이나 補完은 契約當事者 쌍방의 合意가 있어야 하며, 文書形式을 필요로 한다.

1987년 5월 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原本 두통을 作成한다.

獨逸放送協會 (ARD) 所屬 州放送公社들을 위하여  
빌리발트 힐프 (Willibald Hilf)

東獨國務院 TV委員會를 위하여  
하인츠 아다맥 (Heinz Adameck)

# 1. 統獨直前西獨의 統獨을 위한 新聞·放送·弘報施策은 어떤 것이었는지?

- 이 問項에 대한 答辯을 위해서는 다음 事項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첫째, 獨逸統一은 東獨이 西獨聯邦에 加入하는 形態, 즉 西獨이 東獨을 平和的인 方法으로 合併한 形態로 이루어졌다는 점.
  - 둘째, 西獨은 聯邦制 國家이므로 各 州政府가 放送에 대한 管轄權과 新聞·雜誌 登錄에 관한 業務를 管掌하고 있으나 新聞은 完全한 自由市場 經濟原則에 따라 私企業에 의해 設立 運營되고 放送은 公營放送과 商業放送이 共存하는 形態였다는 점.
  - 셋째, 東獨은 國家가 新聞과 放送에 대한 管轄權을 갖고 있었으며 新聞과 放送이 黨과 國家에 의해 직접 設立·運營되는 形態를 가졌었다는 점.
- 統獨直前 西獨政府의 新聞에 대한 政策은 特異한 것이 없었음. 즉 統一以後 東獨의 新聞은 西獨에서와 마찬가지로 自由市場 經濟體制下에 맞게 再編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임.

단 放送의 경우에 既存 東獨의 國營放送社를 解體 (統一條約 第36條)시키고 各州 또는 一部州들이 共同으로 公營放送社를 設立하는 基礎作業을 했음.

- TV放送의 경우 西獨은 PAL方式이고 東獨은 SECAM - OST方式이었으나, 東獨住民의 90%이상이 PAL方式과 SECAM-OST方式을 受信할 수 있는 TV受像機를 保有 (東獨은 同時 受信 可能한 겸용 TV 生産·輸出)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施策은 필요없었음.
- 西獨의 統一前 對東獨 弘報施策은 西獨公報處가 聯邦特別豫算을 支援받아 東獨의 TV·라디오放送, 新聞에 有料廣告 推進, 각종 弘報資料 配布事業 등을 통해 各種 制度와 法律의 變化에 따라 새로운 體制에 適應하는데 필요한 情報提供과 統一에 따른 不安感을 해소시키는데 盡力했음.

## 2. 統合後 舊東獨의 國營新聞, 放送은 民營化 되었는지 또는 國營으로 存續하며 發刊되는지?

- 舊東獨에는 39個의 日刊紙가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黨機關紙 또는 大衆組織의 新聞이었음. 이들중 14個 新聞은 信託廳 (舊東獨의 黨과 大衆組織의 財産을 私有化시키기 위해 統一後 設立된 機構)의 管理下에 있으며 信託廳은 이들 新聞들을 賣却중임.

나머지 25個 新聞은 舊東獨의 黨과 大衆組織을 承繼한 새로운 黨과 大衆組織이 그 所有權을 主張하고 있음. 이들 39個의 日刊紙들은 發行部數는 減小되었지만 發刊은 계속 進行中임.

- 舊東獨의 通信社는 國營으로 運營되던 ADN通信 하나만 存在했었음. 同 通信社는 현재 信託廳 管理下에 있으며 株式會社 形態로의 賣却을 위한 準備作業이 進行中임.
- 舊東獨에는 1個의 國營TV(DFP)와 1個의 國營 라디오 放送社만이 存在했었음. 放送은 新聞·通信과는 달리 放送社 解體 專權委員이 任命되어 放送社를 解體하는 作業이 進行中임. 過去 14,000명의 放送社 從事員중 半以上이 事實상 共產主義者들이라는 理由로 해직되었고 '91.12.31일 放送社 解體作業이 完了되는 時期까지는 技術職員 중심으로 4,000여명만을 救濟하여 適應訓練을 시킨 다음 새로이 設立되는 放送公社에서 勤務하게 될 것이라 함.
- 西獨의 方式에 따라 舊東獨의 5個의 州政府가 새로이 放送局(Landesstudio)을 設立하였으며, 放送局들은 獨自적으로 또는 다른 放送局과 共同으로 放送公社(Rundfunkanstalt)를 設立中임. 이미 “中部獨逸放送”이라는 放送公社가 設立되었으며 '91.12.31까지는 하나 또는 2個의 放送公社가 追加로 設立될 豫定임.
- 舊東獨 TV放送은 현재 초저녁프로(2시간)만을 製作 放送하고 있으며, 기타 저녁시간대 채널은 西獨 제1 TV인 ARD-TV가 引受, 放映하고 있음.

### 3. 舊東獨의 國營新聞·通信·放送의 社長을 비롯한 幹部들을 西獨出身 人士로 交替하여 國營으로 계속 運營하는지?

- 舊東獨의 國營新聞·通信의 社長, 幹部, 職員들은 交替되지 않고 그대로 勤務하고 있음. 그러나 新聞·通信社가 今年말이나 내년초 信託廳에 의해 賣却되어 西獨의 新聞社가 引受할 경우 대규모 人事交替가 이루어질 展望임.
- 舊東獨 放送(TV·라디오)의 경우 放送社의 解體가 進行中이므로 放送社의 社長과 幹部陣이 解職되었으며, 그대신 放送社 解體를 위한 專權代理人, 기타 幹部들을 西獨出身 人士로 任命 解體作業에 임하고 있음.

### 4. 舊東獨의 國營新聞·放送·通信社 職員에 대해서는 統獨後 어떻게 處理하고 있는지?

- 舊東獨의 新聞·通信의 경우 一般職員들이 交替되거나 解職되지 않고 있음.  
既言及했듯이 新聞·放送의 私企業化(信託廳에 의해 賣却)가 進行中이므로, 西獨의 新聞社가 舊東獨의 新聞·通信社를 買入할 경우 대규모 人員減縮 및 交替가 豫想됨.

- 解體作業이 進行中인 舊東獨 放送의 職員은 총 14,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반수인 7,000명이 이미 解職되었고, 解體作業이 完成되는 '91.12.31일까지는 3,000여명이 더 解職되어 주로 技術職要員 4,000여명만이 남게될 것이라 함.

## 5. 舊東獨 言論機關 從事者들에 대하여 統獨直後 自由民主體制, 市場經濟原理에 立脚한 教育을 시켜 活用하는지?

- 舊東獨 言論人에 대한 教育은 實施되지 않고 있으나 解體作業이 完成된 후 새로운 放送體制와 自由言論에 適應하기 위한 訓練을 實施할 것이라 함.

## 6. 西獨新聞의 東獨支社 設置 許容 與否

- 西獨의 4대 全國紙(“ Die Welt” , “ Sueddeutsche Zeitung” ,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 “ Frankfurter Rundschau” ) 및 主要週刊誌(Spiegel)가 70年代末 이래 東베를린에 소규모 支社를 設置 運營해왔으며, 統一後에는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만 에르푸르트(Erfurt)에 支社를 設置했음.

7. 統獨後 放送制度의 改善·改編은 없었는지?  
西獨의 放送이 東獨에서 視廳할 수 있도록  
東獨에 送信塔을 新設하였는지, 東獨의 既存  
送信施設을 連結·活用하여 西獨放送을 東獨  
에서 視廳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的인 改善이  
있었는지?

- 獨逸 聯邦遞信部 산하 電氣通信公社(Telecom)와  
독일 제2TV인 ZDF-TV는 統獨直後 舊東獨地域에  
15個의 中繼所(Grundentsender)設置를 計劃하였는  
바, 이 중 6個는 完成되었고 9個는 工事中이라 함.
- 獨逸 第1TV인 ARD는 舊東獨의 國營放送인 DFF의 第  
1채널을 引受받아 同 채널로 프로그램을 放映하고  
있음.
- 특히 獨逸 電氣通信公社(Telecom)는 91年初부터  
舊東獨地域에 케이블을 架設하고 있는 바, 92年부  
터 東獨 一部地域에서는 케이블이나 衛星안테나를  
통해서 商業放送을 視廳할 수 있게 될 것임.

## 8. 相互異質的인 放送制度를 어떻게 調和시키는 放送施策과 制度를 떠나가고 있는지?

- 舊東獨의 放送은 '91.12.31일까지 解體될 豫定이므로 放送制度를 調和시키는 施策은 없었음.
- 舊東獨地域에는 2-3個의 公營放送公社(TV,라디오)와 數個의 商業放送社가 92年以後에 設立·運營될 豫定임. '91.9월 現在 “MDR(中部獨逸放送公社)”의 設立協定에 舊東獨地域의 3個 州政府가 署名한 狀態이며, 이 放送局은 '92.1.1일 放送을 目標로 作業中임.

## 9. 西獨放送局의 東獨地域 放送分局 設置與否

- '91.9월 現在 獨逸 第2TV인 ZDF-TV(獨逸 第2TV放送)가 舊東獨의 7個 都市에 取材記者를 常駐시키는 支社를 設置하고 있으며, 第1TV인 ARD는 支社가 없음. ZDF-TV 支社는 韓國의 放送分局과는 性格이 다름.

## 10. 統獨後 弘報施策 活動은 ?

### 가. 對東獨國民 弘報活動

- 獨逸政府는 體制變化에 따른 舊東獨 國民들의 動搖와 負擔感, 두려움을 安定시키기 위한 目的으로 別途의 弘報對策을 세워 大規模 弘報事業을 展開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91.9月末부터 대형버스를 改造하여 統獨이 후 變化된 各種 法令과 制度 등 주로 國民生活과 直結된 內容을 담은 案内冊子와 案内員을 싣고 東獨 各 地域에서 移動弘報를 實施할 豫定이며, 특별히 考案된 問答式 弘報資料 등 各種 弘報物을 大量製作, 舊東獨地域의 地方自治團體나 대규모 行事を 契機로 集中 配布하고 있음.

### 나. 新聞·放送·通信을 통한 機動弘報活動 技法

- 獨逸에서 新聞과 通信은 완전히 私企業에 의해서 運營되고 있으므로 政府에서 公式的으로 어떤 技法과 施策으로 機動弘報活動을 할 수 있는 立場에 있지 못함.
- 放送의 경우도 自律的으로 運營하는 公營放送體制를 갖추고 있으며, 거의 모든 放送社가 州政府 管轄下에 있으므로 聯邦政府의 影響을 받지 않고 獨自的으로 放送하고 있음.

다만, 獨逸 第2TV인 ZDF-TV의 경우 66인으로 구성되는 TV放送協議會에 聯邦政府代表 3인이 포함되고, 9인으로 構成되는 運營委員會는 1인이 聯邦政府에 의해서 任命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編成에 間接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음.